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일본

2022. 12.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일본-

2022. 12.

연구총괄 강동익

연구자 노영예 · 박지우

목 차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1
I. 일반 및 경제 개황	1
1. 일반 개황	1
2. 경제 개황	2
가. 주요 경제지표	2
나. 수출입 동향	3
3. 관세행정조직	7
II. 사전교시제도 및 품목분류	10
1. 사전교시제도	10
가. 개요	10
나. 과세가격 사전교시	12
다. 품목분류 사전교시	13
라. 원산지 사전교시	14
마. 감면 사전교시	16
2. 품목분류	17
가. 품목분류 개요	17
나. 일본의 품목분류	24
III. 품목분류 결정사례	26
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26

가. 선충(Other live animals, Nematodes)(제1류)	26
나. 프로슈토와 소시지(Prosciutto, Sausage)(제2류)	27
다. 냉동 어류 필레(Frozen Fish fillets)(제3류)	28
라. 신선한 치즈(Fresh(unripened or uncured) cheese, including whey cheese, and curd)(제4류)	29
마. 어류의 웨이스트(Fish waste/ Products of fish or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dead animals)(제5류)	30
2.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31
가. 말린 꽃(Dried flowers)(제6류)	31
나. 냉동 채소(Frozen vegetables/Other vegetables)(제7류)	32
다. 말린 과일과 화이트초콜릿(White chocolate) 혼합물(Mixtures of nuts or dried fruits/Other)(제8류)	33
라. 커피세트(Coffee, roasted, Not decaffeinated)(제9류)	34
마. 리소토(Risotto/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제10류)	35
바. 쌀, 전분, 밀가루의 혼합물(Mixtures of rice, starch and flour/Cereal flours other than of wheat or meslin)(제11류)	36
사. 양념세트(Seaweeds and other algae/Fit for human consumption) (제12류)	37
아. 바닐라 추출물(Vanilla extract)(제13류)	38
자. 코마츠나기잎 분말(Komatsuna leaves(powder))(제14류)	39
3. 동물성 생산품(제15류)	40
가. 재멸균된 지방과 기름(건강 식품)(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제15류)	40
4. 조제 식료품, 음료 · 주류 · 식초, 담배 · 제조한 담배 대용물(제16류~제24류) ..	41
가. 소시지 조제품(Sausages and similar products)(제16류)	41
나. 유당(Containing by weight 99% or more lactose, expressed as anhydrous lactose, calculated on the dry matter)(제17류)	42

다. 코코아 조제품(Other preparations in blocks, slabs or bars weighing more than 2kg or in liquid, paste, powder, granular or other bulk form in containers or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exceeding 2kg/Other)(제18류)	43
라. 우유 조제품(Preparations containing not less than 30%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by weight,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excluding whipped cream in pressurized containers)(제19류)	44
마. 파인애플 조제품(Containing added sugar)(제20류)	45
바. 차 추출물 조제품(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f tea or maté,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tea or maté/Other)(제21류)	46
사. 음료(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not including fruit, nut or vegetable juices of heading 20.09)(제22류)	47
아. 옥수수 열매 및 가루(Corn/Bran, sharps and other residue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derived from the sifting, milling or other working of cereals or of leguminous plants)(제23류)	48
자. 담배(Containing tobacco or reconstituted tobacco)(제24류)	49
5.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50
가. 벽돌가루(Mineral substanc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ther)(제25류)	50
나. 산화아연(zinc oxid)의 잔재물(Slag, ash and residues (other than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containing metals, arsenic or their compounds/Other)(제26류)	51
다. 탄화수소유(Hydrocarbon Oil)(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Other)(제27류)	52
6.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53

가. 염화마그네슘(Magnesium chloride)(Chlorides, chloride oxides and chloride hydroxides; bromides and bromide oxides; iodides and iodide oxides)(제28류)	53
나. 에틸알코올(Ether-alcohol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제29류)	54
다. 미생물 배양체(cultures of micro-organisms/Vaccines, toxins, cultures of micro-organisms (excluding yeast) and similar products)(제30류) ..	56
라. 비료(Other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he two fertilising elements nitrogen and phosphorus)(제31류)	58
마. 사프란(Saffron) 추출물(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제32류)	59
바. 식품용 향료(Essential oils of citrus fruit/Orange)(제33류)	61
사. 물티슈(Non-woven fabric)(제34류)	62
아. 혼합형 접착제(Products suitable for use as glues or 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as glues or adhesives, not exceeding a net weight of 1kg)(제35류)	63
자. 점화봉(Lighting bar/Ferro-cerium and other pyrophoric alloys in all forms)(제36류)	64
차. 감광성용액(Photosensitive solution/ Chemical preparations for photographic uses (other than varnishes, glues, adhesives and similar preparations)(제37류)	65
카. 콘덴서(Condenser) 재료용 활성탄(Activated carbon)(제38류)	67
7. 플라스틱과 그 물품, 고무와 그 물품(제39류, 제40류)	68
가.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Other)(제39류)	68
나. 욕실용 매트(Bath mat)(Cellular rubber)(제40류)	69
8.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물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거트(누에의 거트 제외)의 물품(제41류~제43류)	70
가. 소가죽(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including	

parchment-dressed leather,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without hair on, whether or not split, other than leather of heading 41.14)(제41류)	70
나. 방직용 섬유 케이스(Textile fiber case)(With outer surface of sheeting of plastics or of textile materials)(제42류)	72
다. 무튼매트(Muton mat/Furskin of sheep, goat, rabbit or hare)(제43류)	73
9. 모피와 목재, 펄프, 종이, 인쇄서적(제44류~제49류)	74
가. 배향성 보드(Oriented strand board/ Unworked or not further worked than sanded)(제44류)	74
나. 천연코르크 지갑(Articles of natural cork)(제45류)	76
다. 조립 재료로 만든 장식품(Basketwork, wickerwork and other articles, made directly to shape from plaiting materials or made up from goods of heading 46.01; articles of loofah/Vegetable materials)(제46류)	77
라. 목재펄프(Wood pulp obtained by a combination of mechanical and chemical pulping processes)(제47류)	78
마.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50g 이하인 것으로 한정)(Bleached uniformly throughout the mass and of which more than 95%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wood fibres obtained by a chemical process, and weighing 150g/m ² or less)(제48류)	80
바.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In single sheets, whether or not folded)(제49류)	81
10.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2류~제63류)	82

가. 면·면사 면직물(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g/m ²)(제52류)	82
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섬유(Coconut, abaca (Manila hemp or Musa textilis Nee), ramie and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tow, noils and waste of these fibres(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제53류)	83
다. 인조 필라멘트 섬유(Elastomeric, other)(제54류)	84
라. 워딩·펠트·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로프·케이블(Knotted netting of twine, cordage or rope; made up fishing nets and other made up nets, of textile materials)과 이들의 제품(Of synthetic fibres) (제56류)	85
마.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including turf), tufted, whether or not made up) 중 터프(Turf)(제57류)	86
바. 칩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 제품(Textile fabrics otherwise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painted canvas being theatrical scenery, studio back-cloths or the like)(제59류)	87
사.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Unbleached or bleached 2 Other) (제60류)	88
아. 남성 의류와 그 부속품(Men's or boys' underpants, briefs, nightshirts, pyjama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Of man-made fibres)(제61류)	89
자. 남성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Men's or boys' over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oraks (including ski- jackets), wind-cheaters, wind-jackets and similar artic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2.03./Of man-made fibres 2 Other)(제62류)	

.....	90
차. 베드린넨(bed linen) · 테이블린넨(table linen) · 토일렛린넨(toilet linen) · 주방린넨(kitchen linen) 중 인조섬유로 만든 것(제63류)	91
11. 신발류 · 모자류 ·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64류~제67류)	92
가. 신발류 ·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Footwear for gymnastics, athletics or similar activities)(제64류)	92
나. 모자류와 그 부분품(Hats and other headgear, plaited or made by assembling strips of any material, whether or not lined or trimmed) (제65류)	93
다. 조제 깃털 · 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Skins and other parts of birds with their feathers or down, feathers, parts of feathers, down and articles thereof (other than goods of heading 05.05 and worked quills and scapes))(제67류)	94
12.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68류~제70류)	96
가. 그 밖의 석회질 암석(Other calcareous stone)(제68류)	96
나. 도자 제품(Articles having a hardness equivalent to 9 or more on the Mohs scale/Other)(제69류)	97
다. 유리 섬유 직물(Open woven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 (제70류)	98
13.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99
가. 귀석 · 반귀석(Of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natural, synthetic or reconstructed/For laboratory or industrial purposes)(제71류) ..	99
14. 비금속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100
가. 철강 또는 비철강선 기타(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25%	

of carbon)(제72류)	100
나. 기타 철강제품(Tanks, casks, drums, cans, boxe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iron or steel,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l,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Others)(제73류)	101
다. 구리와 그 제품(Copper bars, rods and profiles/Others)(제74류) ..	102
라. 니켈(Nickel alloys)과 그 제품(제75류)	103
마. 알루미늄과 그 제품(Aluminium tubes and pipes/Of aluminium alloys)(제76류)	104
바. 아연과 그 제품(Other articles of zinc)(제79류)	105
사. 그 밖의 비금속, 서멧, 이들의 제품(Cermets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제81류)	106
야. 기타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 품속제 공구·스푼·포크(Spoons, forks, ladles, skimmers, cake-servers, fish-knives, butter-knives, sugar tongs and similar kitchen or tableware)(제82류)	107
자. 조립 가구에 사용되는 전용 부품(Other, suitable for furniture) (제83류)	108
15.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제84류~제85류)	109
가.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Other reciprocat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s)(제84류)	109
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Other appliances)(제85류)	110
16.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86류~제89류)	111

가. 수송 컨테이너(Containers (including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f fluids) specially designed and equipped for carriage by one or more modes of transport)(제86류)	111
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Other)(제87류) ..	112
다.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Other parts of aeroplanes, helicopters or unmanned aircraft)(제88류)	113
라. 선박과 수상 구조물(Other floating structures (for example, rafts, tanks, coffer-dams, landing-stages, buoys and beacons)(제89류) ..	114
17.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제92류)	116
가. 기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Optical fibres and optical fibre bundles; optical fibre cab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5.44; sheets and plates of polarising material; lenses (including contact lenses), prisms, mirrors and other optical elements, of any material, unmounted, other than such elements of glass not optically worked/Others)(제90류)	116
나. 시계와 그 부분품(Other clock or watch parts)(제91류)	117
다.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Percussion musical instruments (for example, drums, xylophones, cymbals, castanets, maracas))(제92류)	118
18.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119
가. 기타 무기(Other arms (for example, spring, air or gas guns and pistols, truncheons), excluding those of heading 93.07)(제93류) ..	119
19. 잡품(제94류~제96류)	120
가.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Others seats)(제94류)	120
나.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제95류)	120
다. 기타 볼펜 등 잡품(Ball point pens; felt tipped and other porous-tipped pens and markers; fountain pens, stylograph pens and other pens; duplicating stylos; propelling or sliding pencils; pen-holders, pencil-holders and similar holders; parts (including caps and clips) of the foregoing artic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6.09/Others)(제96류)	121
제2편 관세평가 결정사례	123
I. 관세평가 개요	123
1. 관세평가	123
2. 관세평가에 관한 협정	124
가. 1948 GATT 제7조	124
나. 1994 GATT(WTO 협정)	125
II. 관세평가 제도	127
1. 개요	127
가. 수입거래	128
나. 판매자와 구매자	128
2.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129
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	129
나. 실제지급가격	129
다. 기타 비용 가산요소	131
3. 수입거래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	138
4. 거래가격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140
가.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방법	140
나. 국내 판매 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141

다. 제조원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142
라. 합리적인 조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143
마.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144
Ⅲ.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근거한 방법 관련 사례	146
1. 수입거래의 인정 관련 사례	146
가. 자국 거주자와의 거래에 따른 수입	146
나. 역위탁가공무역에 따른 수입	147
다. 보세창고 보관 중 재판매	148
라. 특수관계자와의 도매거래	148
2. 실제지급가격 관련 사례	149
가. 실제지급가격	149
나. 상쇄 비용	165
다. 할인 적용	168
라. 실제지급가격 제외 비용	170
3. 가산요소 관련 사례	171
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	171
나. 중개료 등의 수수료	174
다. 수입물품의 포장에 필요한 비용	176
라. 무상제공	178
마. 로열티 등	181
4. 수입거래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 관련 사례	184
가. 폐기 또는 사용제한	184
나. 과세가격 결정이 어려운 조건	185
Ⅳ. 거래가격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사례	187
1.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관련 사례	187
가. 대체품으로 수입되는 무상물품	187

나. 동종물품이 인상될 경우 무상물품	188
다.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품질이 다른 경우	189
2. 산정 및 역산 가격 관련 사례	190
가. 국내 판매 가격의 적용	190
3. 합리적인 조정에 따른 가격 관련 사례	193
가. 수입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형	193
나. 수리 후 재수입된 물품	194
다. 제3국에 보관된 수입물품	195
라. 제3국에 보관된 수입물품(물품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197
4.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관련 사례	199
가.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	199
나. 개인용 물품	200
 V. 요약 및 결론	 204
 참고문헌	 207

표 목차

제1편

〈표 1-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2017~2021년)	3
〈표 1-I-2〉 일본의 수출입 현황(2017~2020년)	4
〈표 1-I-3〉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입 현황	4
〈표 1-I-4〉 2021년 우리나라의 대일본 10대 수출입품목	5
〈표 1-I-5〉 2021년 일본의 수출입액 기준 상위 10개국	6
〈표 1-I-6〉 일본 관세국의 업무	8
〈표 1-II-1〉 원산지 사전교시 답변 항목	15
〈표 1-II-2〉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21
〈표 1-II-3〉 제7차 HS 개정의 주요 내용	23

그림 목차

제2편

[그림 2-Ⅲ-1] 제3국에 보관된 수입물품 흐름도	196
[그림 2-Ⅲ-2] 제3국에 보관된 수입물품 흐름도(물품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198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I. 일반 및 경제 개황

1. 일반 개황¹⁾

- 정식 국가 명칭은 일본(Japan)으로 수도는 도쿄이고, 사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 기후를 보임
 - 남북 길이가 약 3,300km로 지역별로 기후 편차가 심한 편이며 북부는 아한대, 중부는 온대, 남부는 아열대 및 열대몬순 기후임
 - 국가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는 도쿄이며 다른 주요 도시로는 후쿠오카, 후쿠시마, 고베, 교토, 나고야, 오사카, 삿포로, 센다이, 요코하마 등이 있음

- 국토 면적은 37만 7,974km²(자료원: 총무성, 2022년 1월 발표 기준)으로 한반도의 약 1.7배이며 인구는 1억 2,526만명(자료원: 총무성, 2022년 3월 발표 기준)이며 공식 언어는 일본어임
 - 민족은 대화족(大和族: 야마토족)이 99% 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이 1% 미만으로 구성됨

1) CIA World Factbook, KOTRA 및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일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2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종교는 신도(48.6%), 불교(46.3%), 기독교(1.0%), 기타(4.0%)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 국가형태는 입헌군주제임
- 우리나라와는 1965년부터 수교하고 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최종 타결되어 양국은 처음으로 경제연대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체결하게 되었음
 - RCEP는 2020년 11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ASEAN 10개국 등 15개국이 체결한 경제 협력 협정으로 2022년 2월부터 발효됨
 - 일본은 우리나라와 2005년을 목표로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독도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정치적 현안들로 인해 2006년 결렬되었음

2. 경제 개황

가. 주요 경제지표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1.7%에서 202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4.6%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1년 경제가 회복되면서 1.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명목 GDP는 2017년 4조 9,300억달러에서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5조 40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4조 9,37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1인당 명목 GDP는 2017년 3만 8,903.3달러에서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및 2020년에는 4만달러대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3만 9,339.84달러로 감소하였음
 - 정부부채는 2017년 231.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263.1%를 기록하였음

-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는 2018년 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0.3%를 기록하였음

〈표 1-1-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2017~2021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1.7	0.6	-0.2	-4.6	1.7
명목 GDP(십억달러)	4930.837	5037.834	5123.318	5040.108	4937.422
1인당 GDP(PPP, 달러)	41,408.95	42,730.29	43,484.55	42,153.52	42,940.4
1인당 명목 GDP	38903.3	39826.25	40590.14	40048.93	39339.84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	0.5	1	0.5	0	-0.3
정부부채(% of GDP)	231.4	232.5	236.1	259	263.1
외환보유고(백만달러)	1202071	1208958	1255322	1312160	1278925
환율	112.17	110.42	109.01	106.77	109.75

자료: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rofile/JPN> 및 OECD,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a5a3867c-en.pdf?expires=1664947867&id=id&accname=guest&checksum=6B59602DB15671D0F0AE4AF2700F6CA9>, 검색일자: 2022. 10. 5.

나. 수출입 동향

1) 일본의 수출입 동향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의 경우 2020년에 비해 약 1,170억달러 증가하여 약 7,560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수입액의 경우 수출액과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기준 약 7,700억달러를 기록함
- 2021년 기준 무역수지는 2020년 대비 약 140억달러 적자를 보였으며, 2017년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보임

4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표 1-1-2〉 일본의 수출입 현황(2017~2020년)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672.9	747.7	721.8	633.5	769.4
수출	698.9	739.0	706.0	639.0	755.7
무역수지	26.0	-9.0	-15.8	6.5	-14.5

자료: OECD,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a5a3867c-en.pdf?expires=1664947867&id=id&accname=guest&checksum=6B59602DB15671D0F0AE4AF2700F6CA9>, 검색일자: 2022.10.5.

2) 한-일본 수출입 동향 및 수입규제

- 2020년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국으로,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약 1,316억달러임
-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약 251억달러로 전년 대비 11.7% 감소하였고 대일 수입은 약 460억달러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약 166억달러 흑자를 기록함

〈표 1-1-3〉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증감률 ¹⁾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26,816	10.1	30,529	13.8	28,420	-6.9	25,098	-11.7	30,062	19.8
수입	55,125	16.1	54,604	-0.9	47,581	-12.9	46,023	-3.3	54,642	18.7
수지	-28,309	22	-24,075	-15	-19,161	-20	-20,925	9	-24,580	17

주: 1)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1.10.18.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일본 10대 수출 품목은 은, 제트유 및 등유, 나프타, 집적회로반도체, 기타정밀화학원료 등임
 - 경유, 휘발유, 합성수지, 화장품, 냉연강판 또한 대일본 10대 수출 품목임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일본 10대 수입 품목은 반도체제조용장비, 집적회로반도체, 기타플라스틱물품, 개별소자반도체, 고철 등임
 - 기타정밀화학원료, 기초유분, 열연강판,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기타화학공업물품 또한 대일본 10대 수입 품목임

〈표 1-1-4〉 2021년 우리나라의 대일본 10대 수출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				수입			
	코드 ¹⁾	품목명	금액	증감률	코드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1112	은	1,342	-0.2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163	1.9
2	1333	제트유 및 등유	1,209	6.6	8311	집적회로반도체	1,045	2.5
3	1334	나프타	1,056	-3.6	3109	기타플라스틱물품	461	-0.2
4	8311	집적회로반도체	1,045	2.5	8313	개별소자반도체	157	1.4
5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002	2.9	6184	고철	68	3.5
6	1332	경유	968	0.7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002	2.9
7	1331	휘발유	871	3.1	2110	기초유분	349	3.0
8	2140	합성수지	844	2.5	6132	열연강판	653	3.5
9	2273	화장품	783	1.4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304	4.5
10	6133	냉연강판	756	1.9	2900	기타화학공업물품	181	-1.1

주: 1)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cstat/peri/ctr/CtrItemList.screen>, 검색일자: 2021. 10. 18.

- 2021년 기준 일본의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은 제4위의 수출국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제5위의 수입국임
 - 2021년 기준 일본의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대만, 한국, 홍콩, 태국, 독일,

6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임

- 2021년 기준 일본의 10대 수입국은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태국, 독일, 베트남 등임

〈표 1-1-5〉 2021년 일본의 수출입액 기준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금액	증감률	국가명	금액	증감률
1	중국	17,984,521.0	19.2	중국	20,353,401.0	16.5
2	미국	14,832,457.0	17.6	미국	8,890,432.0	19.7
3	대만	5,986,639.0	26.3	오스트레일리아	5,696,784.0	49.7
4	한국	5,769,483.0	21.0	대만	3,692,425.0	29.3
5	홍콩	3,890,304.0	13.9	한국	3,519,625.0	24.0
6	태국	3,624,543.0	33.1	사우디아라비아	3,018,928.0	53.3
7	독일	2,279,304.0	21.4	아랍에미리트 연합	2,978,335.0	70.2
8	싱가포르	2,200,669.0	16.5	태국	2,886,790.0	13.8
9	베트남	2,096,862.0	14.8	독일	2,594,873.0	14.6
10	말레이시아	1,713,753.0	27.6	베트남	2,521,809.0	7.2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cstat/peri/ctr/CtrItemList.screen>, 검색일자: 2021. 10. 18.

-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의 탄산칼륨, 철강제 관연결구류, 수산화 칼륨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음
- 탄산칼륨에 30.8%,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41.8%~69.2%, 수산화 칼륨에 49.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3. 관세행정조직

- 일본 관세국은 재무성의 하위 기관인 내부부국으로서, 국장 및 2명의 부국장, 하위 6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음

- 관세국의 9가지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²⁾
 - 관세, 톤세, 특별톤세, 그 밖의 관세행정(타 국가와의 관세 관련 협정 포함)의 연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톤세·특별톤세 그 밖의 조세, 국제운송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관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물품, 선박, 항공기 및 여객의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 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통관사 및 등록 세관원의 감독에 관한 사항
 -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에 의한 해상 및 항공 화물 처리에 관한 사항
 - 무역통계에 관한 사항
 - 세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관세·외환 및 기타 거래에 관한 심의회 관세 분과에 대한 일반 서무 업무

- 관세국은 총무과, 관리과, 관세과, 감시과, 업무과 및 조사과의 6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하위에 실을 두고 있으며 실무상 실과 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³⁾

2)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english/zeikan/k-kikou_e.htm, 검색일자 2022. 11. 15.

3) 강성훈 외(2016), p. 26.

〈표 1-1-6〉 일본 관세국의 업무

부서		업무
총무과		· 관세, 통세 및 특별통세에 관한 정책 일반에 관한 사무 · 관세국·세관의 기구·정원, 예산에 관한 사무 - 관세국 내 종합 조정
	사무관리실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처리 센터에 관한 사무 · 세관 사무에 관련된 전산처리에 관한 조사, 기획, 조정
관리과		· 세관 직원의 인사, 교양, 훈련
	세관고사관리실	· 세관사무의 운영, 직원의 복무에 관한 감사
관세과		· 관세 등에 관한 제도의 조사, 기획, 입안 · 관세 등에 관한 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조사, 연구 · 관세·외환 등 심의회 관세 분과회의 서무에 관한 사무 · 무역통계 작성, 공표
	참서관실 (국제교섭 담당)	· 경제 협력 및 개발에 관한 국제기구에 관한 관세 등에 관한 사무 · 세계무역기구에 관한 사무 · 외국 관세 등에 관한 제도 조사, 연구 · 외국 무역 사정 조사, 연구
	경제 협력실	· 경제적 제후에 관한 사항의 기획·입안
	참서관실 (국제협력담당)	· 관세 등에 관한 다수국 간 협정 및 양국 간 협정 또는 협의의 기획, 입안 · 지역 협력에 관한 국제기구에 관한 관세 등에 관한 사무 · 관세협력이사회에 관한 사무 · 관세국의 사무와 관련된 국제 협력에 관한 사무
	특수관세조사실	· 특수관세에 관한 조사
	원산지 규칙실	· 원산지 규칙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세관조사실	· 세관 행정에 관한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조사, 연구
감시과		· 관세법규에 의한 수출입화물, 선박, 항공기 및 여객 단속에 관한 사무 · 여객·승무원의 휴대품 등에 관한 관세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 개항 및 세관 공항에 관한 사무 · 보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

〈표 1-1-6〉의 계속

부서	업무
업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톤세, 특별톤세 등의 부과징수 ·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무 ·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사무 · 화물 수출입 허가, 승인 · 수출입물품 분석 · 우편물 수출입 · 통관업의 허가, 통관업자의 감독, 통관사 시험에 관한 사무 · 관세 등 불복 심사회에 관한 사무
지적 재산 조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재산 침해 물품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관한 조사
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화물의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의 조사 · 수출물품의 조사, 검사에 관한 사무 · 관세법규의 범칙사건의 조사, 처분, 정보에 관한 사무 · 정보에 관한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연락, 조정

자료: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k-kikou.htm>, 검색일자: 2022. 11. 15.

- 기타 세관연수소에서는 세관 행정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관세 등에 관련된 연수 국제 협력을, 관세중앙분석소에서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고급 분석, 분석에 필요한 시험, 연구,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음

II. 사전교시제도 및 품목분류

1. 사전교시제도

가. 개요

- 일본의 사전교시제도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감면세 4개 분야에 대해 세관이 사전에 조회 및 회답해주는 제도임
 - WCO 개정교토협약 표준 9.9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에서 사전심사의 일반적 정의는 세계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각국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 관세당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관련 법은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17(수입허가 전 물품에 대한 세액 등의 통지)를 근거로 함
 - 동항 규정에 의한 교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항 7-18, 7-19, 7-22에 있어서 동일함
 - 문서 회신은 조회에 대해 교시하는 것을 말함
- 사전교시제도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해 질문하고 답변받았을 때 실제 효력을 가짐
 - 「관세법」 제7조 제3항(신고)의 규정에 의한 교시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한 조회를 받아 문서로 회신하는 것으로 함
 - 문서에 의한 회신은 조회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 의견 제출이 가능하지만, 구두에 의한 회신은 의견 제출이 불가능함⁴⁾

- 구두에 의한 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회신하지만 수입신고 시 취급이 문서에 의한 경우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함⁵⁾
 - 문서에 의한 회신은 일정 조건하에서 수입신고 시 회신서에 기재된 내용(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적용 구분 및 세율과 법 제70조(증명 또는 확인)에서 규정하는 타 법령에 관한 우대가 이뤄지는 데 반해, 구두에 의한 회신은 우대가 이뤄지지 않음

- 구두로 회신을 요청받은 경우 관세율표 적용상의 소속구분 또는 원산지에 관한 조회 및 회신 절차 등은 다음을 따름
 - 조회자의 명칭, 담당자명, 연락처 및 수입자, 수출자 또는 이해관계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조회와 관련된 화물의 설명 및 조회자의 의견, 조회와 관련된 화물의 수입예정 시기 및 수입예정 관서 등을 청취해 청취한 사항을 판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소속세관의 수석관세감사관 또는 원산지조사관을 통해 총괄관세감사관 또는 총괄원산지조사관과 협의하도록 함⁶⁾

- 사전교시 회답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사전교시 조회처는 세관별로 다름
 - 조회 내용과 현품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법령 등의 개정에 의해 변경된 경우, 회답이 법령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회답서는 수입신고 심사 시 효력이 없음
 - 조회 방법은 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서에 의해 신청함⁷⁾

- 회답에 따른 관세율표 적용상의 분류에 재검토를 희망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회답서의 교부 또는 송달이 있는 날의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4) 조회자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 당해 물품의 제조법, 성상 등을 파악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행하도록 함
5)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17.
6)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7-19.
7) 하코다테세관 0138-40-4716, 도쿄세관 03-3529-0700, 요코하마세관 045-212-6156, 나고야세관 052-654-4139, 오사카세관 06-6576-3371, 사전교시 조회용 메일주소는 홈페이지의 세번, 세율의 조회 또는 사전교시 안에 게재되어 있음

나. 과세가격 사전교시⁸⁾

- 과세가격 사전교시란 물품 수입예정자와 기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미리 당해 물품의 관세평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을 요청해 답변받을 수 있는 제도임⁹⁾
- 과세가격 사전교시에 대한 서면 문의는 거래 요약 등이 포함된 기재항목을 작성해 사전교시 신청서(관세평가문의용)(C-1000-6)와 심사에 필요한 사본 및 매매계약서 등의 기타 서류를 해당 수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함
- 과세가격 사전교시제도는 사전에 과세과격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수입통관 시 신속한 심사를 통해 통관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사전교시제도를 통해 사전에 세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가계산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고, 수입신고 시에 화물의 세번, 관세율 등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수입통관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음
- 사전교시 문의를 받으면 세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수입예정인화물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사전교시 회답서를 발급함
- 원칙적으로 세관은 사전교시 신청서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응답함
- 만약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교시 답변에 대한 의견 요청(변경 통지)(세관 평가 응답의 경우)(C-1001-1) 사본을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함

8)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g>, 검색일자: 2022. 10. 4.

9)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일본II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p. 69.

- 단 의견 제출은 사전교시 회답서가 발행되거나 제공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두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과세가격 사전교시에 대한 사례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kaitoujirei.htm>

다. 품목분류 사전교시¹⁰⁾

-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교시는 수입관계자가 수입을 예정하고 있는 화물의 관세율표상의 분류 및 관세율 등에 대해 사전에 세관에 조회하여 그 회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물품의 수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전 세관에 미리 당해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대한 문의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받음
 - 사전교시 회답서를 발급한 세관, 처리일자, 심사대상물품의 품명 및 상세내역, HS 코드, 결정내용과 이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사유 등이 기재됨
- 수입할 화물의 품목분류를 미리 알 수 있으므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산하고 판매 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음
- 또한 화물의 수입통관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화물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음
- 사전교시에 대한 조회서는 C-1000 양식이 적용되며 사본 및 참조를 수입하려는 세관 사무소(또는 세관에 문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가까운 세관)에 제출함

10)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g>, 검색일자: 2022. 10. 4.

14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사전교시에 대한 조회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조회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품명, 상표 및 모델번호, 단가, 제조자, 수입예정관서, 조회물품의 설명(제법, 성상, 성분비율, 구조, 기능, 용도, 포장 등), 관세율표 적용상의 소속 구분 등에 관한 의견 등임
 - 수입예정물품의 샘플 등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우편, 택배 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 문의를 받으면 세관은 제출된 문의 양식과 같은 정보를 검토하고, 화물의 세금번호 및 관세율을 결정한 다음 응답 처리함
 - C No. 1000 신청서는 https://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1000.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세관은 문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응답해야 함
- 만약 답변 내용에 추가적 의견이 있을 시에는 사전교시 회신서 변경통지서 겸용(양식 C-1000-1)을 관할 세관에 제출할 수 있음
- 단 의견 제출은 사전교시 회답서가 발행되거나 제공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두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사전교시 회신서 변경통지서 겸용에 들어가는 내용은 관세율표 적용상의 소속 구분 및 통계품목번호, 관세율, 내국소비세 등의 적용구분 및 세율, 조회물품의 일반적 품명, 조회물품의 개요, 분류이유 등이 기재되어야 함¹¹⁾

라. 원산지 사전교시¹²⁾

- 원산지 사전교시는 물품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에 대한 문의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받을 수 있는 제도임

11)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세관양식 C제1000호-1

12)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h>, 검색일자: 2022. 10. 4.

- 수입자가 예견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수입 신고 전에 이에 앞서서 수입국의 세관당국의 견해를 알고 싶은 경우에 신청함
- 원산지에 대한 서면 사전교시 신청은 원자재내역서, 품목번호, 가공내용 및 제조 방법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사전교시 신청서(원산지 신청용) 양식 1부와 원자재내역서, 제조공정도, 사진, 도면 등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함
- 원산지 사전교시 답변 항목은 등록번호, 세관, 처리일자, 품명, 세번, 화물의 개요, 종별, 답변, 원산지 인증 이유, 근거 법령 등이 있음
- 사전교시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사전교시 회답서에 대한 의견 신출서 1부를 작성해 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함

〈표 1-11-1〉 원산지 사전교시 답변 항목

등록번호	· 사전교시 응답서의 등록번호
세관	· 관할 세관
처리 날짜	· 사전 지시 응답 양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완료된 날짜
화물명	· 수입예정물품의 일반적인 물품명
세금 번호	· 조회 화물의 세금 번호 (4자리/6자리/9자리)
응답	· 기본 설정 유형을 기반으로 한 답변
적용 세율 유형	· 적용되는 세율의 종류
화물 개요	· 사전교시에서 무의한 화물의 개요(제조, 제조공정에 사용된 재료, 가공 국가 등)
원산지 인증 이유	· 원산지 인정 이유
법령	· 사전교시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의 근거

자료: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origin/kaitoujirei.htm>, 검색일자: 2022. 10. 4.

- 재심사 신청은 관련 부서에 전달되어 재검토되며, 보통 30일 이내 재검토 답변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조회의 범위는 관세율표 적용상의 소속 구분 등 또는 원산지에 관한 조회임¹³⁾
 - 가공물품에 관련한 조회가 아닌 구체적인 물품과 관련한 조회일 것
 - 조회자가 조회서 및 자료를 제출하고 조회 내용 심사 시에 심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 이루어진 것
 - 위 두 내용 이외에 조회 내용이 아래에 규정하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갖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함

마. 감면 사전교시

- 감면 사전교시는 물품 수입 당사자가 화물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서면으로 답변받을 수 있는 제도임

- 감면 사전교시에 관한 서면 문의는 물품 개요 등이 포함된 세금 감면 및 면제 문의용(세관 양식 C No. 1000-22)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C No. 1000-22 신청서는 https://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1000-22.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세관은 제출된 문의 양식을 검토하고 수입할 화물에 대해 관세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사전교시에 대해 응답함
 - 추가의견이 있을 시 세금 감면 및 면제에 대한 회신용(세관 양식 C No. 1000-23)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13) 일본 「관세법」, 7-18.

- 만약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교시 답변에 대한 의견 요청 (변경 통지)(세관 평가 응답의 경우)(C-1001-2) 사본을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단 의견 제출은 사전교시 회답서가 발행되거나 제공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두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감면 사전교시에 대한 사례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의 홈> 수입 및 수출 절차> 사전교시(세금 감면 및 면제)
-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genmenzei/kaitoujirei.htm>

2. 품목분류¹⁴⁾

가. 품목분류 개요

1) 품목분류 의의 및 HS 협약

가) 품목분류 의의

- 품목분류(品目分類, Nomenclature, Classification)란 상품분류(商品分類)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 물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물품별로 일정한 명칭 및 부호를 부여하고 배열하는 작업을 의미함¹⁵⁾
 - 또한 구체적인 물품이 이와 같이 작성된 물품배열표상의 어느 물품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임

- 어떤 물품이 수입된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목적으로 제정된 품목분류표인 관세율

14) 본 내용은 국가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정재현·김미정·노영예,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결정사례-미국(품목분류)』, 2021. 12., 제2장 제2절의 품목분류에서 설명한 내용을 사용하였음

15)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4. 1., p. 260.

18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표상의 어느 물품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는 품목분류 작업이 완료되어야 해당 물품에 적용할 구체적인 세율을 확정할 수 있음¹⁶⁾

- 품목분류 작업은 관세 과세요건의 확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복잡성으로 인해 가장 많은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관세 행정 분야 중의 하나임
-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의 부과목적 이외에 수출입품목의 관세 감면 및 환급,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표시 및 수출입요건 확인 등의 세관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임
- 또한 무역통계를 작성할 때도 품목분류의 체계에 따라 통계분석을 진행함¹⁷⁾

나) HS 협약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는 1988년 1월 1일 상품의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물품 및 관세 분류체계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을 채택하였음¹⁸⁾
- HS 협약은 전문(Preamble)과 20개 조항(Articles) 및 부속서(Annex)로 구성됨
 - HS 위원회(The Harmonized System Committee)는 사용자의 요구와 기술 및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에 따른 HS 부호체계의 개선 및 신상품 품목분류의 논의 및 결정을 위해 약 5년을 주기로 HS 품목분류표를 개정하고 있음¹⁹⁾
 -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되는 사유로는 무역거래량²⁰⁾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품목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 주요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제협약사무국의 요청

16) 김기인(2015), p. 260.

17) 김진규, “제7차 HS 협약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20. 12, pp. 128~129.

18)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9.

19) HS 협약 제7조 제(a)호

20) 통상 4단위 호(heading)의 경우 연간 국제거래량 1억달러, 6단위 소호(subheading)의 경우 연간 국제거래량 5천만달러를 기준으로 함

에 따른 개정, 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등을 들 수 있음²¹⁾

-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란 특정 수출입물품에 대해 HS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에 규정된 해당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²²⁾
- WCO에 따르면 2020년 10월 1일 기준 160개 협약 체약국과 212개 국가·경제연합체가 협약의 부속서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적용하고 있음²³⁾
 - 각 협약 체약국은 협정에서 규정한 체약국의 의무에 따라 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자국의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HS 체계와 일치시켜 사용해야 함²⁴⁾
 - 체약국인 우리나라는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HS 품목분류표를 자국의 사정에 맞게 국내법으로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2) HS 품목분류표

- HS 협약은 HS 체계의 일반구조와 정의에 대하여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Headings)와 소호(Sub-Headings) 및 그들과 관련된 부호(Numerical codes), 부(Section)·류(Chapter)·소호의 주(Notes) 및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GRI)으로 구성된 품목분류표(Nomenclature)를 의미한다고 규정함²⁵⁾

21) 김성채, 『2022년 HS 개정내용 해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2022, p. 1.

22) 박철구, 『관세법 핵심쟁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9, p. 277.

23) WCO, <http://www.wcoomd.org/en/topics/nomenclature/overview/list-of-contracting-parties-to-the-hs-convention-and-countries-using-the-hs.aspx>, 검색일자: 2022. 5. 3.(최신자료로 작성하였으며 홈페이지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음)

24) 박철구(2019), p. 277.

25) HS 협약 제1조 제(a)호.

- HS 품목분류표는 통칙, 주, 세번(호 및 소호)의 3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짐²⁶⁾
 - 통칙은 HS 품목분류표 첫 부분에 규정되어 있음
 - 주는 부의 주(section notes), 류의 주(chapter notes) 및 소호의 주(sub-heading notes)가 있음
 - 각 부, 류, 호·소호의 분류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다른 부 또는 류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며 용어에 대해 정의하는 등 품목분류상의 지침을 규정함²⁷⁾
 - 세번은 호 및 소호로서 HS 품목분류표는 모든 물품을 21개의 부로 분류한 후, 이를 96개(제77류 유보)의 류로 분류하고 다시 4단위 호로 분류하며, 4단위 호는 6단위 소호로 다시 분류하고 있음²⁸⁾
 - 제98류·제99류는 체약국이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보해 둠²⁹⁾
 - HS 협약에 따라 6단위 소호까지만 분류되어 있어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체약국이 관세목적 또는 통계목적상 이를 더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³⁰⁾

- HS 품목분류는 원재료로부터 시작하여 가공공정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에 따라 농·수·임산물, 광물 및 화공약품, 경공업 물품, 기계·전기기기, 전자·정밀기구, 잡품 및 미술품 순으로 배열됨³¹⁾

3)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 HS 품목분류표는 HS 제도의 기준이 되는 규칙으로서 HS 제도의 각각의 세 번의 통일된 법적 해석(uniform legal interpretation)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을 맨 앞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이라고 함³²⁾

26) 국제원산지정보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규정 상이사례 분석』, 2011. 10, p. 8.

27) 국제원산지정보원(2011), p. 9.

28) 김기인(2015), p. 262.

29) HS 협약 제3조 제1항 제(a)호

30) HS 협약 제3조 제3항

31) 국제원산지정보원(2011), p. 9.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에는 6개의 통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칙들은 계층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되는데, 통칙1은 통칙2에 우선하고, 통칙2는 통칙3에 우선하며 이후의 통칙들도 통칙4, 통칙5, 통칙6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음³²⁾
- 통칙1은 가장 기본이 되는 통칙으로서 최우선으로 각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규정함³⁴⁾
- 통칙2는 각호의 용어상 분류되는 물품의 적용범위를 불완전·미완성 물품, 혼합물·결합물까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 예외적 규정임³⁵⁾
- 통칙3은 혼합물·결합물 등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임³⁶⁾
- 통칙4는 과학기술의 발달 및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 등에 따라 수출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함³⁷⁾
- 통칙5는 보완적 적용규칙으로서, 제시되는 물품이 포장된 경우 해당 포장을 내용물과 같이 분류할 것인지 또는 분리하여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함³⁸⁾
- 통칙6은 소호의 분류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한 규정으로서, 먼저 4단위 호를 결정한 이후에 5단위, 6단위 세분류 시 적용되는 규정임³⁹⁾

〈표 1-II-2〉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구분	내용
통칙1	이 표의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 분류는 각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호나 주에서 따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2 내지 통칙6 규정에 따른다.

32) 김기인(2015), p. 264.

33) 김기인(2015), pp. 264~265.

34) 국제원산지정보원,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2010, p. 29.

35)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34.

36)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39.

37)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46.

38)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48.

39)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50.

〈표 1-Ⅱ-2〉의 계속

구분	내용
통칙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p>(a) 각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b) 각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통칙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p>
통칙3	통칙2(b)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a)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p>(b)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p> <p>(c) 통칙3(a) 또는 통칙3(b)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p>
통칙4	통칙1호 내지 3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통칙5	다음의 물품에는 통칙1 내지 4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p>(a)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일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b) 통칙5(a)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p>

〈표 1-11-2〉의 계속

구분	내용
통칙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자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가) 2022년 HS

- HS 제7차 개정판(이하 2022년 HS)은 개정 주기로는 여섯 번째에 해당하며, 2022년 HS는 2019년 6월,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음⁴⁰⁾
- 2022년 HS는 2017년 HS와 비교하여 호(heading)의 수가 6개 늘어나고 소호(sub-heading)의 수는 222개 증가함

〈표 1-11-3〉 제7차 HS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 개요	주요 개정내용
바젤협약의 요청에 따른 산업폐기물(e-waste)의 특계	- 제8549호를 신설하여 전기, 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 특계(전기전자 조립품, 인쇄회로 보드 또는 전기전자 물품 등의 폐기물)
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품목분류표 개정	- 식용곤충 특계 - 여러 가지 목물품 특계 - 오존층 파괴물질, 온실가스, 화학무기 원료, 마약원료 등과 관련한 개정 - 태양열 및 태양광 사용물품의 소호 신설
궐련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물품 등장과 관련한 개정	- 제2404호 신설(전자담배 및 금연보조제, 니코틴 물품 등) - 전자담배용 기화기(제8543.40호)
군민양용(dual use) 물품과 관련한 품목분류표 개정	- 제81류의 기타 비금속에서 특정 물품 특계 - 생물학적 안전캐비닛, 동결건조기, 고속카메라와 야간 감시카메라 등

40) 김성채, 『2022년 HS 개정내용 해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2022, p. 2.

〈표 1-Ⅱ-3〉의 계속

개정 개요	주요 개정내용
신상품 및 국제무역상 중요 품목의 반영	- LED 물품의 특계(제8539호, 제9405호 등) - 스마트폰(제8517.13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3D프린터(제8485호) 등의 호·소호 신설
제8541호 반도체의 범위 확대	- 제8541호 분류체계 개편 및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 개념 도입
제17부 수송기기	- 제8806호(무인기) 신설 - 제8701호와 제8704호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위한 소호 신설 - 제8903호의 세분류

자료: 김성채(2022), pp. 3~4, 〈제7차 HS 개정(22.1.1 시행)의 주요 내용〉 표를 차용하였음

나. 일본의 품목분류

- 일본 관세국(関税局)에서 실행관세율표(実行関税率表)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종 9단위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 6자리는 세계 공통 분류체계인 HS코드이며, 뒤의 세 자리는 통계목적에 포함된 상세 품목 분류코드로 사용하고 있음
 - 일본의 품목분류 규정은 관세정률법 별표, 관세율표, 수출통계품목표 및 수입통계, 품목표(고시), 관세율표 해설(통달) 및 분류예규(통달)로 구성됨
 - 분류예규는 WCO의 분류의견을 기초로 한 국제예규(1부)와 국내의 실제 분쟁 사례를 기초로 정리한 국내예규(2부)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실행관세율 제1류~제97류까지의 품목분류 사례를 다루었으며, 각 결정사례는 크게 1) 물품개요 2) 결정세번 및 사유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 결정사례는 크게 부와 부에 해당하는 류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결정사례마다 참조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참조번호로 링크를 대신하였음
 - 결정사례는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searchsv/jitsv001.jsp>)에서 조사하였음

- 일본의 실행관세율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으므로 편의상 일본 실행관세율 표기는 생략하였음
- 제1류~제97류의 사례를 선정할 시 사례에 대한 논의가 있거나 최신의 사례를 담고자 하였으나 해당 조건에 대한 사례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 사례를 설명하였음
- 물품의 명칭은 일본 관세국의 품목분류(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2022_04_01/index.htm)에 사용된 영문 명칭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Ⅲ. 품목분류 결정사례

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가. 선충(Other live animals, Nematodes)(제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106.90.09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2월 27일, 등록번호는 121003694임

1) 물품개요

- 병해충 구제용 선충으로 살아 있는 선충과 흡수성 고분자로 구성된 담황색 덩어리로 개별포장 되어 있음
 - 적당량을 물에 녹여 흙에 주입하거나 해충에 살포하는 방식이며, 트레이당 약 2만 5천마리 선충이 포장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물품은 병해충 구제용 농약으로 분류를 요청하였으나 성분 중 흡수성 고분자는 선충을 산 채로 운송 보관하기 위한 단순한 매개체로 보았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0106.90.090호 동물과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나. 프로슈토와 소시지(Prosciutto, Sausage)(제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210.19.020호, 제0203.19.022호, 제1601.00.9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2월 15일, 등록번호는 120002700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프로슈토 2종 및 소매용 소시지 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첫 번째 프로슈토는 돼지 허벅지를 염장, 세척, 건조 및 숙성 후 절단한 것이며, 두 번째 프로슈토는 돼지 어깨살과 소금, 조미료 혼합물을 함께 건조 및 숙성한 것임
 - 살라미 소시지는 돼지고기 다진 것과 소금과 조미료 혼합물을 케이스에 넣어 건조 및 숙성 후 케이스를 제거하고 절단한 것임
 - 소매(술 손잡이모형) 포장에 키토 33g, 프로슈토 34g, 살라미 소시지 33g이 10개 당 1팩으로 포장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프로슈토 2종류와 소시지는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 대한 해설(X)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3(b)에 대한 해설 (X)(b)에서는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첫 번째 프로슈토의 결정세번은 제02101.90.20호로 8.50%의 잠정세율(기본세율 10%)을 적용하며, 두 번째 프로슈토의 결정세번은 제0203.19.022호로 잠정세율 4.3%(기본세율 5%) 소시지는 제1601.00.900호로 기본세율 10%를 적용하였음
 - 따라서 소매용의 세트로 한 물품이라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 과세로 각각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다. 냉동 어류 필레(Frozen Fish fillets)(제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304.82.00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12월 20일, 등록번호는 119004525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필레와 정어리를 섞어 같은 봉지에 담아 얼린 것으로, 소금을 넣고 흔들 후 숙성시킨 필레를 잘라서 포장한 다음 누룩을 채워 냉동하여 포장함
 - 무지개송어(Oncorhinchus mykiss)를 원재료로 하였으며 pH 조절 산화방지제를 사용한 상업용 냉동식품으로 15g×50개입 봉지 16개가 한박스에 포장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 및 6에 따라 본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주고 있는 것은 필레로 물품 중에서 최대 중량을 차지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0304.82.000호 냉동 필레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임

라. 신선한 치즈(Fresh(unripened or uncured) cheese, including whey cheese, and curd)(제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406.10.09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20일, 등록번호는 122000077임

1) 물품개요

- 원유에 스타터⁴¹⁾를 첨가해 응고시켜 유청을 제거하고, 크림, 유단백 등을 혼합해 냉장한 업소용 치즈로 16kg당 한 봉지가 박스로 포장됨
 - 원료는 생우유, 크림, 유단백, 식염, 캐롭빈검, 잔탄검, 유산균으로 물성 유백색 고체형상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4류의 해설 주(4)에서는 유장의 농축물에 우유나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은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 제040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인 것
 -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 다만 제0406호 해설 (1)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호로 분류함
 -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 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나 처리하지 않은 치즈를 의미함(예: 리코타(Ricotta)·브로씨오(Broccio)·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크림치즈·모차렐라)

41) 치즈나 발효유를 만들기 위하여 배양한 유산균이나 효모

30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0406.10.090호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5%임

마. 어류의 웨이스트(Fish waste/ Products of fish or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dead animals)(제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511.91.2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3월 5일, 등록번호는 121000530임

1) 물품개요

- 한 번 건조된(식용 불가) 어류의 웨이스트로 스케소라, 초산나트륨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한박스당 10kg으로 포장된 상업용 개, 고양이용 사료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제0511.91.2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5%임
 - 다만 아세트산나트륨(sodium dehydroacetate)의 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해당 세번을 적용하도록 함
 - 제0511호의 해설에서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해당 호로 분류하고 있음
 - 제051191호 해설에서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를 해당 호로 분류하고 있음

2.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가. 말린 꽃(Dried flowers)(제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603.9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2월 3일, 등록번호는 120003949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소매 포장된 건조화, 조화, 플라스틱물품 등으로 이루어진 꽃다발을 모방한 장식임
 - 장식은 인공 꽃, 드라이 플라워, 플라스틱(폴리에틸렌) 직형의 화분, 잎 등으로 이루어짐
 - 플라스틱 원형 막대에 플라스틱 원형 막대를 접합하고 스티로폼 대좌에 식물(이름 미상)을 삽입하고 겉면을 마른 식물로 덮어 꽃다발로 만든 뒤 밑면에 판지를 붙이고 훈증 후 판지대에 끼워 플라스틱 케이스를 씌우고 종이 리본과 꼬리표를 붙임
 - 조화는 소라(소라콩과, 학명 *Sesbania Scop*), 드라이 플라워는 수수 잔디(프림 로즈과, 학명 *Lysimachia clethroides*), 건조식물은(Phoenix, 팔마과 대추속, 학명 *Phoenix dactylifera*, 꽃다발 겉을 덮고 있음), 워터피아신스(*Pterophoridae*, 학명 *Eichhornia crassipes*(Mart)Solms)로 이루어짐
 - 포장재는 로프, 스티로폼 받침대, 면망(심재), (하부케지) 소매포장 PET(외장케이스), 골판지 종이(브라운트레이), 종이끈(리본, 지름 17cm, 높이 24cm 적용)이며 한 박스당 16개의 소매 포장된 조화가 들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 따라 본 물품에 중요한 특징을 부여하는 성분

은 본 물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드라이 플라워로 인식되며 장식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0603호로 분류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물품을 포장, 보관,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받침대, 외장케이스, 트레이, 종이끈 리본 등을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5(b)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한 물품으로 분류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5(b)에서는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0603.90.000호 기타 조화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임
-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된 것)의 기타로 분류됨

나. 냉동 채소(Frozen vegetables/Other vegetables)(제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710.80.09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5월 12일, 등록번호는 122001283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파와 볶은 파를 삶아 말린 미역, 전분, 물을 섞어 접시 모양으로 빚어 냉동한 채소임

- 파(대파, 파), 튀김, 건조 김, 전분 등이 재료이며, 된장국 재료(수입 후 잘라 동결건조)가 3.22kg로 진공 포장 후 4개씩 판지로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 따라 본 물품은 파, 튀김, 해조류를 혼합한 것으로,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냉동 채소이므로 제0710호로 분류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0710.80.090호 냉동 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함) 중 그 밖의 채소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0%임

다. 말린 과일과 화이트초콜릿(White chocolate) 혼합물(Mixtures of nuts or dried fruits/Other)(제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813.50.09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8월 21일, 등록번호는 119002854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건조과일과 화이트초콜릿의 혼합물로서 재료를 혼합하여 체에 계량 후 충전재로 적입 후 금속탐지 및 이물을 제거하여 밀봉한 것임
- 원료는 화이트초콜릿(설탕, 코코아버터, 전유분말), 오디, 술타나 건포도(술타나 건포도, 해바라기유), 아로니아 베리, 사워체리(사워체리, 해바라기유)임
- 소매용(그대로 먹을 수 있는 양) 포장으로 25g 봉지 10개가 한 상자에 포장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 따라 본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건조 과일의 혼합물이 최대 중량을 차지하고 있어 제0813호로 분류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제0813호 해설(B)에서 제8호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모든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규정함(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포함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0813.50.090호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0%임

라. 커피세트(Coffee, roasted, Not decaffeinated)(제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0901.21.00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9월 4일, 등록번호는 119003069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볶고 분쇄한 커피와 가공한 분유를 캡슐(용기)에 충전하여 같이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총 12개의 캡슐이 한 상자 포장되어 있음
 - 캡슐에 든 커피 분말(갈색 분말) 및 가공분유(캡슐에 담황색 분말포함)를 전용 기계에 순서대로 넣고 가공된 라텍스 분말(latex powder)과 커피를 추출한 후 혼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포장함

2) 결정세변 및 사유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 따라 본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물질을 커피로 인정하여 제0901호로 분류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0901.21.000호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중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0%임

마. 리소토(Risotto/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제1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1006.30.09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11월 28일, 등록번호는 119004238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삶아서 건조한 리소토로 간 치즈, 해바라기 기름, 유청가루 등을 섞은 쌀(반숙 건조)로 이루어져 있음
 - 물과 가열 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매용으로 175g당 1봉지가 15개씩 한 상자에 포장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 따라 본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물질

을 도정미(쌀)로 인정하여 제1006호로 분류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006.30.090호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음)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kg당 341엔임

바. 쌀, 전분, 밀가루의 혼합물(Mixtures of rice, starch and flour/Cereal flours other than of wheat or meslin)(제1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102.90.39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7월 27일, 등록번호는 120002156임

1) 물품개요

- 찹쌀가루, 마니오카 전분, 밀가루(강분), 분말 한천(powdered agar) 등의 혼합물로 백색 또는 유백색 분말용도 도라야키 껍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20kg/크래프트백이 하나의 백에 포장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 따라 본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물질을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찹쌀로 인정하여 제1102호로 분류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

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102.90.390호 곡물의 고운 가루(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 중 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kg당 442엔임

사. 양념세트(Seaweeds and other algae/Fit for human consumption) (제1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212.21.39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2월 3일, 등록번호는 120000276임

1) 물품개요

- 말린 해조류와 소금, 으깬 고추를 같은 포장에 섞어 혼재한 양념 세트(하와이 요리) 11.2g이 한 봉지로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조류와 준비한 소금을 1봉지에 1포씩 포장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물품이지만,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께 포장된 물품 또는 물품으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각각 분류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212.21.390호 해초류 및 그 밖의 조류 중 식용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5%임
 - 제1212호에서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로서 잘게 부수었

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 (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함

- 이 호에서 분류하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는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으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예: 의료용 물품·화장품류·식용·사료용·비료)
- 제조된 소금은 제2103.90.229호로 별도 분류됨

아. 바닐라 추출물(Vanilla extract)(제1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302.19.231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2월 4일, 등록 번호는 120003663임

1) 물품개요

- 발효 및 건조된 바닐라 시스에서 에틸알코올 수용액을 사용하여 추출한 추출물로 갈색에서 진한 갈색 액체로 변하며 알코올 50% 이상이 적용되어 식품 향기를 입혀 함께 25kg당 하나의 플라스틱병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1302호에서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 (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음)를 분류함
- 해당 물품은 제1302호의 해설(A)에 따라 수액과 추출물은 향기가 나는 휘발성의 성분을 함유한 점은 같지만 높은 비율의 그 밖의 식물성 물질(예: 엽록소·탄닌산·매운맛 성분·탄수화물과 그 밖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301

호의 정유(essential oil)·레지노이드(resinoid)와 추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과 구별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302.19.231호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의 기타 중 알코올 함량은 50% 이상으로 제한된 것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0%임

자. 코마츠나기잎 분말(Komatsuna leaves(powder))(제1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404.90.13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월 31일, 등록번호는 120000053임

1) 물품개요

- 코마츠나기잎 분말로 잎을 건조 후 화장품의 원료로 플라스틱 파우치백 1개당 50g이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1404호에는 목모(wood wool)(제4405호)·비·브러시 제조용으로 묽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은 제외함
 - 해당 물품은 제1404호의 해설(B)의 제6항에 따라 줄기·잎과 꽃, 대청(woad)·수마크(sumach), 영 프스틱·감탕나무·미틀·해바라기·헨나·레시다나 인디고 식물의 줄기와 잎, 랜티스커스(mastic)의 잎, 잇꽃(bastard saffron)과 염색 그린우드(Genista tinctoria; woadwaxen)의 꽃으로 분류됨
 - 제0910호의 사프란(saffron)의 계두(stigma)와 화계(style)를 제외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404.90.130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3. 동물성 생산품(제15류)

가. 재멸균된 지방과 기름(건강 식품)(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제1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516.1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2월 21일, 등록번호는 120000066임

1) 물품개요

- 지방과 기름 및 산화 방지제를 혼합하여 농축한 어유로 어유, 혼합 토크페롤(캡슐) 젤라틴, 물 등이 재료이며 소매(건강식품)용으로 90정이 폴리에틸렌 한 병에 적입되어 총 24병이 1박스로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1516호에서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물품분류를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함
- 해당 물품은 제1516호의 해설(B)의 제1항에 따라 인터에스테르화(inter-esterified), 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 기름으로 분류됨
 - 지방과 기름의 굳기 정도는 지방과 기름이 함유한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지방산 라디칼(fatty acid radicals)을 적당히 재배열함으로써 증가하는데, 에스테르의 필요한 상호작용과 재배열은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촉진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516.10.000호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임

4.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제24류)

가. 소시지 조제품(Sausages and similar products)(제1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601.00.9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2월 15일, 등록번호는 120001227임

1) 물품개요

- 소시지를 쌀가루 반죽에 감아 꼬치에 꽂고 찌서 냉동한 것으로 6꼬지가 한 봉지에 들어있으며 16봉지가 한 상자에 상업용으로(해동 후 유조하여 제공) 포장되어 있음
 - 소시지는 닭고기, 돼지 지방, 돼지고기, 밀 전분, 콩 분리 단백질, 소금, 설탕, 미림, 흰 후추, 글루탐산나트륨(monosodium glutamate), 폴리인산나트륨(sodium Polyphosphate), 혼합 조미료, 와사비 가루, 소듐에리스오르베이트(sodium erythorbate),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 홍누룩, 물로 구성되어 있음
 - 쌀가루 반죽은 쌀가루, 설탕, 찹쌀가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arboxymethyl cellulose), 소금, 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1615호에서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음
 - 소시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는 날것이나 조리한 것, 훈제한 것이거나 훈제하지 않은 것, 지방·전분·조미료·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도 있으며, 또한 육이나 설육의 비교적 큰 조각(예: 한입 크기)을 함유한 것도 포함함
 - 소시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은 썰었거나 밀폐용기에 들어 있는지에 상관없

이 이 호에 분류함

- 제16류의 해설 주2에 따라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함
 -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하며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물품은 해당 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601.00.900호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0%임

나. 유당(Containing by weight 99% or more lactose, expressed as anhydrous lactose, calculated on the dry matter)(제1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702.11.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3월 12일, 등록번호는 120000634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유청 및 탈지분유를 농축, 결정화, 정제, 건조 후 분쇄한 것으로, 백색 분말이 식품 원료용으로 800kg이 한 봉투에 포장되어 있음
 - 원료는 유청, 탈지분유 성분: 유당, 단백질, 회분, 유지방, 물(유당 99% 이상)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1702호의 해설(A)에 따라 당류로서, 향미제(flavouring matter)나 착색제(colouring matter)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이 고체상태(가루 상태를 포함한다)를 포함함
 - 다만 제1701호에 해당되는 당류와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은 제외함

- 제1702호의 해설(A) (1)에 따라 유당(lactose, milk sugar로 알려진 것)은 밀크 중에 존재하며 상업적으로는 유장(whey)에서 제조한 것으로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lactose)과 상업적 순도의 유당(乳糖)이 분류됨
 - 이러한 물품들은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무수유당(anhydrous lactose)으로 나타낸 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를 초과해야 하며, 유당의 함유량 비율 계산방법에 있어 건조한 상태(dry matter)란 자유수(free water)와 결정수(water of crystallisation) 둘 다 제거된 것을 의미함
 -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무수유당으로 나타낸 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 이하인 것은 제외함(일반적으로 제0404호)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702.11.000호 건조 상태에서 측정된 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0%임

다. 코코아 조제품(Other preparations in blocks, slabs or bars weighing more than 2kg or in liquid, paste, powder, granular or other bulk form in containers or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exceeding 2kg/Other)(제1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806.20.29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 등록번호는 121002983임

1) 물품개요

- 중쇄지방산유(MCT oil), 버터, 염소유, 코코아가루, 이소말트올리고당(Isomaltooligosaccharides) 등을 혼합한 것으로 물이나 우유 등에 녹여 음료로 사용하거나 팬케이크 믹스 등에 혼합하는 용으로 사용되며, 5kg이 한 봉투에 들어 있으며 봉투 2개당 하나의 상자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18류 해설 주2에서는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제1806.20호에서는 조제 식료품 중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내용물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806.20.290호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5%임

라. 우유 조제품(Preparations containing not less than 30%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by weight,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excluding whipped cream in pressurized containers)(제1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901.90.132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11월 19일, 등록번호는 119004043임

1) 물품개요

- 전분유와 유청 단백질 분해물의 혼합물로 유백색 분말로 유아 조제분유로 사용되며, 20kg 또는 25kg당 하나의 판지 또는 종이봉투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1901호의 해설 III에서는 해당 호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함

-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 해당 호의 조물품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함
 - 해당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으나 설탕과 자의 특성을 갖는 물품(제1704호)과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물품(제1806호)과 음료(제22류)를 제외함
 - 또한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이나 기본 재료를 분류하나, 밀크 구성성분을 기본 재료로 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식용의 빙과류는 제외함(제2105호)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901.90.132호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기본 35%에 1kg당 799엔이 부과됨

마. 파인애플 조제품(Containing added sugar)(제2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008.20111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2월 17일, 등록번호는 120000447임

1) 물품개요

- 파인애플 조제품으로 끓인 후 당액에 절여 조제 및 건조하여 분당을 뿌린 것으로 제조용 가공 원료(조식 시리얼)로 사용할 수 있게 5kg의 가루가 알루미늄 용기에 담겨 2개의 용기가 하나의 상자에 포장됨
- 재료는 파인애플, 설탕, 글리세린(glycerin), 구연산 등임

2) 결정세변 및 사유

- 제2008호에서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한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음
 - 해당 물품은 표면이 분당으로 덮인 건조한 파인애플로 표면이 끈적끈적한 상태가 아니고 광택이 있는 피막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크리스털라이즈(Crystallise)에 의한 표면 또는 전체에 대한 설탕 결정이 없기 때문에 제2006호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008.20111호 파인애플 조제품(밀폐된 용기에 있고 두 용기의 무게가 10kg 이하인 경우로 제한)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바. 차 추출물 조제품(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f tea or maté,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tea or maté/ Other)(제2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2101.20.12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8월 17일, 등록번호는 122001979임

1) 물품개요

- 차에서 추출된 추출물을 정제 및 건조한 것(카테킨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갈색 분말이 식품원료(건강식품원료 등) 용도로 25kg당 한 드럼으로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제3201호의 탄닌에 해당하지 않는 화합물인 카테킨(Catechin)이 주성분이므로 차 추출물을 기초로 한 조물품으로 분류됨
 - 제3201호에서는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를 분류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101.20.120호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물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2.8%임

사. 음료(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not including fruit, nut or vegetable juices of heading 20.09)(제2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2202.99.1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월 31일, 등록번호는 120000258임

1) 물품개요

- 단풍나무 수액에 농축 레몬주스를 첨가한 소매용 음료로 투명에 가까운 약간 백탁한 액체가 소매용 음료로 240ml가 한 병으로 포장되어 12개가 한 상자 포장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제2202호의 해설(C)(b)에서는 제1702호의 당시럽과 제2106호의 향미료를 첨가한

당시럽의 경우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17류의 국내주1 (b)에 따라 (b) 제 19류·제20류·제21류와 제22류의 단맛을 추가한 조제 식료품은 제17류에서 제외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202.99.100호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 제외)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2.4%임

아. 옥수수 열매 및 가루(Corn/Bran, sharps and other residue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derived from the sifting, milling or other working of cereals or of leguminous plants)(제2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302.1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5월 7일, 등록번호는 120001267임

1) 물품개요

- 옥수수 열매 및 옥수수 분말로 만든 담황색 분말 조미료 원료로 40LBS(약 18.1kg)의 가루가 비닐가방 및 박스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2302호의 해설(A)에서는 곡물의 제분과정에서 생기는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본질적으로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수수·쌀과 메밀의 제분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에 대한 제11류의 주제2호 가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를 분류함

- 제11류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전분의 함유량이 45%를 초과하는 것과 회분의 함유량이 2%(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 이하인 것을 제외한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함
- 또한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은 제1104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302.10.000호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 중 옥수수에서 나온 것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자. 담배(Containing tobacco or reconstituted tobacco)(제2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404.11.2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2월 9일, 등록번호는 119000582임

1) 물품개요

- 담배에 보습제 등을 첨가하고, 캡슐에 충전한 가열 전용 담배 3개와, 증기 발생용 액체를 포함한 카트리지 세트(본체)(별매)(증기 흡입용(aerosol)) 하나가 1개의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있음
- 재료는 담배캡슐, 담배(담배속), 보습제, 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등으로 구성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의 해석에 따라 소매용 세트로 이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가열담배로 제2404호에 분류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404.11.200호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중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임
- 다만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한정함

5.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가. 벽돌가루(Mineral substanc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ther)(제2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530.9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2월 14일, 등록번호는 121003648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벽돌가루, 조개껍질가루, 그 밖의 작은 알갱이 등을 열처리하여 혼합한 것으로 비둘기의 먹이에 섞어 사용하는 용도로 5kg이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있음
- 원재료는 벽돌가루, 조개껍질가루, 조약돌, 핑크 미네랄, 믹스그리드 등임

2) 결정세변 및 사유

- 열처리를 한 벽돌의 가루 등을 단순히 혼합한 것으로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의 해석에 따라 중요한 특성을 주는 것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벽돌가루로 제2530호에 분류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530.90.000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또한 제2530호의 해설(D)(9)에 따라 따로 분류하지 않은 광물과 도자물품의 파편 중 깨진 도기·벽돌과 콘크리트의 깨진 조각으로 분류됨

나. 산화아연(zinc oxid)의 잔재물(Slag, ash and residues (other than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containing metals, arsenic or their compounds/Other)(제2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2620.19.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1월 16일, 등록번호는 121002713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산화아연의 잔재물로 회전식 가마에서 환원 처리를 수행하여 거친 산화아연과 클링커로 분리한 분말로 FIBC 봉투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제26류의 주3에 따라 제2620호는 다음의 물품에만 해당됨
 - 슬래그(slag), 회(ash), 잔재물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 원료용의 것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은 제외함
 - 비소를 함유한 슬래그(slag), 회, 잔재물로서 다른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비소나 다른 금속 채취용이나 이들 화합물 제조용의 것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620.19.000호 슬래그(slag), 회,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함) 중 기타(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로 관세율은 0%임

다. 탄화수소유(Hydrocarbon Oil)(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Other)(제2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2709.00.9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2월 11일, 등록번호는 120003784임

1) 물품개요

- 가스전의 산출물로부터 얻는 탄화수소유(콘덴세이트(Condensate⁴²))로 가스전으로부터의 산출물을 분해로에서 가스(천연 가스)와 유분(콘덴세이트)으로 분리한 것으로 정유소에서 석유 물품의 생산에 사용함

42) 일부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로, 여러 가지 의미가 혼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콘덴세이트란 API 40~50도 이상 초경질 원유를 말하며 주성분은 납사이고 소량의 중간 유분(등유 유분, 경유 유분) 및 잔사 유분을 함유하고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제27.09항(1)에서 (7)를 초과하는 원유의 본질적인 성질을 바꾸는 공정을 거치지 않아 국내 분류 예규 2709.00의 콘텐세이트에 관한 취급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
 - 해당 공정은 경사(decantation), 탈염(de-salting), 탈수(dehydration), 증기압을 정상화하기 위한 안정화(stabilisation), 압력의 유지와 배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름침전물(oil-deposit)을 환원할 목적으로 경질류분(very light fraction)을 제거하는 공정을 의미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709.00.900호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함(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또는 석유 수지를 제조하기 위해 올레핀 제조 설비(에틸렌의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함))의 분해로에서 열분해용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것)로 관세율은 0%임

6.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가. 염화마그네슘(Magnesium chloride)(Chlorides, chloride oxides and chloride hydroxides; bromides and bromide oxides; iodides and iodide oxides)(제2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2827.31.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0월 6일, 등록번호는 120002913임

1) 물품개요

- 솔트레이크 물로 제조한 화학적으로 단일화된 염화마그네슘으로 흰색 플레이크 모양

(약 3~9mm) 입욕제 용도로 사용되며, 25kg이 플라스틱봉투 및 골판지로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물품은 염화마그네슘 이외의 성분을 제거하고, 염화마그네슘의 순도를 높인 것으로, 염화마그네슘 6 수화물을 주체로 제28류 주1(A)에 따라 염화마그네슘 이외의 잔존하는 성분은 불순물로 인정됨
 - 제28류 주1(A)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에 대해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로서 불순물(impurity)을 함유하거나 물에 녹아있는 것은 제28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물품의 안전이나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닐 시 원소와 화합물이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된 경우 제28류에서 제외함
- 제2827호의 (A)(3)에서는 염화마그네슘($MgCl_2$)에 대해 칼륨염의 추출 부산물이며, 무수물(無水物)인 경우는 투명한 덩어리(mass) 모양·실린더 모양·태블릿(tablet) 모양·프리즘 모양이며 수화물인 경우는 무색 바늘 모양이며, 물에 녹는 성분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827.31.000호 마그네슘 염화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9%임

나. 에틸알코올(Ether-alcohol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제2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909.49.09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9월 14일, 등록번호는 120002719임

1) 물품개요

- 소듐 디하이드로비스 알루미늄네이트(Sodium dihydrobis(2-methoxyethoxy) aluminate)로, 소듐 디하이드로비스 알루미늄네이트 70%, 톨루엔(Toluene) 30%로 구성된 희색이 도는 액체로 파인케미칼(fine chemical) 합성용 환원제 용도이며 200kg이 하나의 드럼통에 담겨 있고 톨루엔은 수송상의 안정을 위해 혼합하고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톨루엔은 제29류의 해설 주1(e)에 규정된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용매로 인정됨
 - 제29류의 해설 주1(e)에서는 다음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을 제29류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함)
 -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서는 입체 이성체(立體異性體)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은 제외함)
 -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 본 물품에 포함된 소듐 디하이드로비스 알루미늄네이트(2-메톡시에톡시)는 알루미늄과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이 금속 결합한 배위 화합물로 인정되므로 제29류의 해설 주5(C)(3)에 따라 분류됨
 - 제6부의 주 제1호와 제28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 배위화합물(제11절

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함

□ 제2909호의 해설 (B)(2)에서는 에틸알코올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그 종류로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이나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glycol)의 모노메틸(monomethyl)·모노에틸(monoethyl)·모노부틸(monobutyl)과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monoalkylether)를 분류함

○ 에틸알코올은 다가알코올(polyhydric alcohols)이나 페놀알코올(phenol-alcohols)이 페놀성 수산기의 수소[페놀알코올(phenol-alcohols)의 경우]나 한 개의 알코올성 수산기의 수소[다가알코올(polyhydric alcohols)의 경우]가 알킬(alkyl)이나 아릴(aryl)기로 치환되어 유도된 것을 의미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909.49.090호 테르·에틸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7.8%임

다. 미생물 배양체(cultures of micro-organisms/Vaccines, toxins, cultures of micro-organisms (excluding yeast) and similar products)(제3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002.49.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2월 14일, 등록번호는 20211214임

1) 물품개요

- 배양한 유산균, 효소 및 부형제⁴³⁾로 이루어진 백색 분말로 사일리지⁴⁴⁾ 조제용으로 50g이 알루미늄봉투에 포장되어 알루미늄봉투 5개가 1박스에 포장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의 해석에 따라 본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주는 것은 목초 등을 젖산 발효시키는 유산균으로 인정되어 제3002호로 분류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제3002호의 해설(E)에서는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음)의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포 배양체는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에서 벗어나 통제되는 조건 속에서 배양되어 온 세포로 다세포(多細胞) 생물, 특히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에서 얻은 세포 배양체를 의미하며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는 제3002.49호에 분류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음),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음)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43) 유산발효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목초의 건물에서 당류를 얻기 위해 분해효소가 함유

44) 수분함량이 많은 목초류 등 사료작물을 사일로(Silo)용기에 저장하여 유산균 발효시킨 다즙질사료, 수분 함량이 많은 목초류·야초류·꽃베기작물·근채류 등을 사일로에 저장하여 젖산발효를 시켜 부패균이나 분해균 등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생초의 양분의 손실을 막고 보존성을 높히려는 목적의 사료

라. 비료(Other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he two fertilising elements nitrogen and phosphorus)(제3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105.9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5월 19일, 등록번호는 122001308임

1) 물품개요

- 요소(urea) 및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중합시킨 비료로 메틸렌디우레아(methylene diurea), 디메틸렌트리우레아(dimethylene triurea), 트리메틸렌테트라우레아(trimethylene tetraurea), 테트라메틸렌펜타우레아(tetramethylenepentaurea)를 주로 한 혼합물이며 백색분상 또는 과립상의 비료용도로 20kg당 플라스틱 봉지 또는 800kg당 플렉스콘봉투(flexible container)로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의 경우 제31류의 주2에 해당하지 않아 제31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제3102호는 다음의 물품에 적용되며 제3105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함
 - 질산나트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음)이나 혼합물,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음)이나 혼합물, 칼슘시아나미드(순수한 것인지 또는 기름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요소(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 위에 언급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 염화암모늄이나 위에 언급한 물품에 초크·석고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 질산암모늄 또는 요소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액상비료

-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가지나 세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개의 총중량이 10kg 이하로 포장한 것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마. 사프란(Saffron) 추출물(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제3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203.00.21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2월 26일, 등록번호는 121000557임

1) 물품개요

- 사프란의 암술 기둥머리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농축하고,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을 첨가한 사프란의 색소 성분 크로신(crocin)을 5% 이상 함유한 오렌지색 분말로 영양 보조식품 또는 음료 원료로 사용되며 1kg 또는 10kg이 알루미늄 파우치 또는 폴리에틸렌 용기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13류 주1(h)에서 제1302호에 분류되는 감초 추출물(extract)·제충국 추출물(extract)·홉(hop) 추출물(extract)·알로에 추출물(extract)과 아편을 포함하되 유연용 추출물(extract)과 염색용 추출물(extract)은 제3201호 및 제3203호로 분류함

- 제3203호에서는 주로 착색제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동물성 물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껍질·뿌리·종자·꽃·이끼 등)·동물성 재료를 물·약산(weak acid)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특정 식물성 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들어짐
 - 또한 비교적 복합물질이며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염색소(착색소)와 원료·추출 공정에서 생기는 소량의 그 밖의 물질(당류·탄닌 등)을 함유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포함함

- 제3203호의 설명 (1)에서 설명하는 식물성 착색제와 염색용 추출물(extract)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로그우드(logwood)(해마테인·해마톡실린 등)·황색목재(퍼스틱·큐바·탐피코목 등)·적색목재(피남부코·리마·브라질 목 등)·백단향(sandalwood)·퀘시트론·블랙커취(아카시아 카테추)·아나토·매더·알케나·헤나·튜머릭·페르시안베리·사플라우어·사프란 등에서 추출된 물질
 - 특정의 이끼(지의류)에서 조제된 오르킬과 리트머스를 포함하며 여러 종류의 포도껍질에서 나오는 오에닌, 나트륨염록소·구리염록소·크산토펜과 같이 서양췌기풀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식물에서 추출되는 염록소도 포함함
 - 너도밤나무 껍질 및 코르크와 같은 식물성 재료의 부분 분해에 의하여 조제되는 모조 반다이크 브라운, 인디고페라(Indigofera)속(주로 인디고페라 텅크토리아(Indigofera tinctoria))의 식물에서 얻는 천연 인디고(Indigo)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암청색의 가루·페이스트(paste)·케이크·럼프(lump) 등의 상태임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203.00.210호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물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으로 관세율은 0%임

바. 식품용 향료(Essential oils of citrus fruit/Orange)(제3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301.12.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5월 27일, 등록번호는 121001515임

1) 물품개요

- 오렌지 정유를 증류함으로써 얻은 정유로 감귤의 향기를 가지는 담황색의 액체로 식품 원재료(향료) 용도로 20kg이 폴리 용기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물품은 오렌지 과피 압착법에 의해 얻어진 정유를 증류한 것으로 식품의 정유에서 향기성분의 일부가 제거되었으나 그 조성이 원래의 조성과는 현저하게 다르지 않으므로 제3301호에 따라 분류함
 - 제3301호에서는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앵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함),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함)
- 제3301.12호의 해설에서는 오렌지(orange)에 대해 만다린(mandarin)(탄저린(tangerine)과 새트수머(satsuma: 귤)를 포함함)·클레멘타인(clementine)·윌킹(wilking)·이와 유사한 시트러스(citrus) 교잡종을 제외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301.12.000호 오렌지유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사. 물티슈(Non-woven fabric)(제3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401.19.02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2월 24일, 등록번호는 121000403임

1) 물품개요

- 부직포에 에탄올, 염화벤잘코늄, 은 이온, 파라벤, 알로에 추출물 등을 흡수시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140mm×180mm 크기의 티슈가 100매분이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있음
- 청소(주방청소, 외출 시 소지품 닦이, 테이블 닦이), 손세정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소매 포장에 살균에 대한 표시는 없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물품은 살균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만, 외부에 살균표시가 없어 살균의 성질은 부차적이며, 세정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인정됨
- 제3401호의 해설(IV)에서는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nonwoven)를 분류함
- 향을 첨가하거나 소매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nonwoven)를 분류하며 이들 물품은 보통 손이나 얼굴 세척용에 사용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401.19.020호 비누·유기계면활성물품과 조물품(막대(bar)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6.4%임

아. 혼합형 접착제(Products suitable for use as glues or 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as glues or adhesives, not exceeding a net weight of 1kg)(제3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506.1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6월 25일, 등록번호는 121001764임

1) 물품개요

- 카트리지 내 2액 혼합 접착제(순중량 1kg 이하의 소매용)로 주제 에폭시 수지이며 경화제로 변성 폴리아민이 사용된 젤 용도의 금속, 섬유 강화 플라스틱, 기타 플라스틱 등의 접착에 사용되는 2액 혼합 접착제임
 - 주제 및 경화제 1:1 비율로 주제(25ml) 및 경화제(25ml)가 함께 마크 건용 카트리지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관세율표 제6부 주2에서 제3506호의 분류에 대해 설명함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나 제3808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나 제2852호에 열거된 물품은 제외한다)은 해당 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할 수 있더라도 분류하지 않도록 함
 - 예를 들면, 치료를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된 황은 제2503호나 제2802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3004호에 분류하며 글루(glue)로서 소매 포장한 덱스트린(dextrin)은 제3505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3506호에 분류함

- 제3506호의 해설(A)에서는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kg 이하인 것)의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통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상자·종이백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종이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음
 - 적당한 형의 소형 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수도 있으며(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나 관속에 있음)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된 브러시는 그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분류하도록 함
 -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에 글루나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시가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506.10.000호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k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6%임

자. 점화봉(Lighting bar/Ferro-cerium and other pyrophoric alloys in all forms)(제3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606.9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1월 22일, 등록번호는 121003430임

1) 물품개요

- 발화성 합금으로 이루어진 점화봉으로 세륨, 란탄, 철, 마그네슘, 네오디뮴 등으로 도장되었으며 막대형(플라스틱 손잡이 포함) 직경 8mm×전체 길이 100mm(세관

실측치)로 바베큐 및 모닥불 등의 점화(점화)에 사용함

- 부속품으로 철제 플레이트(23mm×70mm)가 폴리에스테르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120개가 하나의 상자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3606호의 해설(I)에서는 페로세륨(ferro-cerium)·그 밖의 발화성 합금(pyrophoric alloy)은 거친 표면에 마찰하면 가스·석유·부싯깃(tinder)·그 밖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도록 충분한 불꽃을 일으키는 합금으로 보통 세륨과 그 밖의 금속을 결합한 것이며 페로세륨(ferro-cerium)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함
- 또한 이들 합금은 라이터돌(mechanical lighter(lighter flint)) 용의 벌크 상태나 소형봉 형태·소형바 형태라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하며, 소매용 소형용기에 포장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606.90.000호 페로세륨·그 밖의 발화성 합금(이 류의 주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물품의 기타)로 관세율은 3.9%임

차. 감광성용액(Photosensitive solution/ Chemical preparations for photographic uses (other than varnishes, glues, adhesives and similar preparations)(제3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707.9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3월 18일, 등록번호는 121000678임

1) 물품개요

- 주제 및 경화제로 이루어진 혼합 비율에서 함께 제시되는 2액성 포토 리소그래피

66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용 솔더 레지스트로 주제는 백색점성이 있는 액상, 경화제 투명액체로 주제 0.85kg, 경화제 0.15kg가 함께 포장되어 있음

- 원재료는 아크릴수지, 광중합개시제, 충전제, 착색료, 용제 외(경화제) 아크릴수지, 에폭시수지 등임

2) 결정세변 및 사유

□ 리필하지 않고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상대적인 양의 비율에 의해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6부의 해설 주3에 따라 분류됨

- 제6부의 해설 주3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에 포장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나 구성요소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함
 -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 동시에 제시되는 것
 -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 본 물품의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품은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한 반도체 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감광성 플라스틱 수지 용액으로 제3707.90호에서 분류함

- 폴리머, 감광제(感光劑), 비수용성 용매와 여러 가지 다른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토레지스트는 금속산화물이 도포된 실리콘 웨이퍼에 이용되는데, 이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재료 완성품으로 전환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707.90.000호 사진용 화학조물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물품은 제외함),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함)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6%임

카. 콘덴서(Condenser) 재료용 활성탄(Activated carbon)(제3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802.1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2월 7일, 등록번호는 121003623임

1) 물품개요

- 활성탄 시트 전극에 알루미늄박을 붙이고 일체화된 롤 형태 시트로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용 전극재 포장전극을 알루미늄 방습 백에 넣어 공기를 빼고 판지로 포장함
 - 활성탄 성분이 전해액과의 접촉점에 전하를 저장하고 알루미늄은 전류를 통과시키는 양극 및 음극 역할을 하며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스는 활성탄 및 카본 블랙 바인더(Carbon Black) 전극 필름의 강도를 증가시킴

2) 결정세번 및 사유

- 활성탄소, 알루미늄접착제 등 다양한 구성 재료로 구성된 물품으로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 따라 이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물질은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활성탄임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제3802호에서는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폐수탄 포함)을 분류하고 있음
 - 제3802호의 해설(A)에서는 활성탄에 대해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으로 탄소와 광물성 물질이 그 자체를 탈색·가스·습기의 흡착·축매·이온교환·여

과와 같은 어떤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처리(가열·화학품 등)를 함으로써 그 표면구조가 변형되는 경우에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802.10.000호 활성탄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9%임

7. 플라스틱과 그 물품, 고무와 그 물품(제39류, 제40류)

가.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Other)(제3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907.40.9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7월 22일, 등록 번호는 122002092임

1) 물품개요

- 펠릿형태의 첨가제가 함유된 폴리카보네이트로 무색투명한 펠릿은 스키폴 제조에 사용되며, 25kg이 하나의 봉투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제39류 주3(c) 및 주6(b) 그리고 제3907호의 해설에 따라 폴리카보네이트로 분류됨
 - 제39류 주3(c)에서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 중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 중합체를 분류함
 - 제39류 주6(b)에서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

한 벌크 모양을 일차물품(primary form)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함

- 제3907호의 해설(4)에서는 비스페놀 A와 포스겐(carbonyl chloride)이나 디페닐 카보네이트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폴리머(polymer) 사슬에 탄산에스테르 관능기(carbonic ester-function)가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형 제조품과 유약 원료 등의 수많은 공업 용도로 사용되는 폴리 카보네이트(polycarbonate)에 대해 설명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907.40.900호 폴리카보네이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1%임

나. 욕실용 매트(Bath mat)(Cellular rubber)(제4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016.1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8월 2일, 등록 번호는 121002274임

1) 물품개요

- 폴리우레탄, 부직포 및 천연고무로 이루어진 3층 구조의 욕실 매트(상층은 폴리우레탄으로 중층은 부직포 하층은 구조토가 들어간 천연고무(가황한 것)) 네 모서리는 둥글게 되어 있고 하층이 가장 두꺼운 형태로 세로 40cm, 가로 60cm, 두께 0.5cm의 1개의 롤이 플라스틱 봉투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폴리우레탄, 부직포 및 구조토가 들어 있는 천연고무 등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물품으로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3(b)에 따라 주요기능인 흡수 및 건조를 촉진하고, 주요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가장 두꺼운 구조토가 들어간 천연고무 층이라고 판단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물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함) 중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로 만든 것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6%임

8.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물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거트(누에의 거트 제외)의 물품(제41류~제43류)

가. 소가죽(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including parchment-dressed leather,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without hair on, whether or not split, other than leather of heading 41.14)(제4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107.92.219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4월 25일, 등록번호는 120000425임

1) 물품개요

- 염색 및 본뜬 소가죽(물소)으로 직사각형 125mm×175mm 모양으로 잘려 있으며, 흑색으로 수공예 및 가죽 세공용으로 플라스틱 봉투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제41류 총설(Ⅲ)에서는 유연처리(tanning)나 크러스트 처리(crusting) 후에 그 이상 가공한 가죽(제4107호·제4112호·제4113호)에 대해 설명함
 -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 후, 원피 표면의 불균질을 없애고 좀 더 유연하고 방수성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종종 부가적인 가공(무두질(currying))을 거치며 이러한 추가 공정은 표면을 유연(softening)·신장(stretching)·박연(thinning)·타연(beatng)·경화(hardening)시키는 과정과 기름으로 침지(stuffing)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이런 공정을 거친 가죽은 그 이상의 드레스 가공이나 완성가공 공정을 거치는 것도 있음
 - 해당 공정은 다른 종류의 가죽을 모조하기 위한 표면 물감이나 도료의 도포, 은면 가공이나 각인을 하거나 스웨이드(suède) 상태나 벨벳(velvet) 상태로 하기 위해 가죽 내측면(때로는 은면)을 사이징·윤택·연마(버핑(buffing)) 처리 하거나 왁스처리·흑염(blacking)·윤골화(smoothing), 글레이징(glazing)·광택처리(satin finishing)·날염(printing) 등의 공정을 거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107.92.219호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 중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60%임

나. 방직용 섬유 케이스(Textile fiber case)(With outer surface of sheeting of plastics or of textile materials)(제4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202.32.2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월 30일, 등록 번호는 119004655임

1) 물품개요

- 머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안경모양의 자동 데이터 처리기계로 다음과 같은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물품은 수납하기 위한 파우치로 (W)145mm×(H)55mm×(D)200mm의 100g 중량으로 1세트가 박스에 포장되어 있음
 - 안경의 형상을 한 자동 데이터 처리기기 메모리(2GB(스토리지 32GB), OS·Android를 탑재해, 투과형 디스플레이에의 데이터 표시, USB단자, Wi-Fi, Bluetooth 및 근거리 무선 통신(ANT)에 의한 데이터 송신, 앱의 다운로드 및 해제를 실행할 수 있는 것 외에, 시계, 온도, 자이로, 카메라, 마이크 및 스피커의 각 기능을 가짐, AC어댑터(100~240V의 교류 전압을 5V·1A의 직류 전압으로 변환), USB케이블, 리모컨, 시스루 커버(바이저)(화상이 투영되는 디스플레이 및 선바이저 기능), 방직용 섬유제 케이스(파우치 기능)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물품은 각 구성품이 동일한 수치로 표시되나, 국내에서 별도로 조달한 사용설명서를 추가하여 소매포장으로 함께 판매되지만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 따라 규정된 소매용 물품의 집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과세됨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

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핸드백 등에 휴대되는 안경의 케이스와 유사한 용기로 인정하여 제4202.32.200호의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분류하며 관세율은 10%임

다. 무톤⁴⁵⁾매트(Muton mat/Furskin of sheep, goat, rabbit or hare) (제4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303.90.01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9월 22일, 등록번호는 121002704임

1) 물품개요

- 충전물을 가지는 모피제 양탄자로 모피의 표지와 안감의 사이에, 충전물을 넣어 봉제한 것, 안감에 미끄럼 방지 가공은 없으며 모피겔감과 양안감, 폴리에스테르 원단이 충전재이며 약 50cm×80cm 사이즈임
 - 해당 물품은 바닥 깔개 또는 소파나 자동차시트 등의 후면에 두어 쿠션 용도로도 사용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모양상으로 제9404호의 침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제9404호에서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

45) 양가죽을 가공한 것

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음)을 분류함

- 해당 물품은 소량의 충전재를 넣고 단순히 직물로 된 안감을 꿰맨 모피로 보아 제 43류 주3에 따라 분류함
 - 제4303호는 다른 재료를 더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 의류·의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그 밖의 물품 모양으로 서로 봉합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을 포함함
 - 제4304호의 해설에 따르면 해당 호에는 모피(부분품을 포함한다)로 만든 것이거나 모피가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는 재료로 만든 그 밖의 모든 물품을 포함함
 - 예를 들면, 담요·덮는 포·속을 채우지 않은 푸프(pouffe)·케이스·핸드백·게임용 구백·배낭과 기계용이나 공업용의 물품과 그 부속품(예: 연마용 캡과 도장이나 장식용에 사용하는 롤러용 슬리브(sleeve)) 등이 있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303.90.010호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물품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0%임

9. 모피와 목재, 펄프, 종이, 인쇄서적(제44류~제49류)

가. 배향성 보드(Oriented strand board/ Unworked or not further worked than sanded)(제4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410.12.11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8월 3일, 등록번호는 122002281임

1) 물품개요

- 양면에 섬유판을 적층한 배향성 보드로 두께 16mm의 보드 양면에 두께 4mm의 섬유판(MDF)을 적층하여 두께 24mm, 폭 920mm, 길이 2,150mm 건구 심재로 사용되며 32판이 하나의 팔레트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4410호에서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를 분류함
- 제4410호의 해설(1)에서는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 OSB)를 분류함
 - 스트랜드들은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나 페놀수지(phenolic resin)와 같은 결합제(대개 방수)에 의해 결합되어 있으며, 층 사이에 함께 끼워져 두꺼운 매트(mat)를 형성하는데, 스트랜드는 판자의 기계적 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외면층에서는 일반적으로 길이 방향으로 배향성(配向性)을 가지며, 내면층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차 방향으로 배향성을 가지거나, 임의 방향으로 놓임
 - 또한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 표면·가장자리·마구리의 처리·도포·피복(예: 직물·플라스틱·페인트·종이·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분류하나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410.12.110호의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8%임

나. 천연코르크 지갑(Articles of natural cork)(제4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503.9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2월 9일, 등록번호는 121000237임

1) 물품개요

- 천연코르크로 만든 지갑으로 외장은 천연코르크, 안감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색상은 다크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블랙, 레드, 얼룩말 무늬가 있으며 가로 75mm, 세로 10mm의 크기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제4202호의 전반에서 규정하는 지갑으로 인정되지만, 본 물품을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를 배제한 천연코르크 시트는 해당 호에서 규정하는 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호로 분류할 수 없음
 - 제4202호에서는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규정함
 - 가죽(leather)에는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함),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함
- 제4503호의 설명(3)에서는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천연코르크로 만든 블록(block)·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 구멍구·어망용 부표·욕실용 매트(bath-mat)·테이블 매트(table-mat)·타자기 매트·그 밖의 매트 등을 포함한 천연코르크(cork) 물품을 분류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503.90.000호 천연코르크 물품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다. 조립 재료로 만든 장식품(Basketwork, wickerwork and other articles, made directly to shape from plaiting materials or made up from goods of heading 46.01; articles of loofah/Vegetable materials)(제4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602.19.999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7월 8일, 등록번호는 120002045임

1) 물품개요

- 식물성 짜임 재료로 이루어진 여우 모양의 장식품으로 사이잘을 철사에 끼운 후 묶어 여우를 본뜬 형상으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용 장식품으로 높이 10cm, 가로 8cm, 깊이 6cm의 크기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동물을 본뜬 물품으로 그 성상 등에서 완구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9503호로 분류되지 않음
 - 제9503호에서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고 있음
- 해당 물품은 철사, 세트 재료, 플라스틱(눈) 등의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재료로 이

루어져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3(b)에 따라 본 물품에 중요한 특성을 주고 있는 재료가 전체 외면을 구성하고 장식적인 외관을 주고 있는 조물재료라고 결정함

○ 제46류 주1에서는 조물재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플레이팅(plaiting)·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strip),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strip)(예: 나무껍질·좁은 잎·라피아(raffia)의 스트립(strip)이나 넓은 잎에서 얻은 그 밖의 스트립(strip)), 방적하지 않은 천연의 방직용 섬유,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스트립(strip)을 의미함
- 가죽·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펠트(felt)·부직포의 스트립(strip), 사람 머리카락, 말의 털, 방직용 섬유의 로빙(roving)과 실,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602.19.999호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물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물품의 기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9.6%임

라. 목재펄프(Wood pulp obtained by a combination of mechanical and chemical pulping processes)(제4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705.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4월 26일, 등록번호는 121002099임

1) 물품개요

□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로 제4705호에는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에 의하여 제조되는 목재펄프를 분류하며 이들 펄프를 반화

학펄프(semi-chemical pulp)·화학-기계펄프(chemi-mechanical pulp)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화학-기계펄프(chemi-mechanical pulp)는 칩(chip)·대팻밥·툽밥·이와 유사한 모양의 목재를 리파이너기(refiner)에서 정제하여 생산하며 목재는 간격이 좁은 두 개의 두둑이 있는 플레이트(plate)나 디스크(disc)(두 개 중 하나만 회전하거나 둘 다 회전한다)에 의한 연마작용으로 분쇄되어 섬유상태가 됨
- 섬유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화학약품이 전처리나 정제과정 중에 투입되며 그 목재는 모양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압력과 온도에서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증기처리를 받기도 함
- 그 펄프(pulp)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채택되는 공정결합과 공정순서에 따라 화학-기계펄프는 화학-열기계펄프(CTMP)·화학-리파이너기계펄프(CRMP)나 열화학-기계펄프(TCMP)로 알려져 있기도 함
- 문의된 제품은 화학목재펄프로 관세율표 제47.05항 및 동표해설 제47.05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705.00.000호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마.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50g 이하인 것으로 한정)(Bleached uniformly throughout the mass and of which more than 95% by weight of the total fibre content consists of wood fibres obtained by a chemical process, and weighing 150g/m² or less)(제4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810.31.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8월 4일, 등록번호는 121002238임

1) 물품개요

- 무기물로 코팅된 종이(포장재)로 종이의 한쪽 면에 탄산칼슘계 코팅제가 도포되어 있으며 재료 포장 시 사용됨
- 제품 성분은 크라프트 펄프 약 87% 코팅제 약 13%이며, 크기는 폭 약 100~250mm에 길이 약 2,500mm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48류에서 크라프트지와 판지란 황산이나 소다공정에 따른 펄프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종이와 판지를 말함
- 문의된 제품은 이 제품은 크라프트 펄프를 주성분으로 한 종이의 한 면에 무기물을 도포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50g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810.31.000호 무기물로 코팅된 종이(포장재)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바.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In single sheets, whether or not folded)(제4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901.1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3월 17일, 등록번호는 121000602임

1) 물품개요

- 유아교육용품으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 물품(실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해당 물품은 공기대포 상자(코팅판지, 190×160×105mm, 구멍 20mm), 미니컵(3개)(폴리프로필렌, 48mm), 미니컵 포장 상자(코팅판지, 148×49×26.5mm), 포장 마운트(제품 이름, 사용상의 주의사항, 회사명 등으로 인쇄)로 구성됨
- 해당 물품은 조립된 공기대포 박스에 부딪혀 구멍에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미니컵 등이 공기의 힘으로 얼마나 날아가는지 실험하는 학습 자료의 부록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제품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용 도구라고 하는 품목으로 일본에서 재포장하여 사용 설명서 등이 포함된 잡지의 부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관세표 해석에 관

한 일반 규칙 3(b) 설명(X)(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과세 대상임

10.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2류~제63류)

가. 면·면사 면직물(Plai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g/m²) (제5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208.52.093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월 22일, 등록번호는 120000117임

1) 물품개요

- 편직물 중 면으로 편평한 직물의 절단 재질을 특성으로 하며 100% 면화임
 - 직물 조직의 각각의 위사가 연속된 경사의 상하를 교차하여 지나가고, 각각의 경사가 연속된 위사의 상하를 교차하며 지나가는 조직을 말함
- 의류·가정용 린넨·침대보·커튼·그 밖의 실내용품 등의 제조에 사용
 - 30번째 원사, 밀도 68/2.54cm, 크기 30cm×35cm, 무게 150g의 100% 면으로, 1m²당 중량이 100g 초과인 것으로 한정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5208호에서는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m²당 중량이 200g 이하인 것으로 분류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5208.52.093호 면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6%임
- 이 제품은 관세율표 52.08항과 같은 표의 해설 52.08항의 규정에 근거함

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섬유(Coconut, abaca (Manila hemp or Musa textilis Nee), ramie and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tow, noils and waste of these fibres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제5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305.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8월 15일, 등록 번호는 122002334임

1) 물품개요

-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넷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하며 펠트 매트와 재료로 사용됨
- 분쇄 코코넛 등 빈 과일몽치를 제세동 섬유길이로 분류·건조하여 냉각한 것으로 1개당 150kg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제품은 코코넛의 빈 과일몽치를 분쇄 및 제세동하여 얻은 섬유이기 때문에, 그 특성 등으로부터 섬유를 방사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가공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다른 식물계 방사 섬유로 분류됨

-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함⁴⁶⁾
 -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5305.00.0000호 오일 팜 섬유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다. 인조 필라멘트 섬유(Elastomeric, other)(제5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402.44.929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6월 10일, 등록번호는 122001653임

1) 물품개요

- 인조 필라멘트 섬유는 폴리우레탄 필라멘트(긴 섬유)를 40개 평행으로 당긴 가닥치지 않은 단사임
 - 폴리우레탄 96% 이상, 산화 티타늄 1% 미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0.5% 미만, 디메틸아세토아미드 0.6% 미만으로 구성됨

- 동 제품은 의류와 같은 스트레치 영역에 사용되며 두께는 583 ± 22 데시텍스이며, 포장 단위는 4.5kg롤×4개/케이스임

46) '소매 판매(retail sale)'는 추가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함.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이 제품은 폴리우레탄 장섬유로 만들어진 단일 원사이므로, 합성섬유의 장섬유의 탄성을 갖는 원사로 분류됨
 - 탄성사란 합성섬유로 만든 필라멘트사(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하며 텍스처드사는 제외한다)로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실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5402.44.929호 합성 멀티필라멘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8%임

라. 워딩·펠트·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로프·케이블(Knotted netting of twine, cordage or rope; made up fishing nets and other made up nets, of textile materials)과 이들의 제품(Of synthetic fibres)(제5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608.19.091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7월 15일, 등록번호는 122002039임

1) 물품개요

- 자동차 및 수하물에 부착할 그물로 합성섬유 메쉬 원단은 가방 형태로 사면에 배관을 꿰매고 패스너는 윗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네 모서리에 고정 밴드가 달려 있음
 - 그물은 폴리에스테르 뜨개질 소재이며 배관과 고정 밴드는 폴리프로필렌 직물임

2) 결정세변 및 사유

- 이 제품은 합성섬유 니트 소재로 만든 그물로, 짐을 보관하기 위해 자동차의 천장이나 트렁크에 부착된 것임
- 또한 연속 메쉬가 형성되고 메쉬가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기타 메쉬 제품으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5608.19.091호 수하물 보관소 그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임

마.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including turf), tufted, whether or not made up) 중 터프(Turf)(제5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5703.31.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6월 10일, 등록번호는 122001708임

1) 물품개요

- 인조잔디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이 삽입된 터프(Turf) 원단의 인조잔디임
 - 폴리에틸렌 스트립과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이 있는 폴리프로필렌 원단으로 만든 기본 원단이 뒷면에 적용되고 라텍스가 이면에 적용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이 제품은 터프(Turf)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로서 잔디를 모방한 것으로

인조잔디(turf)로 분류하며 색상은 상관없음

- 이 제품은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이 폴리프로필렌 직물 기본 직물로 구성된 인조잔디이며 특성, 용도 등에 따라 바닥재로 인식됨
- 인조잔디(turf)는 스포츠 경기장(예: 축구·야구·필드 하키·골프·테니스)용과 그 밖에 다른 용도(예: 조경·공항)로 실내나 실외에서 사용하며 이 호에는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5703.31.000호 인조잔디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9.60%임

바.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Textile fabrics otherwise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painted canvas being theatrical scenery, studio back-cloths or the like)(제5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907.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9월 15일, 등록번호는 122002722임

1) 물품개요

- 기본 금속으로 코팅된 전도성 직물 테이프로 기본 금속이 합성섬유 직물의 양면에 적용되는 직물 접착제임
- 직물은 폴리에스테르, 구리, 니켈 등의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접착제는 폴리아크릴레이트 소재임
 - 폴리아크릴레이트의 경우 폭 1,040mm, 길이 50m이며, 접지 도구 등으로 쓰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이 제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섬유 원단에 기지 금속이 도포되는 전도성 직물임
 - 본 제품은 기지 금속으로 코팅된 전도성 원단의 양면에 도포된 접착제로 코팅된 합성섬유 원단이고,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물품이기 때문에 기본 금속으로 코팅된 전도성 직물 테이프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5907.00.000호 기본 금속으로 코팅된 전도성 직물 테이프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9%임

사.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Unbleached or bleached 2 Other) (제6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006.21.02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9월 12일, 등록번호는 122002649임

1) 물품개요

- 코면 메리야스(Melias) 뜨개질로 특정 크기로 자른 면이며 뜨개질 종류 중 부드러운 뜨개질에 속하며 기계류에서 기름을 닦아 내는 데 사용됨
 - 표백되어 가장자리 바느질이 없으며 100% 면화 재질에 40cm×40cm 크기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이 제품은 면화 메리야스 니트 원단이며 너비가 30cm를 초과하고 탄성 또는 고무 실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를 교차시켜 제작된 것이 아

니고 서로 연결된 루프(loop)를 계속하여 만듭으로써 편조된 편직물로 분류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6006.21.020호 메리야스 뜨개질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6.7%임

아. 남성 의류와 그 부속품(Men's or boys' underpants, briefs, nightshirts, pyjama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Of man-made fibres)(제6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6107.22.000이며, 시행일은 2022년 9월 30일, 등록번호는 122002859임

1) 물품개요

- 인공 섬유 메리야스 뜨개질로 만든 남성용 잠옷으로 상의는 칼라가 있는 긴 소매이며 하의는 허리에 고무조임 스트랩이 있고 뒷면 오른쪽에 포켓이 달린 긴 바지임
- 100%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양면 브러시 보어 재질: 잠옷(취침 시간에 남성용 착용), 크기: S, M, L, LL, 포장: 상하 의류 소매 포장 1세트(옷걸이 포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이 물품은 인공 섬유 메리야스 뜨개질로 만든 남성용 잠옷으로 문의되었으나 재료, 모양 등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취침 시간에 착용할 의복으로 인정되어 남성용 잠옷으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6107.22.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1.2%임

자. 남성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Men's or boys' over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oraks (including ski-jackets), wind-cheaters, wind-jackets and similar artic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62.03./Of man-made fibres 2 Other)(제6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201.40.2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12일, 등록 번호는 122000006임

1) 물품개요

- 합성섬유로 만든 후드가 있는 남성용 재킷으로 앞쪽에 슬라이딩 지퍼로 열고 닫히는 후드가 있는 긴팔 후드티, 슬라이딩 지퍼로 열고 닫히는 복부의 왼쪽과 오른쪽에 포켓이 있으며, 옷자락과 후드는 탄성이 있으며 플라스틱 패스너로 조정할 수 있음
 - 본체는 100% 폴리에스테르 직물이며 표면에 발수 처리를 위한 불소 수지와 뒷면에 우레탄 수지를 분무하여 코팅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11부의 주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의류는 소매용으로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의 주14의 규정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의류(textile garment)는 제6201호부터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하므로 본 제품은 육안으로 플라스틱류라고 식별할 수 없는 물품이며 섬유로 구성된 의류이기 때문에 남성용 재킷으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6201.40.200호 남성용 재킷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1.2%임

차. 베드린넨(bed linen) · 테이블린넨(table linen) · 토일렛린넨(toilet linen) · 주방린넨(kitchen linen) 중 인조섬유로 만든 것(제6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302.32.09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6월 10일, 등록번호는 122001799임

1) 물품개요

- 인공 섬유 직물로 만든 이불 커버로 인공 섬유 일반 직물(부직포)로 만든 직사각형 가방 모양이며, 긴 측면의 한쪽에 지퍼가 부착되어 이불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끈이 안쪽에 함께 꿰매어져 있음
 - 섬유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80%, 면화 20%, 일반 짠 직물(니트 처리) 100%이며, 크기는 150cm×200cm 정도인 이불 커버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이 제품은 짠 직물과 인공 섬유로 만든 니트 직물로 구성된 쉼트 커버로 요청되었으나 특성과 모양 등에 따라 이불 커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공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직물로 만들어지지 않은 직물)로 구성된 다른 침구류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6302.32.090호 쉼트 커버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6.40%임

11.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64류~제67류)

가.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Footwear for gymnastics, athletics or similar activities)(제6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403.99.011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 등록번호는 122001737임

1) 물품개요

- 운동화로 상부는 가죽과 고무, 밑창은 고무 재질이며 발 입구 부분에 아킬레스건과 같은 보호 패드가 있음
 - 인스텝은 끈으로 조여져 있으며 바닥 면에 홈 깊이 약 2~3mm의 미끄럼 방지 성형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64류에서 신발류(foot wear)란 알팍한 재료(예: 종이·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 등)로 된 일회용의 신발덮개로서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는 제외하며 이들 제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함
 - 신발류의 범위는 레이스나 리본으로 간단히 조절 가능한 갑피(甲皮)가 있는 샌들(sandal)에서 타이부츠(thigh-boots, 갑피(甲皮)가 다리와 넓적다리까지 덮고 있는 것과 갑피(甲皮)가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에 매는 가죽끈 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까지 있으며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함

- (1) 보통 실내·실외용으로 사용하는 플랫(flat)화나 하이힐화
- (2) 앵클부츠·하프부츠·니부츠(knee-boots)·타이부츠
-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에스파드릴(espadrille: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테니스화·조깅화·목욕용 슬리퍼·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

- 이 제품은 워킹 슈즈로 문의되었으며 밑창은 고무로 만들어졌으며 뒷면은 가죽으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신발에 대한 요건을 만족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6403.99.011호 운동화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7%임

나. 모자류와 그 부분품(Hats and other headgear, plaited or made by assembling strips of any material, whether or not lined or trimmed)(제6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504.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12월 10일, 등록번호는 119004367임

1) 물품개요

- 폴리에스테르 실로 만든 납작한 끈을 나선형(코일 모양)으로 바느질하여 만든 모자임
 - 끈의 너비는 7mm이고 100% 폴리에스테르 재질이며 비닐봉지에 포장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이 제품은 섬유로 구성된 스트립을 함께 꿰매어 크라운과 챙을 형성하는 모자이므로 여러 가지 재료의 스트립(strip, 제6502호의 모체(hat-shape)를 나선형으로 봉

합한 것으로 직접 모자로 쓸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결합하여 직접 만든 모자류에 포함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6504.00.000호 모자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3%임

다.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Skins and other parts of birds with their feathers or down, feathers, parts of feathers, down and articles thereof (other than goods of heading 05.05 and worked quills and scapes))(제6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701.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6월 10일, 등록번호는 122001752임

1) 물품개요

□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으로, 해당 물품은 배드민턴 셔틀콕 제조를 위해 가공되었으며 프레스 성형을 통해 깃털 길이 약 8cm, 무게 약 0.125g임

○ 제조 방법은 생 모발 수집→세척→건조→프레스 성형 순서이며, 배드민턴(블레이드)에 사용되는 셔틀콕의 일부 수입 후 일본에서 추가 가공 없이 셔틀콕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6701호는 다른 호에 좀 더 특별히 열거하였거나 포함한 물품과 이 호의 제외규정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함

-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새의 깃털과 솜털·새의 깃털의 부분품으로서 제품으로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청정·소독이나 보전을 하기 위한 단순한 처리 이외의 가공을 한 것(제0505호 해설 참조), 이 호의 물품은 예를 들면, 표백·염색·컬(curl)·웨이브 가공을 한 경우도 있음
-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으로 만든 제품, 새의 깃털과 솜털·새의 깃털의 부분으로 만든 제품(새의 깃털이나 솜털 등을 가공하지 않았거나 단지 세척만 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깃대(scape)·깃촉(quill)으로 만든 물품은 제외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함
 - (1) 외경 새의 깃털(예를 들면 이것의 깃대(scape)는 여자모자의 마운트(mount) 용으로 사용하도록 철사로 잡아 맺거나 묶여 있다)과 단일의 것으로 혼합된 새의 깃털(서로 다른 깃대(scape)를 결합한 것)
 - (2) 다발 모양으로 결합된 새의 깃털과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나 다른 기본재료에 글루로 접착하거나 고정하여 조합하여 만든 새의 깃털이나 솜털
 - (3) 모자·새털목도리·깃(collar)·케이프(cape)·그 밖의 의류용 물품·의복의 액세서리용으로 새의 부분, 새의 깃털이나 솜털로 만든 장식품
 - (4) 장식용의 새의 깃털로 만든 부채(프레임(frame)의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그러나 프레임(frame)을 귀금속으로 만든 부채는 제7113호에 분류함
- 세관에 문의된 제품은 셔틀콕용 블레이드의 크기와 모양으로 성형된 깃털이기 때문에 제6701호에 따라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6701.00.0000호 성형 깃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6%임

12.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68류~제70류)

가. 그 밖의 석회질 암석(Other calcareous stone)(제6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802.92.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3월 23일, 등록번호는 121000730임

1) 물품개요

- 그 밖의 석회질 암석으로 거친 표면의 돌판을 자르고 접착제와 함께 무작위로 접착제를 붙이고 제품 크기로 성형해 제조한 것임
 - 거친 표면의 돌판은 너비가 약 25~40mm인 스트립으로 자르며 돌판은 석회암 100%로 크기는 152mm×610mm×두께 15~35mm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6802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생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 제외]을 분류하며 그러므로 이 호에는 분할, 거칠게 절단, 네모로 절단, 톱질에 의하여 네모로 절단(표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하여 단순히 블록(block)·시트(sheet)·슬래브(slab)로 조형한 것 이상의 가공을 한 석을 분류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6802.92.000호 그 밖의 석회질 암석(패널)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나. 도자 제품(Articles having a hardness equivalent to 9 or more on the Mohs scale/Other)(제6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909.11.02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6월 28일, 등록번호는 122001564임

1) 물품개요

- 용융 금속용 세라믹 폼 필터로 재료를 발포, 절단, 코팅 재료에 담그고 800°C 이상에서 소성함
 - 성분은 탄화규소, 실리카, 알루미나 탄화규소이며, 알루미나의 크기는 50mm×50mm×22mm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6909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stoneware)·자기(porcelain or china)·동석(凍石, steatite) 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유약처리를 했는지에 상관없음
- 그러나 총설 제1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고온의 내화용으로 설계한 종류의 단열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나 단열재료로 제조하였다 할지라도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함
 - 예로 소결한 알루미나로 만든 실가이드(thread guide)·연마장치 등이 있음
- 이 제품은 구조 중에 용탕을 주물에 부을 때 필터 재료로 사용되는 세라믹 폼 필터로 문의되었으나 고온 작업에 사용되는 내화물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 6903호에 해당되지 않고 도자기로 만든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6909.11.020호 세라믹 필터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다. 유리 섬유 직물(Open woven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제7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019.65.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6월 21일, 등록 번호는 122001748임

1) 물품개요

- 유리 섬유 직물을 사용하는 절연 정착물로 유리 섬유 직물은 여러 섬유가 한 조각으로 모여 메쉬 모양으로 짠 후 압착되고 코팅된 갓 만든 원사와 씨실 원사로 결합함
 - 유리 섬유 직물은 폭 13cm, 길이 243cm, 두께 4mm×4mm이며, 플라스틱 프로파일러는 L자형 폭 7.5cm, 높이 3cm, 240cm임
- 이 제품은 외벽 건설 중에 단열재를 플라스틱 프로파일에 놓고 유리 섬유 직물로 고정하여 붕괴를 방지하는 데 사용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제품은 유리 섬유를 기계적으로 짠 직물에 플라스틱 제형재를 결합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유지면적이 넓은 유리 섬유 직물에 있는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7019.65.000호 유리 섬유 직물을 사용하는 절연 정착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13.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가. 귀석·반귀석(Of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natural, synthetic or reconstructed/For laboratory or industrial purposes)(제71류)

- 시계용 사파이어 유리로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116.20.1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8월 5일, 등록번호는 122002180임

1) 물품개요

- 손목시계의 커버 유리로 사용하는 사파이어 유리로 합성 사파이어의 결정체를 절단하여 연마한 것임
 - 합성 사파이어(산화알루미늄) 재질로 원반 형상을 띄고 있으며 시계의 커버 유리로 사용함
 - 1장씩 종이제 대지에 끼워, 40장 정도를 작은 상자에 수납해 포장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제품은 건전지나 축전지를 이용하여 수분 간격으로 태엽을 감는 기구를 갖춘 시계로, 이러한 시계는 보통의 밸런스 휠(balance-wheel)과 헤어스프링(hairspring), 진자(pendulum)를 조정수단으로 하여, 전자석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태엽을 다시 감는 것에 분류되지 않음
- 또한 제70류 주1(b)의 규정에 따라 제71류의 물품(예: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음

- 본 제품은 합성 사파이어를 시계 커버 유리 모양으로 연마하고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관세표 제71.16항 및 관세표 제71.16항의 규정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합성 보석 제품으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7116.20.100호 시계에 사용되는 사파이어 유리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임

14. 비금속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가. 철강 또는 비철강선 기타(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25% of carbon)(제72류)

- 케이블 타이(내장형 강선)로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217.90.011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2월 14일, 등록번호는 120003717임

1) 물품개요

- 원예용 바인딩인 내장 강 선(Wire)으로 단일 강철 와이어에서 플라스틱으로 덮인 와이어로 부드러운 소재로 쉽게 꼬일 수 있음
 - 물체 손상에 강하고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7217호의 와이어는 이 류의 주 제1호 하목에 따라 강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한 철재(주조 모양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하고, 제7203호의 철재는 제외함

- 다만 크로뮴(chromium)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함유될 수 있음
- 문의된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강선으로 원예 기둥, 줄기 등을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강철 와이어가 내장된 플라스틱 와이어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7217.90.011호 바인딩 스트링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9%임

나. 기타 철강제품(Tanks, casks, drums, cans, boxe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iron or steel,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l,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Others)(제7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310.29.09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8월 19일, 등록 번호는 122002208임

1) 물품개요

- 온수난방 시스템을 위한 밀폐된 팽창 탱크로 액체가 공기 챔버 측에서 밀봉된 공기로 가열될 때 팽창으로 인한 압력 변화의 균형을 조정하여 시스템의 압력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함
 - 본체는 아연 도금 탄소강, 커버 플랜지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무 멤브레인은 부틸 고무, 충전 밸브는 황동 재질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7310호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임

- 제7310호에는 내용적 300ℓ 이하의 철강 시트(sheet)나 판(plate)으로 만든 용기로서 이동이나 취급이 용이한 크기의 것으로서, 보통 상업적으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고착물로 설치되는 것과 같은 용기를 분류함
- 문의된 제품은 내부에 고무제 주머니형의 막 등을 갖는 철강제의 탱크로 고무제의 막을 내포해, 공기 등을 봉입하는 탱크 본체라고 인정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7310.29.090호 확장 탱크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90%임

다. 구리와 그 제품(Copper bars, rods and profiles/Others)(제7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407.29.99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7월 22일, 등록번호는 122002062임

1) 물품개요

- 구리, 베릴륨 등으로 이루어지는 합금 봉(bar·rod)이며 플라스틱 성형 금형 및 인서트 부품에 사용됨
 - 횡단면이 전체 길이를 통해 균일한 직사각형의 중공이 아닌 압연 제품으로,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넘는 것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

고,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불록정다각형(‘편평화한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하며, 이들은 마주 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것이다)인 것을 말함

-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에 걸쳐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질 수도 있음
 -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함
 - 또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진 주조 제품이나 소결(燒結)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 이외의 다른 연속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함
- 본 제품은 구리 합금의 판 형상으로 조회가 있던 물품으로 성분, 제조공정 및 형상이 구리 합금의 봉으로 인정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7407.29.990호 구리 합금 막대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8%임

라. 니켈(Nickel alloys)과 그 제품(제7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506.2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3월 29일, 등록번호는 121000672임

1) 물품개요

- 니켈 합금 시트(Sheet)로 차단기 범압기의 코어에 사용되며 직사각형으로 잘라 니켈 합금 시트 크기는 41mm×6mm×두께 0.35mm임

- 시트는 용접·압연 등에 의한 철강을 입히는 데 사용하며, 특히 화학공업용 장치의 건설에 사용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7506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 라목에서 규정한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과 박(箔, foil)을 분류하는데, 이들 물품은 제7409호와 제7410호의 해설에서 규정한 구리제품과 상응함
 - 이 호에서는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을 제외함
- 문의 제품은 변압기의 일부로 문의되었으나 제품 속성에 따라 니켈 합금판으로 분류되어 현재 변압기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7506.20.000호 니켈 합금 시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6%

마. 알루미늄과 그 제품(Aluminium tubes and pipes/Of aluminium alloys)(제7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608.2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 등록번호는 122001815임

1) 물품개요

- 알루미늄 합금 튜브로 자동차 본체 및 뒷바퀴의 후행 조인트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임
 - 제조 방법은 알루미늄 합금 맞춤형 압출 파이프→풀아웃→절단→절단, 절단 및 모따기 순서이며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A6061-T6)임

- 이 제품은 수입 후, 가황고무로 가공되기도 함

2) 결정세변 및 사유

- 이 제품은 자동차 부품으로 문의되었으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진 관형 물품으로 자동차의 차체와 타이어의 접합부에 사용되지만, 파이프를 고정된 크기로 절단하는 단순한 형상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 튜브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7608.20.000호 알루미늄 합금 튜브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0.2%임

바. 아연과 그 제품(Other articles of zinc)(제7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7907.00.90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12월 16일, 등록번호는 119004584임

1) 물품개요

-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철근에 부착되는 희생 양극 재료인 아연 제품으로 모르타르 경화체로 덮인 양쪽 끝에서 연장된 금속 바인딩 와이어와 아연 코어가 있는 타원형 모양임
 - 아연 순도 98.5% 이상이며 그 외 시멘트, 모래 및 수산화물 등의 모르타르, 스테인리스 스틸의 와이어 등의 재질로 이루어짐

2) 결정세변 및 사유

- 문의된 제품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고 전류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연

제품인 것으로 인정됨

- 아연 코어를 경화 모르타르로 덮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에 부착한 제품으로 아연은 희생 양극으로 부식 방지 전류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으며 아연을 안정적으로 감싸는 모르타르는 아연을 쉽게 녹슬게 만들
- 또한 아연과 모르타르의 다양한 구성 재료로 구성된 품목이므로 이 제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재료는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는 아연이므로 같은 표 제79.07항 및 같은 표 제79.07항의 규정에 따라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7907.00.900호 부식 방지를 위한 희생 양극 재료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6%임

사. 그 밖의 비금속, 서멧, 이들의 제품(Cermets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제8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113.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4월 3일, 등록번호는 120001023임

1) 물품개요

- 알루미늄과 세라믹으로 주로 구성된 잉곳으로 알루미늄 합금 덩어리를 녹이고 탄화규소를 주성분으로 한 분말과 혼합된 용융 금속을 부어 수냉으로 응고시킴
 - 길이는 127mm×폭 584mm×두께 64mm이며, 무게는 11kg(오차 ±2kg)에 알루미늄 및 탄화규소 성분임
- 세라믹(ceramic) 성분은 보통 산화물·탄화물·붕화물 등으로 이루어짐
 - 서멧(cermet)은 세라믹 성분(내열성과 높은 녹는점을 가진 것)과 금속 성분을

동시에 함유한 것으로, 이들 물품의 생산에 이용되는 제조 방법과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 세라믹 성분과 금속 성분과 관계가 있으므로 서멧(cermet)이라는 이름이 생김

2) 결정세번 및 사유

- 문의된 제품은 기계장치 및 장비에 있는 부속 및 차량의 부속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며, 알루미늄 합금과 탄화물 분말의 용융물을 혼합하여 복합 재료로서 주조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8113.00.000호 서멧 잉곳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2%임

아. 기타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 품속제 공구·스푼·포크(Spoons, forks, ladles, skimmers, cake servers, fish-knives, butter-knives, sugar tongs and similar kitchen or tableware)(제8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215.99.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6월 9일, 등록번호는 122001559임

1) 물품개요

- 스테인리스 스틸 포크로, 레저용품으로서 야외에서 바비큐 요리를 할 때 큰 고기를 뒤집기 위한 레저용품으로 사용됨
 - 원통형 핸들이 있는 포크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며, 전체 길이 약 36cm 정도임

2) 결정세변 및 사유

□ 제8215호는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으로 이러한 물품은 일체로 되어 있거나 비금속(卑金屬)·나무·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자루가 부착되어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함

- 여러 가지의 스푼(소금과 겨자용의 스푼을 포함한다)
- 테이블용 포크, 카빙(carving)용 포크·서빙용 포크·조리용 포크, 케이크용 포크, 굴(oyster)용 포크, 달팽이용 포크, 토스팅(toasting) 포크
- 국자와 국자형의 스키머(skimmer, 채소용·튀김용 등)
- 생선·케이크·딸기·아스파라거스의 서비스용 주걱
- 날이 없는 피시나이프와 버터나이프
- 여러 가지의 설탕집게[날(blade)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케이크용·오르되브르(hors-d'oeuvre)용 아스파라거스용·달팽이용과 식육이나 얼음용의 집게
- 가금류나 식육용의 그립(grip)과 가재용의 그립과 유닛 그립(unit grip)과 같은 그 밖의 식탁용품

□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포크이며 레저 품목으로 문의되었음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8215.99.000호 스테인리스 스틸 포크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6%임

자. 조립 가구에 사용되는 전용 부품(Other, suitable for furniture)
(제8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8302.42.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 등록번호는 122001837임

1) 물품개요

- 조립 가구에 사용되는 전용 부품(서랍의 손잡이 부분)으로 압출 성형 후 특정 길이로 자르면 페인팅을 위한 교수형 구멍이 있으며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조립 가구 서랍의 손잡이로 쓰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품은 조립된 가구의 전용 부품으로 문의되었으며 이 제품은 조립 가구의 서랍의 전면 플레이트 부분에 부착되어 손잡이로 사용, 기본 금속 가구의 고정구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8302.42.000호 조립 가구 전용 부품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1%임

15.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제84류~제85류)

가.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Other reciprocat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s)(제8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413.50.09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 등록번호는 122001923임

1) 물품개요

- 체온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펌프로 찬물을 순환시키는 최적 형상 장치로 뜨거운 태양 아래와 에어컨 장비가 없는 야외에서 착용하여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물품임
 - 몸체(외부 나일론, 라이닝 폴리에스테르), 탱크(플라스틱), 냉각 호스(실리콘 고무)로 이루어져 있고 차가운 물과 냉동 페트병 또는 얼음 150ml를 탱크에 넣고 펌프를 작동시켜 냉수를 순환시키고 냉각 호스와 접촉하여 등, 가슴의 체온 상승을 완화시킴

2) 결정세번 및 사유

- 이 제품은 사람이 착용하며 액체 펌프로 차가운 물을 순환시켜 냉각 호스와 인체가 접촉하는 부분의 체온을 낮추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8413.50.090호 냉수 순환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Other appliances)
(제8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509.8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9월 27일, 등록번호는 122002680임

1) 물품개요

- 전기 두피관리 장치로 플라스틱 브러시 부분을 사용해 두피를 관리하며 충전 시 램프에 불이 켜지며 본체 상단에 탈착식 플라스틱 브러시와 LED 램프가 4개 있는 진동 없는 제품임
- 크기는 길이 85mm×폭 85mm× 높이 102mm이며 약 320g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문의된 제품은 기능, 용도 등에서 샴푸의 발포성을 개선하고 세척 효과를 강화하며 헤어토닉의 두피로의 침투를 촉진하는 전기 장치임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8509.80.000호 두피 관리를 위한 전기 장비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16.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86류~제89류)

가. 수송 컨테이너(Containers (including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f fluids) specially designed and equipped for carriage by one or more modes of transport)(제8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609.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 등록번호는 122001818임

1) 물품개요

- 본 제품은 강철 수송 컨테이너로 천연고무 등의 운송에 사용됨
 - 받침대와 지지대는 아연 도금 강판이며, 측벽은 아연 합금 도금 강판 재질임
 - 조립할 때 상단에 뚜껑이 없는 입방체이며 내부는 열린 공간이고 상단 모서리에 적층하기 위한 핀, 측면 상단의 벨트 등으로 뚜껑(판지 등)을 고정하기 위한 걸쇠, 화물 취급을 위한 지게차 포켓이 있음
 - 크기는 폭 1,465mm×깊이 1,150mm×높이 1,098mm이며 내용물 용량은 1,600ℓ(최대 하중 중량 1,650kg)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제품은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문의된 물품이며 구조 등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운송 방법에 의해 운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장착된 컨테이너로 인식되기 때문에 강철 수송 컨테이너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8609.00.000호 강철 수송 컨테이너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Other)
(제8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708.99.09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 등록번호는 122001667임

1) 물품개요

- 자동차 부싱 부품으로 토크로드의 엔진 측면 부싱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으로 자동차 엔진을 스트럿 타워에 부착하는 토크로드의 구성 요소로 사용됨
- 맞춤형 압출 및 특수 성형 재료의 정밀 절단 및 양 끝면을 눌러서 제조하며 단면 중앙에 원형 구멍이 있는 모양임

2) 결정세변 및 사유

- 문의된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 원통형 제품이며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을 압출 또는 오목한 모양으로 절단하고 양 끝면을 눌러 제조되며, 그 모양 등에서 자동차에서만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8708.99.090호 자동차 부싱 부품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다.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Other parts of aeroplanes, helicopters or unmanned aircraft)(제8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8807.3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2월 7일, 등록번호는 121000234임

1) 물품개요

- 본 제품은 조립되지 않은 헬리콥터 부품으로 엔진, 카울링, 내부 패널, 리프팅 시스템 등이 없는 헬리콥터의 구성품임
- 본 제품에 포함되는 구성품은 헬리콥터의 동체를 구성하는 전체 부품(전기 장비 및 꼬리 장치 포함), 앞 유리, 창문, 제어 시스템, 랜딩 기어임

2) 결정세변 및 사유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음
- 본 품목은 조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헬리콥터의 동체, 앞 유리, 창문, 제어 시스템 및 랜딩 기어를 구성하는 완재료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8807.30.000호 헬리콥터 부품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라. 선박과 수상 구조물(Other floating structures (for example, rafts, tanks, coffer-dams, landing-stages, buoys and beacons)(제8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8907.9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6월 30일이며, 등록번호는 120001790임

1) 물품개요

-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슐 모양의 인명 구조 쉼터로 쓰나미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가 탑승하고 대피하는 데 사용하는 것
 - 내부 공간이 있는 캡슐 모양의 쉼터, 비상계단, 계류용 후크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본체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며, 길이 255cm, 폭 214cm, 높이 201cm에 무게는 600kg임

2) 결정세변 및 사유

- 제8907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특정 물에 뜨는(floating) 구조물을 분류하며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함
 - 가교(假橋)의 지지 등에 사용하는 중공(中空) 통형의 부선거(解船渠), 다만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부선거(解船渠)는 제외함(제8901호나 제8905호)
 - 살아있는 갑각류나 어류를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뜨는 탱크
 - 특정 항구에서 선박에 기름·물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뜨는 탱크
 - 교량건설 등에 사용하는 케이스형의 코퍼댐(coffer-dam)
 - 부잔교(floating landing-stage)
 - 계류(繫留)용 부표·표시용 부표·조명용·경보용 부표 등의 부표
 - 수로·위험수역 등의 표시에 사용하는 수로 부표
 - 배의 재부양(再浮揚, refloating)에 사용하는 재부양(再浮揚)기기
 - 바다청소(mine-sweeping) 작업용의 부유식 패러베인(paravane)
 - 원형의 부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교(raft): 난파당한 사람의 운송용으로 해면에 접촉되면 자동으로 부풀리게 함
 - 독문(dock-gate)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물에 뜨는 구조물

- 본 제품은 항해용 동력, 선회 방향타, 추진 노, 구조될 때까지 부유하는 힘을 고려하여 부유 구조물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8907.90.000호 쓰나미 생명 구호 십터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17.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제92류)

가. 기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Optical fibres and optical fibre bundles; optical fibre cab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5.44; sheets and plates of polarising material; lenses (including contact lenses), prisms, mirrors and other optical elements, of any material, unmounted, other than such elements of glass not optically worked/Others)(제9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001.9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6월 29일, 등록번호는 122001828임

1) 물품개요

- 반사방지막을 코팅한 유리제의 커버유리로 집적 회로를 수납하는 반도체 패키지의 뚜껑으로 사용됨
 - 재질은 유리, 이산화규소, 산화티탄으로 구성되며 사이즈는 세로 30mm, 가로 42.25mm, 두께 0.95mm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제품은 반도체 패키지에 사용되는 유리로 만든 뚜껑으로 조회된 물품으로 광학

적으로 연마한 유리제의 평행 평면판에 반사방지막을 코팅한 것이며, 그 성상 등으로부터 그 외의 광학용품으로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9001.90.000호 커버유리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나. 시계와 그 부분품(Other clock or watch parts)(제9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114.9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5월 6일, 등록번호는 121001171임

1) 물품개요

- 합성 귀석로 만든 베어링으로 워터 게이지 내부에 장착되고 기어의 회전 지지대에 사용됨
 - 워터 게이지에 사용되지만 시계에도 사용할 수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제품은 물 회전 지원에 사용되는 합성 사파이어로 만든 베어링으로 문의되었으며 특성, 용도 등에 따라 시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 귀석 베어링으로 인식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9114.90.000호 합성 귀석 베어링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다.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Percussion musical instruments (for example, drums, xylophones, cymbals, castanets, maracas))
(제9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206.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10월 25일, 등록번호는 119003875임

1) 물품개요

- 카혼으로 자작나무 등의 나무 합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의 상단에 앉아서 손, 발 등으로 악기를 쳐서 공명에 의해 소리가 나는 타악기임
 - 물품의 크기는 높이 460mm×너비 300mm×깊이 300mm 정도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제품은 타격 등에 의한 공명으로 인해 본체 자체 또는 본체 내부의 공진선 간의 접촉에 의해 독특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서로 유사한 물체끼리, 봉(stick)이나 이와 유사한 기기로, 맨손으로 치는 악기인 타악기(percussion musical instruments)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9206.00.000호 카혼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18.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가. 기타 무기(Other arms (for example, spring, air or gas guns and pistols, truncheons), excluding those of heading 93.07)
(제9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304.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4월 7일, 등록번호는 121000859임

1) 물품개요

- 새와 짐승 방제용 새총으로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 분류되며 Y자형 금속 손잡이 부분(프레젠테이션 시 조립되지 않음)의 끝에 세 개의 고무 튜브가 부착되어 고무관 끝에 금속 탄환을 고정하는 부분이 있음
 - 슬링샷 본체는 스틸, 튜브는 천연고무, 탄환은 스틸 재질이며, 슬링샷 본체의 크기는 높이 18cm, 깊이 17cm이며, 튜브의 크기는 16cm, 탄약은 8mm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제품은 새총과 강철 탄약이 들어 있는 품목으로, 종이 케이스에 보관되어 소매용으로 포장되며, 소매 세트로 보았음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9304.00.000호 새총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6.6%임

19. 잡품(제94류~제96류)

가.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Others seats)(제9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401.80.09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6월 29일, 등록번호는 122001978임

1) 물품개요

- 소파 매트리스로 소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매트리스로도 사용할 수 있음
 - 측면 원단은 폴리에스테르 100%, 중재는 우레탄 폼 100%이며 매트리스 사이즈는 폭 140cm, 깊이 72cm, 높이 30~40cm, 베개 사이즈는 폭 140cm, 깊이 177cm, 높이 20cm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문의된 제품은 늘린 상태는 매트리스이지만, 형태를 소파로 바꾸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넓이 및 등받이가 형성되어 충분한 크기를 가져 소파 매트리스로 인정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9401.80.090호 소파 매트리스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나.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제9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506.91.000호이며, 시행일은 2022년 8월 18일, 등록번호는 122002318임

1) 물품개요

- 신체 트레이닝 용품으로 이면의 베어링식 볼을 움직임으로써 근력 트레이닝과 스트레칭을 목적으로 한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임
 - 원반 형상으로, 이면에 베어링식의 볼을 5개 장착한 것이며 손바닥, 팔꿈치, 무릎, 다리를 실어, 체간, 고관절, 견갑골 주위 등의 전신의 근력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강용품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본 제품은, 근력 트레이닝과 스트레칭을 목적으로 한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물품 조치가 있었으며 손바닥 등을 표면에 올려 다양한 움직임을 함으로써 전신의 근육을 단련하는 신체 트레이닝 도구라고 인정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9506.91.000호 신체 트레이닝 용품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다. 기타 볼펜 등 잡품(Ball point pens; felt tipped and other porous-tipped pens and markers; fountain pens, stylograph pens and other pens; duplicating stylos; propelling or sliding pencils; pen-holders, pencil-holders and similar holders; parts (including caps and clips) of the foregoing articl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6.09/Others)(제9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608.10.09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6월 29일, 등록번호는 122001854임

1) 물품개요

- 다기능 볼펜으로 가위, 편지 오프너를 결합한 볼펜임
 - 본 제품은 접어서 수납 가능하고, 가위의 칼날은 수납 가능함
 - 재질은 ABS, 강철이며 크기는 길이 125mm×굵기 13mm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9608.10은 볼펜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끝에 볼이 있는 잉크관을 넣은 몸체로 구성함
- 본 제품은 볼펜으로 문의되었으며 제품의 볼펜, 가위, 편지 오프너 등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가 복합된 물품이지만 제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규칙에 따라 분류됨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9608.10.090호 다기능 볼펜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6%임

제2편 관세평가 결정사례

I. 관세평가 개요

1. 관세평가⁴⁷⁾

- 관세평가는 관세의 과세표준의 하나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법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신고 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물건의 가격, 수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함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종가세 물품의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자, 관세율과 함께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일본의 관세율은 종가세가 많고 종량세더라도 소비세 관세표준이 관세의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계산됨
 - 과세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을 종가세 제품,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을 종량세 제품이라고 하며, 가격과 수량 모두를 과

47) 강성훈 외. pp. 51~52.

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혼합세 제품이라고 함

-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종량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이나 무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도 과세가격을 계산하여야 함

2. 관세평가에 관한 협정

가. 1948 GATT 제7조⁴⁸⁾

-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 협정으로, 1948년도 GATT 제7조의 관세상의 평가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수입품의 관세상의 가액은 실제 가액에 기초해야 하고 국내 원산지인 물품가액 또는 임의 또는 가공의 가액에 기초해서는 안 되며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내국세로 면제 또는 환급되는 물품금액을 포함할 수 없음
 - 실제가격은 수입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해당 물품 또는 동종물품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완전한 경쟁조건하에 판매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가격을 의미함
 - 실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목적의 가격은 확인 가능한 한 실제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치에 기초해야 함
- 타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 원칙적으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정하는 평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초와 방법은 무역업자가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

48) 1947년 GATT 협정문(국문본),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22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8, 검색일자: 2022. 10. 12.

고 관세목적의 가격을 추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어야 하고 충분히 공개되어야 함

- GATT 규정은 가액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체약국의 수입물품 과세가액 결정 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한 규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통일 규정인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을 작성하게 되었음
- 일본 역시 해당 협정에 가입하게 되어 정률법을 개정하였으며, 1981년 1월 1일부터 해당 협정을 기초로 하여 관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내용 자체가 실질적인 개정이라기보다는 동경라운드 시점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음

나. 1994 GATT(WTO 협정)⁴⁹⁾

- GATT 제7조의 실시규정으로서 작성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의 취지는 다음과 같음
 - 과세평가의 결정을 위한 기초는 거래가액이며 공정한 제도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자의적 또는 가공한 과세가액은 배제하도록 함
 - 상관행에 적합한 간명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로 수출국에 따른 차별은 배제하며 덤핑에 대항하는 조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수입국에 수출을 위해 판매되었을 시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소요금액을 가산한 금액(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함
-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더해지는 가산요소는 다음과 같음
 -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의 비용, 포장에 관련된 비용, 무상 또는 할인해서 제공

49)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WTO국문협정문,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86, 검색일자: 2022. 10. 12.

된 원재료 등의 비용,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 요금,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 수익, CIF를 과세가액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 수입항까지의 수송, 적재·하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보험료

- CIF, FOB 등 어느 것에 기초하여 결정할지는 협정 가입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함

- 거래가액을 기초로 과세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순서로 과세가액을 결정하도록 함
 - ①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 ② 유사물품의 거래가액에 의한 방법, ③ 국내 판매 가격으로부터의 역산에 의한 방법, ④ 제조원가를 기초로 한 적산에 의한 방법(수입자가 요청했을 시 ③ 및 ④의 적용순서는 반대가 됨), ⑤ 앞의 ①부터 ④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시 본 협정 및 GATT 제7조의 원칙과 이 일반규정의 적합 방법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의 자국통화로의 환산은 수입국이 적시에 공표하는 환율에 따르도록 함

II. 관세평가 제도

1. 개요

- 일본은 관세평가 협정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에 대한 내용은 「관세정률법」(제4조 내지 제4조의9), 「관세정률법 시행령」(제1조의4 내지 제1조의13) 및 「관세정률법 시행 규칙」(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⁵⁰⁾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계산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방법(제1방법)에 의해 실시되나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방법(제2방법, 제3방법), 국내 판매 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 제조원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5방법)의 순으로 적용함
 - 상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시 합리적인 조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함
 -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5방법)을 국내 판매 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특정항공운송물품, 개인적인 수입물품 등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50)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7>, 검색일자: 2022. 10. 28.

가. 수입거래

- 수입거래란 원칙적으로 물품을 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거래된 때의 매매를 말하며, 당해 매매는 통상 수출국의 업자와 일본에 거주하는 업자와의 사이 또는 일본에 거주하는 자 간에 이루어진 것임⁵¹⁾
- 매매가 물품을 일본에 도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해도, 현실에 그 물품이 그 매매에 의해 일본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그 매매는 수입거래로 볼 수 없음
- 증여나 임대차 등 매매가 아닌 거래는 수입거래에 포함되지 않음

나. 판매자와 구매자

- 관세평가에 있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자, 구매자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 관세평가 제도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서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총액에 기초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 수입거래에서 판매자 및 구매자란 실질적으로 수입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며, 수입거래에서의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하자, 수량 부족, 사고, 불량채권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임
- 통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교환되는 송품장에 기재된 송품장 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되어 있지만, 이러한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든 경우에서 꼭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라고 볼 수 없음

51)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 제1항

2.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이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거래가격을 더한 가격임⁵²⁾
 -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에 관련된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에 의해 판매자에 대한 또는 판매자를 위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임
 - 거래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도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의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한 가격임
 - 수출국에서 수출 시에 경감 또는 환불을 받아야 하는 관세 등의 과징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함

- 단 수입거래가 된 물품일지라도 수입거래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은 존재하고 있으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무상물품, 위탁판매물품, 임대차물품 등은 수입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나. 실제지급가격

- 실제지급가격이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가격으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하는 총액을 말함⁵³⁾

52) 「관세정률법」 제4조

-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관련된 송장으로 당해 거래가격 기타 조건을 표시한 경우 당해 송장에 표시된 송장 가격에 기초하여 인정함
- 별도 지급금액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실제지급가격과 송장 가격이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당해 별도지급금 등을 더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됨
 - 다음과 같은 경우가 별도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
 - 송품장 가격에 더해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조건으로 할증금, 계약요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구매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채무를 지고 있어 당해 채무를 구매자에게 변제시키도록 송품장 가격에서 당해 변제액을 공제한 경우
 -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해 채무를 가지고 있어 당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물품의 가격 일부와 상계하기 위해 당해 가격을 송품장 가격에서 공제한 경우
 - 수입물품의 분석결과 시장판매 가격 등에 기초해 최종적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
-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수입신고일 이후에 행해지는 설치, 조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수입항 도착 후의 운임, 보험료 등
 - 일본에서 부과될 관세 등
 - 연불 금리
 - 단 구매자를 위한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A/S 비용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다. 기타 비용 가산요소⁵⁴⁾

1)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및 그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가산요소가 될 수 있음
 - 수입항이란 일본에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부터 수입물품의 하선 또는 하륙이 된 항을 말함
 - 수입항에 도착은 단순히 수입항의 항역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하선 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함

-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운임이란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운송비용을 말하며,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항까지의 운송비용을 포함함
 - 수입물품이 운송계약에 기초해 운송된 경우에 당해 운송계약에 기초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다음의 비용을 포함함
 -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소요된 물품배치자재비, 선박개장비 등의 비용
 - 항해용선 계약에 기초해 수입물품을 운송한 선박의 복로 시 적재물품이 없는 경우의 공선회조료
 - 외국환 시세의 변동에 의한 보조금
 - 컨테이너 임차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임차료의 금액은 당해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에 의한 것으로 하고, 수입항 도착일의 익일 이후의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실제지급가격에 운임 등의 금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임 등의 금액으로 당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산함⁵⁵⁾

54)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5호

- 운임 등의 금액의 가산은 객관적이고 또한 수치화된 자료에 기초하여 가산함⁵⁶⁾
- 만약 운송이 특수한 사정에 따라 실제로 요청한 수입항까지의 운임의 액수가 통상 측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액수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운임으로 계산함⁵⁷⁾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보험료란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송에 관해서 실제로 필요한 보험료를 말하며, 그 수입물품의 수출항까지의 운송에 관련된 보험 수수료를 포함
 - 다만 실제로 요청한 수입항까지의 보험료의 액수가 통상 필요한 그 수입항까지의 보험료의 액수를 현저하게 넘는다면 통상 지급하는 보험료로 책정함
- 통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정률법 기본통달」에 근거해 각각 정하는 바에 따름⁵⁸⁾
 - 수입물품에 보험이 부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필요로 하는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 수입물품에 보험이 부보되어 있는 경우로 당해 수입물품에 관계된 납세 신고 시 당해 보험료의 금액이 분명하지 않음을 이유로 수입자가 수입신고 실적에 기초해 통상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보험료의 금액으로 세관장이 공시하는 금액을 당

55)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7 (1)

56)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7 (2),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가 없는 때에는 법 제4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해 과세가격을 계산함

57) 운송이 특수한 사정하에서 행해진 것에 의해 실제로 요한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의 액수가 통상 필요로 하는 그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의 액수를 현저하게 넘게 된 경우는 실제로 요한 운임 등의 금액이 아니라, 통상 필요한 운임 등의 액수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예를 들어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운송 조항을 포함한 계약에 한함) 또는 수입물품의 운송계약의 성립 후에 천재, 항만 파업 등 그 수입물품의 수출자 혹은 매수 또는 수입자 혹은 매수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로 계약에 따른 운송 방법으로 운송할 수 없었던 경우가 해당됨(이 경우 실제 운송 방법 및 운송 경로에 관계없이 계약이 전제로 하는 운송 방법, 그리고 운송 경로에 의해 운송된 것으로 한 경우의 통상운임 등의 금액을 '현실 지급 가격'에 가산함)

58)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8 (4)

해 수입물품에 관계된 보험료로 신고하는 때는 이를 인정함

- 세관장이 공시하는 금액은 역년(1월부터 12월)의 수입실적에 기초해 통상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보험료의 금액으로 당해 수입신고 실적을 기초로 관세국장이 매년 결정함

- 그 외 기타 당해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수출국 측 일시적 보관료, 수출 시 세관 절차 등 행정 비용, 수출국 측 컨테이너·서비스·운임 등이 있음
 - 수출국에서의 적재 전 일시적 보관료는 수출국의 공장도가격으로 구입된 물품이 선적예정선의 도착 지연에 의해 당해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출항에서 보관되는 경우 당해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임
- 또한 운임 및 보험료가 CIF 조건 등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⁵⁹⁾
 - CFR 또는 CIF 계약(수입거래에 관련된 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판매자가 부담)에서 당해 운임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하고,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운송비용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함
 - 수입거래에 관련된 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FOB 계약의 경우 당해 운임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며,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운송비용의 금액을 그 부담자를 불문하고 당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은 다음의 수입물품의 수입항 도착 후의 운임 등을 포함하지 않음⁶⁰⁾
 - 수입항에서의 하륙 등의 비용
 - 선내하역, 연안하역, 기타 이와 유사한 하역을 위한 비용

59)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8 (6)

60)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8 (7)

- 국내운임
- 수입세보험(Duty Insurance)에 관련된 보험료
- 국내운송에 관련된 보험료
- 수입물품의 운송에 관련된 착불운임취급료(Collect Charge) 및 입체수수료(Disbursement Fee)

2) 중개료 등의 수수료(매입수수료 제외)

-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세 가격에 산입함
-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료를 받는 사람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이 이에 해당함
 -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위해 수입 거래를 성립하기 위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 수입물품의 매수에 의한 판매에 관해서 그 매수에 대신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판매 대리인)에 대해, 매수가 지급하는 수수료
- 이때 매입에 관해 매수를 대리하는 사람에 대한 매입수수료는 가산요소가 되지 않음
 - 가산요소가 되지 않는 매입 수수료란, 매입에 관하여 매수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그 매입에 관련된 업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함
- 구매자에 의해 지급되는 수수료가 가산요소가 아닌 매입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의 역할 및 제공하고 있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실시함
 -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가 매입에 관하여 매수를 대리해 그 매입에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인 것이 매입업무 위탁계약서 등의 문서에 의해 분명해야 함
 - 수수료를 수령하는 사람이 매입에 관하여 매수를 대리하여 그 매입에 관련된 업

무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다는 실태의 존재가 문서나 기록 그 외의 자료에 의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세관의 요청 시 매매계약서, 매수(제조사 등)가 매수에게 작성한 매입서 등의 제시가 가능해야 함

3)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용기의 비용

- 용기란 관세율표상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로 당해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 및 포장용기를 말함⁶¹⁾
- 수입물품의 용기 비용에 대해 당해 비용이 수입거래에 관해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용기의 비용에 해당함

4)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 가산요소가 되는 수입물품의 포장에 필요한 비용에는 포장에 관련된 재료비나 포장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관련된 인건비 등이 포함됨
- 단 해당 포장이 수입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로 해당 비용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입거래와 관련해 구매자에 의해 무상으로 또는 할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면 구매자가 무상으로 또는 할인하여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비용에 해당됨

5) 무상제공 등의 물품 및 용역의 비용⁶²⁾

-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입거래와 관련해 무상으로 또

61)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10

62) 본 보고서는 「관세정률법 기본통달」(4-12)을 따라 무상제공 등의 물품 및 용역의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강성훈 외(2016), p. 56에서의 생산지원비용과 동일한 항목임

는 할인하여 제공한 다음 물품 또는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임

- 수입물품에 조립된 재료,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공구, 주형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으로 일본 이외에서 개발된 것
- 재료,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는 상표라벨, 상품라벨 등을 포함함
- 단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품명, 원산국, 원재료 등의 표시라벨, 「가정용품품질 표시법」에 기초한 섬유제품에 대한 품질, 세탁라벨 등 일본의 법률 등에 기초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만이 표시된 라벨은 제외함
- 공구, 주형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는 기계, 설비, 금형, 다이스 등을 포함함
- 당해 수입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에는 연료, 촉매 등을 포함함
-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으로, 일본 이외에서 개발된 것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구매자가 외국에서 개발된 제법에 관련된 기술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당해 기술을 무상으로 해외 생산자에게 제공해 이에 기초 수입물품을 생산하게 한 경우임
 - 구매자가 외국에서 작성된 의장을 구입, 당해 의장을 무상으로 해외의 생산자에게 제공해 이에 기초해 수입물품을 생산하게 된 경우임

6) 로열티 등

- 수입물품에 대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사용에 따른 대가(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로 구매자에 의해 수입물품의 수입거래 조건으로 매입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것임
- 수입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은 다음의 여섯 가지 경우를 말함
 -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 등이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자인 경우에 구매자가

당해 판매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

-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 등이 판매자 및 구매자 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 당해 판매자와 당해 구매자와의 취결에 의해 당해 구매자가 당해 특허권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것
-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 등이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구매자가 당해 특허권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것
- 판매자가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 등의 하청회사인 경우 구매자가 당해 특허권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것
- 판매자가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허락을 받는 경우 당해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해 당해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때 당해 구매자가 당해 특허권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
-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허락을 받는 경우에 당해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당해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때에 당해 구매자가 당해 특허권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

○ 단 수입물품을 일본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사용료는 대상이 되지 않음

□ 수입물품에 관련 있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은 다음을 말함

-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수입물품이 특허발명인 물품, 특허제법에 의한 생산물인 경우, 방법특허를 실시하기 위한 물품인 경우를 말함
- 의장권은 수입물품이 모양, 형상 등 그 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상표권은 수입물품이 상표를 부착한 경우,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를 말함

7) 사후귀속이익⁶³⁾

□ 수입물품의 처분이나 또는 사용으로 얻어지는 수익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63)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 제1항 제5호

3. 수입거래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

- 다음의 수입거래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⁶⁴⁾
 - 구매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거래되는 해당 물품 이외의 거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취지의 조건 등 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어렵게 하는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구매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이 직·간접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액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 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매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⁶⁵⁾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전사용 또는 자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의 특수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만 재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해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을 배제하지 않음
 -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제한
 - 법령에 의하거나 또는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수입화물의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제한(예를 들어 판매 대리인을 통한 소비자 방문판매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그 형식에 따른 수입화물의 국내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

64)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 제2항

65)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7>, 검색일자: 2022. 10. 30.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어렵게 하는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⁶⁶⁾
 -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도 구입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의존하는 경우
 - 매도인이 특정 수량의 완제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그 반제품인 수입화물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형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특수지급 형태를 기초로 수입화물의 가격이 책정된 경우
 -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라도 그 조건과 관련된 금액이 분명한 때에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결정을 어렵게 하는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그 조건과 관련된 금액은 그 수입화물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원칙적인 방법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정함)

-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⁶⁷⁾
 - 구매자와 판매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금전, 자산, 노무, 기술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업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사외주식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 및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 제3자에 의해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결권이 있는 사외주식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각 5% 이상 소유 또는 관리되거나 소지되는 경우

66)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7>, 검색일자: 2022. 10. 30.

67)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7>, 검색일자: 2022. 10. 30.

-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동일한 제3자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거래가격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방법

-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어 일본으로 수출한 날 또는 이에 근접하는 날에 수출된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따라 과세가격이 된 것에 한함)이 있을 때는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함⁶⁸⁾
 - 거래가격의 쌍방이 있을 시 동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으로 함
 - 수출의 일은 원칙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입물품을 일본을 향해 선박 등에 적재하거나 일본에 공급한 날을 의미하며, 근접하는 날은 일반적으로 수출한 날의 전후 한 달을 인정함⁶⁹⁾
 - 단기간에 가격이 변동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일 전후 한 달 이내이더라도 근접하는 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동종물품은 모양, 품질 및 사회적 평가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미함
 - 유사물품은 수입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으나 동일한 기능을 가지며, 상업적으로 대체 될 수 있는 유사한 모양과 재료의 물품을 의미함
- 이 경우 적용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 및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수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 수량

68)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2

69)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7>, 검색일자: 2022. 10. 12.

에 의해야 함⁷⁰⁾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한 거래단계 및 동일한 거래수량에 의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수입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단계 또는 거래 수량의 차이 및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 가격 차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후의 거래가격으로 함
-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시에 존재할 시 동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우선함⁷¹⁾
 - 수입물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동종물품에 대한 거래 가격과 다른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동종물품에 대한 거래 가격이 동시에 존재할 시 수입물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동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우선함(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상위의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경쟁하는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두개 이상 있을 시 해당 거래가격 중 가장 작은 가격을 우선함

나. 국내 판매 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⁷²⁾

- 국내 판매 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수입물품과 관련된 수입신고일 또는 이에 근접하는 기간 내에 국내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구매자에게 국내에서 판매된 그 수입물품 또는 그 수입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물품과 관련된 국내 판매 가격에서 소정의 비용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임⁷³⁾
 - 수입신고일에 근접한 기간은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속하는 날에 근접한 날로서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속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장 빠른 날을 말하며, 가장 빠른 날이라 함은 단위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물품 등이 충분한 물

70)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2

71)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7>, 검색일자: 2022. 10. 12.

72)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2

73)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3

량으로 판매된 날을 의미함

- 국내 판매 가격은 국내 최초 거래단계에서의 판매와 관련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가격을 의미하며, 국내 판매가 여러 번 이루어지고 그 단가가 다를 때는 단가별 판매와 관련된 수량이 최대인 판매와 관련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함
 - 원칙적으로 과세물건 확정 시의 성질 및 형상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된 물품과 관련된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계산하나 해당 물품이 없을 시 과세물건 확정일 이후에 가공되어 국내에서 판매된 상기 물품과 관련된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계산할 수 있음⁷⁴⁾
-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 또는 그 수입물품의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과 관련된 국내 판매 가격이 동시에 있을 시 과세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국내 판매 가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있을 시 그 국내 판매 가격을 사용함
 -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없을 시 동종물품과 관련된 국내 판매 가격을 사용함
 -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 및 동종물품과 관련된 국내 판매 가격이 없을 시 유사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사용함
 - 해당 물품의 수입자가 수입한 동종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과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동종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있을 시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수입한 동종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사용함(유사물품과 관련된 국내 판매 가격 또한 동일함)

다. 제조원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조원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수입물품의 제조원가에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일본으로 수출을 위한 통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임⁷⁵⁾

74)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7>, 검색일자: 2022. 10. 12.

- 수입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와 수입물품의 생산자 사이의 거래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이 일본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으며, 수입자가 요청할 시 국내 판매 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제조원가는 수입물품의 생산지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산정됨⁷⁶⁾
 - 이윤 및 일반경비는 생산자의 자료에 의거하여 계산하나 자료가 동류의 물품과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과 괴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⁷⁷⁾
- 수입물품의 용기 및 포장비용과 구매자에 의해 무상제공 등 된 물품 및 용역비용을 포함함(또한 일본에서 개발된 용역비용이라도 생산자가 부담한 경우는 그 부담한 금액을 포함함)

라. 합리적인 조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계산함
- 수입물품의 원산지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유사물품에 관한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속하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국내 판매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계산이 어려울 경우 WTO 협정의 관세평가규정에 부합하는 세관당국이 고안한 합리적인 방법(일본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계산)

75)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3 제2항

76)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7>, 검색일자: 2022. 10. 12.

77)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7>, 검색일자: 2022. 10. 12.

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 수입물품 또는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일본에서 생산된 물품을 제외)의 국내 최초 거래단계 이외의 판매와 관련된 가격에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일본 도착 후 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가격에 의한 방법
 - 수입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제시세 가격에 통상 필요한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의 금액을 더한 가격에 의한 방법
 - 수입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시장가격에서 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공과금을 공제한 가격에 의한 방법
- 세관당국이 고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시 WTO 평가협약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방법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은 과세가격 결정 시 사용이 불가능함⁷⁸⁾
- 일본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
 - 두 가지 특정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가격
 - 수출국의 국내 판매 가격
 - 동종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서 제5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 일본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 최저과세기준가격
 - 자의적 또는 가상의 가격

마.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특정한 항공운송물품, 개인용 물품 등의 특수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대신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78)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yougoshu.htm#0237>, 검색일자: 2022. 10. 12.

1) 변질 또는 손상에 따른 수입물품

- 당해 물품에 수입신고 시까지 수입물품에 변질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변질 또는 손상이 없었던 경우의 과세가격에서 그 변질 또는 손상에 따른 감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⁷⁹⁾

2) 항공운송물품

-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은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따라 계산하지만 항공운송물품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가 아닌 일반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⁸⁰⁾
 - 무상 견본(항공기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의 과세가격이 소액인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 또는 재난 구조, 공중위생유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목적을 위하여 긴급하게 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등

3) 개인용 물품

- 해당 수입물품이 일본에 입국하는 자에 의하여 휴대하여 수입되는 물품이거나 그 밖에 수입거래가 소매거래단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해당 물품 수입자의 개인적인 사용에 제공된다고 인정되는 것일 때 과세가격은 통상적인 도매거래 단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정함⁸¹⁾
 - 해당 수입물품이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게 기증되는 물품으로 해당 기증받는 자의 개인적인 사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도 동일함

79)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5

80)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6 제1항

81)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의6 제2항

Ⅲ.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근거한 방법 관련 사례

- 결정사례는 「관세정률법」상 내용의 구성 순서 및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의 관세평가 사례 분류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으며, 용어는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및 규정상의 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해당 사례에 대한 원문은 일본관세국 홈페이지⁸²⁾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수입거래의 인정 관련 사례

가. 자국 거주자와의 거래에 따른 수입

1)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일본 소재의 A사와의 FOB 조건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E국 소재의 A사의 공장에서 제조된 밸브를 A사로부터 구매함
- 수입물품은 당사가 준비한 선박으로 A사 공장에서 업체 앞으로 직접 운송되며 수입물품의 구매주문서는 A사에서 당사 앞으로 발행되며 당사와 A사 사이에 특수관계는 없음

82)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hyoka.htm>, 검색일자 2022. 11. 2.

2) 결정내용

- 일본에 거점을 둔 법인인 업체가 수입물품의 일본 반입을 목적으로 A사(매도자)와 거래하여 물품이 실제로 일본에 도착했기 때문에 수입거래로 인정할 수 있음
- 수입거래는 일본에 거점(주소, 거소, 본점, 지점, 사무소, 사업장,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둔 자가 판매자와의 매매에 따라 실제 해당 물품이 일본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함

나. 역위탁가공무역에 따른 수입

1)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A사와 체결한 역위탁가공 계약에 따라 수입화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원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공임금을 A사에 지불하며 A사와의 특수관계는 없음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산정 시 해당 업체와 A사 간의 역위탁가공무역 거래가 수입거래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함

2) 결정내용

- 일본에 있는 자(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된 원료 또는 재료를 외국에서 가공 또는 조립(가공 등)하고, 위탁자가 그 가공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품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임
- 해당 거래로 그 제품이 일본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수입거래로, 위탁자를 매수자로, 수탁자를 매도자로, 그 가공 등의 대가로 실제 지급되거나 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으로 간주하여 수입된 것으로 봄

- 해당 업체에서 A사에 무상 제공되는 원재료 등은 「관세정률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과세가격을 산정함

다. 보세창고 보관 중 재판매

1)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일본 소재의 B사로부터 보세창고 보관 중인 냉동 새우를 수입하며, 해당 물품은 B사가 E국 소재 A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해 일본에 반입됨
- E국가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수량, 가격, 납기일, 지정항구 등의 구체적 사항은 B사와 A사 간의 매매계약에 따르며 일본에 물품 도착 후 B사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하에 지정 보세지역 내의 창고에 보관됨

2) 결정내용

- 위 거래에서 B사와 A사의 매매는 실제 물품이 일본에 도착하는 것이므로 수입거래에 해당하나, 해당 업체와 B사와의 매매는 물품 도착 후의 국내거래로서 수입거래로 볼 수 없음

라. 특수관계자와의 도매거래

1)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에 있는 E국 소재의 A사와의 도매계약에 의해, 같은 E국 소재의 제조자로부터 A사가 구입한 식품을 수입하며 식품은 A사의 창고에서 보관되

고 해당 업체의 출하 의뢰에 의해 일본으로 선적됨

- 해당 업체는 도매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도매계약의 수탁자로서 국내 사용자에게 판매하지만 물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A사에서 직접 국내 사용자에게 이전함
- 국내 이용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당사의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A사에 송금함

2) 결정내용

- 수입물품은 도매계약에 따라 실제 일본 내로 반입되지만 도매계약 자체는 물품을 일본에 도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 이외의 내용이므로 수입거래로 볼 수 없음

2. 실제지급가격 관련 사례

가. 실제지급가격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수입품에 대한 검사 비용

가) 거래개요

- 일본 소재 수입자이자 구매자인 A사는 E국 소재 수출자이자 판매자인 B사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CFR 조건으로 신선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A사와 B사 사이에 특수관계는 없음
-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존 시 이산화황이 사용되므로 그 잔류량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임을 검사하고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해당 검사에 대해 기본 매매계약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매매에 대해 필

요한 조건은 매번 체결되는 개별 계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송부하는 주문서가 이것에 해당함

- 판매자는 구매자의 연락을 바탕으로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검사절차를 밟고 메일로 검사결과를 송부하며 판매자는 해당 검사대행비용을 물품대금과 별도로 구매자에게 청구함
 - 판매자는 해당 검사가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수출국 검사 후 수입물품을 선적하여 수출하지만 수출국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선적하여 수출함
 - 또한 수출국에서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일본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므로 일본 도착 후 수입신고 전까지 검사를 실시함
 - 이산화황의 값이 기준치를 넘은 적이 없으며, 만일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수입물품의 폐기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전액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결정내용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를 하기 위해 지급된 비용이며 구매자에게 필요한 비용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과세가격에 산정됨
 - 해당 검사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검사기관에서 판매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의 순으로 청구되며, 구매자는 이를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2) 구매자의 물품 재료 검사에 소요된 비용(판매자 실시)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스웨터를 수입하며 물품은 판매자의 공장에서 생산되지만 재료인 털실은 판매자가 수출국의 제조업체 A사로부터 구입한 것이 사용됨

- 판매자로부터 털실 검사를 해당 업체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해당 업체는 이전에 검사를 의뢰한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털실 검사를 판매자를 대신하여 의뢰하기로 하고, 검사기관에 털실 샘플을 송부하도록 판매자에게 지시함
- 판매자가 털실을 구입할 시 계약에서 정하는 품질 및 강도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며 해당 업체는 판매자에 해당 검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는 직접 판매자에게 보고되지만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서 해당 업체로 청구되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 시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함

나) 결정내용

- 상기 거래에서 검사기관에 의한 털실 검사는 해당 업체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판매자가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검사를 판매자를 대신하여 의뢰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따라서 상기 털실 검사 비용은 수입물품에 대해 판매자를 위해 지급되는 것(판매자에게 간접 지급)으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포함됨

3) 수입물품의 최종 함유량을 결정하는 분석비용

가) 거래개요

- 수입업체는 판매자인 X국 소재 S사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라 귀금속 부스러기를 CFR 조건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에는 물품을 수입한 후 분석결과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자 간에 특수관계는 없음

-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시 귀금속 함량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수출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입허가 선인수 신청 후 분석결과에 따른 최종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를 받음
 - 견적서 가격은 수출자가 과거에 견적한 귀금속 함유량을 기본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물품대금 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선지급액과 최종 송장 가격의 차액을 지급함

- 제3자인 분석기관의 분석비용은 매매계약에 따라 결제가격에서 공제되며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나) 결정내용

- 분석을 실시할 경우 수입자가 해당 분석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최종 분석치를 근거로 수출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송장에 분석비용으로 기재되고, 해당 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함
 - 분석기관에 의한 분석과 관련된 비용에 관해 최종 분석치와 괴리된 분석결과를 제시한 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최종 분석치가 양측 분석결과와 중간 값이면 수입자 및 수출자 양측이 절반으로 부담한다고 매매계약을 작성함

- 수입거래에서 수입물품의 매매가는 해당 수입물품에 포함되는 귀금속의 함유량에 기초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함유량은 상기의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을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합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지 않으면 수입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됨
 -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는 최종 분석치와 양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비용의 부담자를 정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수입자가 부담한 비용 중 매매계약상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수입자가 수출자를 위해 지급한 가격으로 인정됨

- 본 사안에서 수입자가 제3자 분석기관에 지급하는 분석비용 중 매매계약상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포함되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됨

4)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일본에 파견된 직원과 관련된 비용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전자 부품을 수입하며 물품은 판매자의 공장에서 생산되나 판매자와의 약정으로 물품 생산과 관련된 직원 1명을 파견하였음
 - 판매자는 해당 업체에 사원의 도항비 및 체재비를 지급하나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구매주문서 가격)과는 별도로, 해당 업체는 사원의 일당을 부담하고 있음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해당 업체가 부담하는 직원의 일당을 현실지급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함

나) 결정내용

- 기술자의 파견비용은 수입물품 판매자에 대한 간접 지급금액으로 인정되며,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포함됨
 - 해당 업체가 부담하는 기술자의 파견비용(임금, 도항비 및 체류비)은 수입물품의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관련된 비용으로 본래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수입물품의 생산비의 일부에 포함됨

5) 수입물품 제조를 위해 파견한 기술자의 국제관광여객세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E국에 소재하는 판매자로부터 연어알을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기술자를 파견해 수입물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파견비용(임금, 도항비 및 체재비)을 부담하고 있음
- 해당 업체가 지급하는 도항비에는 국제관광여객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함

나) 결정내용

- 해당 업체가 파견하는 기술자가 수입물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관련된 비용은 판매자를 위해 이루어진 간접지급에 해당하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 따라서 해당 업체가 부담하는 기술자의 파견비용(임금, 도항비 및 체류비) 및 도항비에 포함되는 국제관광여객세 또한 실제지급가격의 현실지급가격의 일부에 포함됨

6) 판매자에 지급하는 수입물품 조작과 관련된 연수비용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기계를 수입하며 매매계약을 통해 수입물품의 조작 방법과 관련된 연수비용을 실제로 연수를 수강하는지에 관계없이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연수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함
- 연수는 물품 수입에 앞서, 수출국인 E국의 판매자의 사내에서 실시됨

나) 결정내용

-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 지급하는 연수비용은 수입물품과 매매계약에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수입거래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포함됨

7) 구매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자의 채무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스웨터를 수입하며 약정에 따라 판매자가 A사에 대해 지는 채무를 판매자를 대신해 A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 따라서 판매자로부터 해당 업체로 송부되는 구매주문서에는 A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가격을 현실지급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나) 결정내용

- 해당 업체가 A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에서 공제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포함되어, 구매주문서 가격을 현실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음

8) 수입거래와 관련된 가격조정 조항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조정

가) 거래개요

- 수입업체는 E국 소재의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해 식료

품을 수입하며, 해당 매매계약에서는 수입물품 가격은 수입 후의 판매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재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음

- 해당 업체가 일본 세무당국에 이전가격사전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 후 일본과 E국의 세무당국 간의 확인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전 사업연도에 해당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일정범위를 벗어난 경우 실적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자와 수출자 간에 수입물품의 매매가격 재검토에 따른 조정금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임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당사가 판매자에게 조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가 판매자로부터 조정액을 받는 경우 모두 해당 조정 후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함
-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구매주문서, 당사와 판매자 간의 왕복문서 등의 관계서류, 조정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서류에 의해 해당 조정금액과 수입물품의 대응관계가 증명 가능함

나) 결정내용

- 수입거래를 위한 실제지급가격은 조정 후의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조정금액은 수입거래의 가격조정 조항의 적용에 따른 수입물품과 관련된 가격의 조정으로 조정금액이 해당 업체와 판매자 간 지급된다는 것과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조정금액과 수입물품의 대응관계가 증명 가능함
- 수입물품의 구매주문서 가격 지급 후에 해당 업체에서 판매자에게 조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구매주문서 가격에 해당 조정금액을 더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임
 - 해당 업체가 판매자로부터 조정금액을 받는 경우는 구매주문서 가격에서 해당 조정금액을 공제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임

9)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의류를 구입(수입)하고 있으며, 엔화로 수입물품의 매매 가격을 정하지만 계약 체결 시와 발주 시의 환율(엔/E국 통화)이 일정 이상 변동 되면 당초의 매매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 가격을 지급함
- 해당 건의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매수자에게 송부된 구매주문서에는 당초 조정한 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음

나) 결정내용

- 이 경우 귀사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매매계약에 따라 거래를 위해 판매자에게 지급 하는 총액은 당초 매매가격이 아니라 해당 매매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조정 한 가격으로 실제지급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10) 수입 후 가격이 조정되는 물품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전선을 수입하며 수입물품의 원재료인 구리의 가격은 시세에 따라 변동하므로 매매계약의 가격조정 조항에 근거하여 수입신고 시점에 판매자로부터 송부된 구매주문서에 표시된 가금액을 지급함
- 최종 매매가격은 국내 판매 시점의 구리 시세에 따라 결정되고 가금액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차액을 판매자에게 별도 지급하며 과불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이 판매자로부터 환급될 시 구매주문서 가격의 실제지급가격 적용에 대해 문의함

나) 결정내용

- 해당 물품의 수입거래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총액은 구매주문서 가격이 아니라 조정 후의 가격이므로 구매주문서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음

11)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비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열쇠고리를 수입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할 금형의 제작비를 구매주문서 가격과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형 제작의 실제 지급가격 포함 유무에 대해 문의하였음

나) 결정내용

-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의 제작비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의 비용으로 수입거래를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포함됨
- 수입물품의 구매주문서가 수입거래와 관련된 가격 등의 조건을 정당하게 표시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실제지급가격을 인정하게 되나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그 수입물품의 수입거래를 위해 구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어떠한 지급이 있는 경우 실제 지급가격은 구매주문서에 그 지급가격을 더한 금액임

12)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의 수리비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플라스틱 완구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할 금형을 수출국의 금형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했으나 당사의 지정 규격과는 다른 규격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음
- 판매자는 해당 업체의 지정 규격에 금형을 맞추기 위해 금형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함
- 해당 업체는 수리한 금형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을 판매자로부터 수입하지만 수입물품의 대금과 별도로 그 수리비용을 판매자로부터 청구받아 지급하였으며 해당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음

나) 결정내용

-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의 수리비용은 귀사와 판매자의 합의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기타 사정으로 보아 수입거래를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포함됨

13) 수입자로부터 최종사용자에게 재판매되는 비용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열쇠고리를 수입하며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할 금형을 판매자가 제작하는 것과 이 비용을 해당 업체가 수입물품의 구매주문서 가격과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 및 지급함

- 해당 업체는 금형을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한 채 자사의 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최종사용자에게 되팔았으며 최종사용자는 이 금형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을 시 과세가격 산정에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의 비용 또는 최종사용자가 해당 업체에 지급하는 금형의 비용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함

나) 결정내용

-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의 비용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그 수입물품의 수입거래를 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포함됨
 - 금형은 해당 업체에서 최종사용자에게 전매되어 최종사용자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가격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최종사용자가 해당 업체에 지급하는 금형의 비용이 아닌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금형의 비용을 적용함

14) 판매자에게 선불하는 수입물품 재료의 재배비용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식료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식료품은 무농약으로 재배된 채소만을 재료로 생산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라 판매자에게 그 채소와 관련된 재배비용을 선불하고 있음
 - 판매자가 송부하는 수입물품의 구매주문서 가격에, 해당 재배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재배비용의 실제지급가격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함

나) 결정내용

- 채소의 재배비용은 수입물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채소의 비용으로, 수입물품의 매매 계약에 관련된 거래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수입거래를 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15) 판매자가 부담하는 컨테이너 내부에 붙이는 비닐 시트에 필요한 비용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CIF 조건으로 콩을 수입하며 물품을 컨테이너로 운송함에 있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내부의 바닥이나 측면에 비닐 시트를 붙일 것을 판매자에 요청하였음
- 비닐 시트 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해당 업체가 판매자로부터 그 비용을 별도로 받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 된 것으로 취급해도 되는지 문의함

나) 결정내용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해당 운송에 관련된 비용은 구매자에 의해 부담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실제지급 가격에 가산함
- 비닐 시트의 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기타 해당 운송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만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CIF 조건으로 수입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해당 업체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16) 수입물품과 관련된 보증 비용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정밀 기계를 수입하며 매매계약에서 판매자가 당사에 대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보증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게 보증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판매자로부터 해당 업체에 송부된 수입물품의 구매주문서에는 물품대금 외에 보증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업체는 그 합계액인 구매주문서 가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보증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문의함

나) 결정내용

-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입물품의 보증비용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 상황 및 기타 사정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수입거래를 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17) 수출국 창고회사에 지급하는 수입물품의 자재보관료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며 물품 생산에 사용할 재료(원단)를 조달해 수출국 소재 창고회사 A의 창고에서 보관함
-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구매주문서 가격은 별도로 보관료를 창고회사 A에 지급하며 과세가격 산정 시 창고회사 A에 지급하는 보관료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나) 결정내용

- 해당 업체가 수출국의 창고회사 A에 지급하는 보관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수입거래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포함됨

18) 판매자에 지급하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다수의 비용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매장용 상품 디스플레이를 수입하며 이는 국내 매장용으로 특별히 주문한 것이므로 판매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의 구매주문서 가격과는 별도로 관련 비용을 판매자로부터 청구받아 지급해야 함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다음의 관련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 ① 판매자가 작성한 수입물품의 디자인, 도면비용, ② 물품 수출 전에 수출국에서 판매자가 실시하는 제품의 최종 체크 및 포장비용, 운송업자에 대한 인도비용, ③ 수입 후에 판매자가 일본에서 실시하는 수입물품의 설치비용 등을 지급해야 함

나) 결정내용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날 이후에 행해지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설치, 조립, 정비 또는 기술교육 등 비용에 대해 금액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① 판매자가 작성한 수입물품의 디자인, 도면비용, ② 물품 수출 전에 수출국에서 판매자가 실시하는 제품의 최종 체크 및 포장비용, 운송업자에 대한 인도비

용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기타 사정으로 보아 수입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 ③ 수입 후에 판매자가 일본에서 실시하는 수입물품의 설치비용 등은 수입거래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지만,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입물품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19) 포장에 사용된 판지 인쇄비용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하며 물품 비용 외에도 판매자가 당사에 보낸 구매주문서에는 판매자가 수출국에서 조달하는 물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판지의 인쇄비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사본 자체는 수입되지 않음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판지의 인쇄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나) 거래개요

-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인쇄비는 수입물품을 포장하는 골판지 인쇄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기타 사정으로 보아 수입거래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20) 수출국 통관비용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며 판매자로부터 송부된 수입물품의 구매

주문서에는 물품대금 외 그 수입물품의 수출 시 납부된 세관 수속 비용이 기재되어
합계액인 구매주문서 가격을 판매자에게 지급함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 시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출국의 세관 수속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문의하였음

나) 결정내용

-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출국의 세관 수속 비용은 수입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기타 사정으로 보아 수입거래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나. 상쇄 비용

1)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 상쇄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플라스틱 잡화를 수입하며 최근 수입한 물품 일부에 불량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청구하여 다음번 판매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의 매매가격에서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쇄하기로 판매자와 합의하였으며 해당 내역에 대한 구매주문서 가격은 상쇄 후의 가격이 됨

나) 결정내용

- 수입할 물품의 대금(매매계약가격)의 일부와 상쇄되는 불량품과 관련된 손해 청구액

은 다음번에 수입할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음

-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입물품의 가격과 상쇄하기 위해 그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구매주문서 가격으로 했을 경우의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주문서 가격에 상쇄되는 금액을 더한 금액임

2) 수입 후 국내 운송비용과 물품대금과의 상쇄

가) 거래개요

- 수입물품인 모터보트는 당초 일본의 A항으로 운송될 예정이었으나 판매자의 배송 실수로 인해 일본의 B항으로 잘못 운송되어 해당 업체는 B항에서 수입물품의 수입 허가를 받은 후 그 물품을 A항까지 운송하고 그 비용을 운송회사에 지급하였음
- 해당 업체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당사가 지급한 B항에서 A항까지의 운송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매매가격에서 공제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 해당 업체는 운송비용을 공제한 후의 가격이 기재된 새로운 구매주문서를 판매자로부터 받았음

나) 결정내용

- B항에서 A항까지의 운송비용을 공제한 후의 가격은 판매자가 해당 업체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매매계약가격)의 일부와 상쇄한 후의 가격으로 인정됨
 - 상쇄한 금액은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게 가지는 채권(B항에서 A항까지의 운송비용과 관련된 채권)에 의해 실제 지급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3) 대리점 수수료와 물품대금과의 상쇄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광물을 수입하며 또한 판매자와의 판매 대리점 계약에 근거해, 판매자의 대리인으로서 일본 내 물품 판매 촉진을 지원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
- 해당 업체는 매매가격에서 판매 대리점 계약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음
 - 덧붙여 판매자가 송부하는 구매주문서에는 수입물품의 매매가격 및 수수료 금액이 기재되어 총액란에 수수료를 공제한 가격이 기재됨

나) 결정내용

- 물품대금의 일부와 상쇄된 수수료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음
- 상쇄한 금액은 해당 업체가 판매자에게 가지는 채권(판매 대리점 업무의 대가로서의 수수료)에 의해 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해야 함
 - 물품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가격은 판매자가 해당 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의 일부와 상쇄한 후의 가격으로 인정됨

다. 할인 적용

1) 최초 구매에 대한 할인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며 상품의 최초 구매 시 5% 할인을 적용받기로 함
- 이번 수입물품은 당사가 처음 구입하는 상품이므로 매매계약에서 판매자로부터 5% 할인을 받은 금액(구매주문서)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해당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함

나) 결정내용

- 해당 업체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 실제 지급하는 총액은 할인 후의 가격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실제지급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음

2) 물품대금 선지급에 따른 할인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신발을 수입하며 판매자와의 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을 전액 선결제할 시 매매가격에서 5%의 할인을 적용하기로 함
- 해당 업체는 할인 후 금액을 판매자에게 선불했으며 판매자는 해당 업체에 할인 후 가격이 표시된 구매주문서를 송부하였음

나) 결정내용

- 할인된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체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참고하여 수입거래를 위해 현실적으로 지급한 총액은 할인 후의 가격이라고 인정되어 실제지급가격으로 봄

3) 특정 수량 이상 구매에 따른 할인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정밀 기계를 수입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에서 100대를 초과하여 구매할 시 10%(최대 50%)의 할인이 약정됨
- 100대의 정밀 기계를 수입할 시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해당 매매가격에서 10%의 할인이 적용되어 해당 업체는 할인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음

나) 결정내용

- 할인 후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그 수입물품의 수입거래를 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 총액이 할인 후의 가격이라고 인정됨

라. 실제지급가격 제외 비용

1) 판매자에게 지급된 수입통관 수수료

가) 거래개요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구매자는 일본에서의 수입 통관비용과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 비용을 포함한 총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함
- 이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입관세와 국내 운송비에 대해 수입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함

나) 결정내용

- 위 거래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비용은 수입항 도착 후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으로 인식되며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음
 -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간접 지급을 포함하여 수입상품의 수입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판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의미함

2) 구매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수입품 광고와 관련된 비용

가) 거래개요

- 당사는 초콜릿 수입자로 초콜릿의 일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광고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경우 광고·선전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문의함

나) 결정내용

- 위 거래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광고·선전비는 구매자가 자신을 위해 실시하는 수입물품의 일본 판매촉진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며 수입물품에 대해 판매자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음
- 실제지급가격이란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그 수입물품의 수입거래를 하기 위해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총액을 말하며, 판매자의 채무변제 등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함

3. 가산요소 관련 사례

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

1) 해운회사에 지급된 추가 요금

가) 거래개요

- 판매자로부터 FOB 조건으로 목재를 수입한 구매자가 운송에 따른 할증요금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 할증요금은 수입물품을 일본으로 운송하기 위해 운송사와 운송계약에 근거해, 유류할증료(FAF) 및 엔고손실보충요금(YAS)의 비용을 해상 운임과는 별도로 청구한 것을 말함

나) 결정내용

- 당사가 선사에 지급한 할증요금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선사에 지급하는 연료비 등의 할증료로 운송계약에 따라 그 운송의 대가로 선사에 지급되므로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에 해당하므로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함⁸³⁾

2) 정산으로 인한 차액이 지급되는 경우 운임

가) 거래개요

- 판매자로부터 FOB 조건으로 야채를 수입한 구매자가 운임 잠정액의 차액을 선사에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선사에 지급한 정산액과 잠정액과의 차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 당사는 선사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전년의 운송 실적에 따라 산출한 운임의 잠정액을 선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후일 실제 정산액이 산출되어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함
 - 이번 연료 가격의 급등으로 정산액이 잠정액을 웃돌게 되어 당사는 그 차액을 선사에 지급함

나) 결정내용

- 당사가 선사에 지급한 정산액과 잠정액과의 차액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에 해당하여 현실지급가격에 가산함
 - 위 거래에서는 정산액이 운송계약에 따라 그 운송의 대가로 선사에 최종적으로

83)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이란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운송비용을 말하며, 수입물품이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의 대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 등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임

지급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귀사가 선사에 지급한 정산액과 잠정액과의 차액은 현실지급가격에 가산됨

3) 수입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가) 거래개요

- 당사는 판매자로부터 CFR 조건으로 중고 의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통상적인 보험료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나) 결정내용

- 당사의 수입물품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필요한 보험료 금액을 견적하여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필요는 없음

4) 구매자가 부담하는 노후화 선박에 대한 보험료 할증료

가) 거래개요

- 판매자가 수배한 노령선에 의해 수입물품이 운송되었기 때문에 수입자가 보험사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료에 할증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 판매자로부터 CFR 조건으로 화학품을 수입하는 구매자는 수입물품의 운송에 관해 해상 보험을 부보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함

나) 결정내용

- 수입자는 보험회사에 대해 당초 계약한 수입물품의 운송에 관한 보험료에 노령선

할증요금을 포함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노령선 할증요금을 포함한 보험료의 총액이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송에 관하여 실제로 소요된 보험료라고 인정되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보험료란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송에 관하여 실제로 소요된 보험료임

나. 증개료 등의 수수료

1) 수입통관 관련 서류작성 수수료

가) 거래개요

- 의류를 수입하는 당사가 수입신고 시 서류 작성을 일본 소재의 A사에 의뢰하고 있으며 통관서류 관련 수수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나) 결정내용

- A사는 수입통관 관계서류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수입물품의 수입거래 판매자와의 협상 등 수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가 A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증개료 기타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음
- 증개료 기타 수수료란 수입거래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임
- 따라서 위 거래에서 귀사가 A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증개료 기타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음

2) 중개회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가) 거래개요

- 잡화를 수입하는 당사는 수주, 발주, 협상 등의 중개 업무를 하는 A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 당사는 당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수주, 발주, 협상 등 수입거래의 성립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는 A중개사에 대해 그 업무의 대가로 구매주문서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함

나) 결정내용

- 상기의 거래에서는 A사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한 수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A사에 대해서 당사가 지급한 수수료는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중개료 기타 수수료로 인정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 가산요소 중 중개료 등 기타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 중개료 등 기타 수수료는 수입거래에 대한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임

3) 일본에 위치한 판매자 지점에 지급되는 수수료

가) 거래개요

- 당사는 물품의 발주, 판매업무 등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수출자의 일본 지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 당사는 수입물품의 발주, 판매업무 등 수입 거래에 필요한 사업행위를 일본 지점인 A지점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매주문서 가격의 2%의 수수료를 A 지점에 지급함

나) 결정내용

- 지점에 대한 지급 수수료는 해당 판매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실시하는 자에게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 따라서 A지점은 판매자를 대신하여 수입물품의 판매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A지점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관한 증개료 기타 수수료로 인정됨

다. 수입물품의 포장에 필요한 비용

1) 수출국에서 수입품을 포장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가) 거래개요

- 미술품을 수입하는 구매자가 포장작업과 관련된 인건비와 포장자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과세가격 산정 시 인건비와 자재비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 일본 소재 운송회사에 포장작업과 관련된 인건비를 A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미술 포장에 사용하는 포장자재는 B사를 통해 구입함

나) 결정내용

- 수입거래에 관해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물품의 포장에 필요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포장에 필요한 비용에는 재료비 외에 인건비 기타 비용이 포함됨
- 당사가 수입물품의 포장작업과 관련된 인건비 및 포장자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포장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함

- 따라서 당사가 A사에 지급하는 포장작업과 관련된 인건비 및 B사에 지급하는 포장자재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포장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2) 수출국에서 수입품을 분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가) 거래개요

- 작업장 인도조건(EXW)으로 의류를 수입하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분류와 포장을 수출국 소재의 A사에 위탁하는 경우 A사에 지급하는 분류·포장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⁸⁴⁾
- 당사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포장업자 A사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해 판매자의 공장 내에 있어서의 수입물품의 분류·포장(국내 판매처별 수입물품의 구분·포장)을 A사에 위탁해 분류·포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

나) 결정내용

- 수입물품의 포장에 필요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장에 필요한 비용에는 포장에 관한 재료비나 포장작업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된 인건비 등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포함됨
- 따라서 이 거래에서 당사는 수입물품의 분류·포장과 관련된 업무의 대가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포장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함

84) EXW는 작업장 인도조건으로 판매자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조건임

3) 수입물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건조제 비용

가) 거래개요

- 카펫을 수입하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건조제를 제공하는 경우 건조제의 대금과 관련 운송비 및 수출 제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지 문의함
- 당사는 수입물품의 운송 도상의 습기에 의한 품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할 때 사용하는 건조제를 일본 소재의 A사로부터 구입해 운송비·수출 제비용을 부담하고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함

나) 결정내용

- 구매자가 부담한 건조제의 대금은 수입물품의 포장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 건조제를 판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매자가 부담한 운송비용 및 수출 제비용도 포장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함
- 따라서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건조제의 대금과 그 운송비·수출 제비용의 금액은 수입물품의 포장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라. 무상제공

1) 수입 선적 라벨의 비용(법률상 의무사항인 경우)

가) 거래개요

- 와인을 수입하는 구매자가 와인병에 부착하는 표시 라벨을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한 표시 라벨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 그 표시 라벨에는 「식품위생법」 또는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소재지 등)만이 기재됨

나) 결정내용

-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는 수입물품에 붙은 상표 라벨, 상품 라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표시 라벨과 같이 일본의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만 표시되어 있는 라벨에 대해서는 제외함
-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한 표시 라벨은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표시 라벨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음

2) 수입물품의 예비 부품과 관련된 비용

가) 거래개요

- 기계를 수입하는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예비 부품에 대한 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 당사는 수입물품에 편입하는 부품을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A사로부터 구입하여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생산 도중 그 무상으로 제공한 부품이 파손될 것을 예상하고 예비 부품도 함께 무상으로 제공함

나) 결정내용

-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예비 부품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은 무상으로 제공한 부품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구매자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된 경우 그 물품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3)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장비 비용

가) 거래개요

- 알루미늄 휠을 수입하는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검사기기에 대한 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 수입물품에 불량품이 종종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사가 불량을 감지하는 검사기기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검사에 합격한 것만 수입함

나) 결정내용

-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공구, 거푸집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구매자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된 경우는 그 물품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검사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량 검사는 그 검사에 합격한 물품만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검사기기는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공구 등에 해당함
-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한 검사기기는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공구, 거푸집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며, 그 검사기기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을 실제지급 가격에 가산함

4) 수입물품의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소독제의 비용

가) 거래개요

- 의류를 수입하는 구매자가 원단 소독제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는지 문의함
- 당사는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재료인 원단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함

나) 결정내용

-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물품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 무상으로 제공한 소독용 약제는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약제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마. 로열티 등

1) 특수관계의 상표권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⁸⁵⁾

가) 거래개요

-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입물품의 대금과 별도로 판매자의 모회사인 A사

85)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18, 특수관계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상호 사업상의 감독역 기타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 외에 특수관계의 범위에 규정된 관계를 말함. 감독역 기타 임원이란 감독역, 감사역, 이사, 감사 등을 말함. 법령상 인정된 공동경영자란 각각 금전, 자산, 노무, 기술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일방의 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타방의 자를 구속하거나 또는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당해 일방의 자는 당해 타방의 자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봄. 이 경우 원칙적으로 체결 및 해제가 자유로운 계약에 기초해 민사법상 통상 발행하는 권리의무관계는 포함하지 않고, 일방의 자가 타방의 자의 사업경영의 근간에 대해 구속하거나 또는 지도하는 관계에 한함

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해 수입물품에 부착된 A상표의 사용의 대가로 지급 중인 로열티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 당사는 상표권자인 A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해, A상표의 사용 허락을 받아 A사의 자회사인 판매자로부터 A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수입 중임

나) 결정내용

- 구매자가 A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에 붙어 있는 상표 사용 대가이므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됨
- 또한 그 로열티는 판매자의 모회사인 상표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그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수입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정됨
- 따라서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 사용의 대가로 A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이며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함

2) 상표권 소유자인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가) 거래개요

- 의류를 수입하는 구매자는 A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A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 당사는 상표권자인 판매자와 수입물품의 매매계약 외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물품의 대금과 별도로 수입물품에 부착된 A상표의 사용의 대가로 로열티를 판매자에게 지급함

나) 결정내용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의 사용 대가이므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기타 사정으로 보아 수입거래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 로열티는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이며, 그 지급이 없는 경우에 판매자는 수입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기타 사정으로 보아 수입거래를 위해 구매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함

3) 특허받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재료에 대해 지급되는 로열티

가) 거래개요

- 특허 제조법이 적용된 냉동 채소를 수입하는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대금과 별도로 특허 제조와 관련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을 때 실제지급가격에 특허 로열티를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함
 - 당사는 수입물품의 대금과 별도로 이 특허 제조법(냉동 후 퇴색을 감소시키는 제법)으로 제조된 냉동 채소를 국내 판매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로열티(특허 제조법에 의해 제조된 냉동 채소를 사용한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의 2%)를 판매자에게 지급함
 -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는 특허제법으로 제조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만일 당사가 로열티 지급을 중지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통상적인 제조법으로 제조한 물품을 당사에 판매하도록 계약됨

나) 결정내용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인 냉동 채소의 제조법에 관한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됨
 - 당사가 로열티를 지급함으로써 그 특허제법에 의해 제조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그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그 수입물품의 수입거래를 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귀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 가산할 로열티의 금액은 구입한 냉동 채소가 사용되는 당사의 제품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의 총액임

4. 수입거래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 관련 사례

가. 폐기 또는 사용제한

1) 전시회 시승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

가) 거래개요

- 판매자로부터 스노우모빌 3대를 수입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그중 1대를 쇼룸 전시 시승용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 전시·시승 물품의 과세가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정상 판매 가격의 절반인 실제지급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함
 - 우리는 3대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3대 중 1대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우리 쇼룸에서 전시 시승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1대는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전시 시승용 수입품 월별 사용량을 판매자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시즌이 끝나면 국내 중고품으로 판매할 수 있음

나) 결정내용

- 위 거래에서 수입하는 1회의 전시 시승은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위한 제한물품이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방식을 이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음
 - 원칙적인 방법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법」 제4조의2 유사물품 또는 유사물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함
 - 구매자가 수입한 전시 시승 스노우모빌 1대는 물품 사용제한 대상임

나. 과세가격 결정이 어려운 조건

1) 수입 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조정

가) 거래개요

- 구매자는 수입품 과세가격 산정 시 쌍방 이전가격사전합의(이하 APA)를 통해 7 회계연도에서 발생할 영업이익률이 일정 범위에 들어가도록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조정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으며, 이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APA 관련 조정분을 운임 가격에 가산하면 실제지급가격으로 산정 가능한지 문의함
 - 구매자는 식료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E국의 판매자와의 수입거래에서 쌍방 APA를 신청했으며, 일본 세무당국과 상대국 세무당국 간의 상호합의를 통해 독립기업 간 가격 산정방법을 승인하는 확인 통지를 받았음

- 상품공급계약서에는 거래가격이 APA 관련 가격 조정을 고려한 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조정금은 7 회계연도에 전체 수입품의 특정 비율을 곱하여 분배될 예정임

나) 결정내용

- 상기 거래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APA와 관련된 가격의 조정분을 포함한 가격이 된다는 취지가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금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함
- 그러나 해당 조정금액은 7년 뒤 결정되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어 해당 거래는 수입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 위 거래에는 수입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이 적용되므로 실제지급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입품의 거래가격법을 이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음
 - 수입거래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지급가격에 운임 등의 가산요소를 더한 가격이지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어렵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수입품의 과세가격은 수입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이 아닌 「관세법」 제4조의2의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과 관련된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에 의해 결정됨

IV. 거래가격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사례

1.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관련 사례

가. 대체품으로 수입되는 무상물품

1) 거래개요

- 판매자가 무상으로 발송한 물품의 구매가격을 판매자가 편의를 위해 지난번 수입한 동일 화물의 구매가격의 1/10로 기재한 경우 대체품으로 수입되는 무상화물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함
-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안면 마스크를 수입하였으나, 수입 후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자와 협의하여 화물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대안으로 다음 주에 폐기된 화물과 동일한 화물을 무상으로 발송함

2) 결정내용

- 위 거래에서 구매자가 수입하는 대체품은 무상화물로 수입거래에 의하지 않는 수입화물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따른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정률법」 제4조의2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과 관련된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함
- 수입거래에 의해 수입되는 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지급가격에 운임

등(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이 되지만, 수입거래란 일본에 거점(주소, 거소, 본점, 지점, 사무소, 사업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가진 자가 구매자로서 화물을 일본에 도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매도인 간에 행한 매매로, 현실적으로 해당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게 된 것을 말함

- 또한 위 거래의 대체품은 전회 수입한 화물과 동종의 화물로 전회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이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된 것이라면 그 전회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함

나. 동종물품이 인상될 경우 무상물품

1) 거래개요

- 동종물품의 가격이 인상된 경우 그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물품에 대해서도 동종물품의 인상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함
 - 이전 수입물품에는 가격인상의 대상이 된 물품 외에 전전회 수입한 것과 같은 기종의 기계 대체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대체품은 무상물품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없는 물품이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과 관련된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에 의해 이번에 가격인상의 대상이 된 기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2) 결정내용

- 위의 거래에서 가격 인상 후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이 되고, 동종물품의 가격 인상 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던 물품에 대해서도 가격 인상 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게 되므로, 그 가격 인상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음

-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과 관련된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이란 수입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과 관련된 거래가격을 그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으로 함
 - 수입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과 관련된 거래가격이란 그 수입물품의 일본 수출일 또는 이에 근접하는 날에 일본에 수출된 것으로, 그 수입화물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

- 따라서 위 거래에서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은 인상 전의 당초 가격이 아니라 인상 후의 가격이므로 다른 동종의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상물품인 대체품의 과세가격은 그 인상 후의 거래가격이 됨

다.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품질이 다른 경우

1) 거래내용

-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E국 소재의 A사로부터, 일본에서 생산하는 목재에만 사용 가능한 접착제를 수입함

- 최근 전액 출자 자회사인 E국 소재의 B사로부터 일본에서 생산하는 목재와 금속에 사용 가능한 접착제를 수입하게 되었으며, A사의 목재에만 사용 가능한 접착제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고자 함
 - 해당 업체가 자회사 B사로부터 수입하는 접착제의 매매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음

2) 결정내용

- B사로부터 수입하는 목재와 금속에 사용 가능한 품질의 접착제와 A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목재에 사용 가능한 품질의 접착제는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

되지 않아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음

- 두 제품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상업적 교환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서로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산정 및 역산 가격 관련 사례

가. 국내 판매 가격의 적용

1) 거래내용

- 일본 소재 수입자인 A사는 T국 소재 통관업자·창고업자인 수출자 B사로부터 가구를 수입하며 수입자는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음
- C사는 일본 소재의 D사에 대해, 연간 월별 구입 예정 수량, 품번 및 구입 희망 단가가 기재된 연간 구매계획을 제시하고 D사는 이에 근거해, X국 소재의 공급자 E사와 매매 계획을 체결함
 - 수입자, C사, D사 및 E사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음
- A사는 C의 연간 구매계획에 기재된 물품을 다음 달 20일에 C사에 납품하며 연간 구매계획에 근거해 D사가 E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A사는 D사와 매번 매매계약을 체결해, T국에 있는 수출자의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구매하며 이 시점에서 물품은 D사로부터 A사에 인도됨
- A사는 연간 구매계획에 근거해, T국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물품의 일본으로의 수입 시기를 결정하여 일본 소재 통관업체인 F사에 메일로 출하 지시하고, F사가 관련 회사인 B사에 출하 지시를 내리면 T국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이 일본으로 수출됨

- A사는 수입통관 후 수입물품을 전량 C사에 판매하며 판매 가격은 D사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T국에서 일본까지의 해상 운임 및 보험료, T국의 보세창고 출고 비용 및 수출 제비용, 일본의 수입통관 제비용을 더해 산출한 금액에, A사의 마진을 추가한 금액임
 - T국의 보세창고와 관련된 보관료는, A사의 마진에 포함됨
 - A사로부터 C사로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때가 속하는 날 후 90일 이내에 행해짐
 - 수입물품인 가구는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C사를 위한 오리지널 상품이며, 그 성질상 수입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적용할 수 없음

- A사가 수입하는 물품은 T국의 보세창고에 일시 보관하되 T국에서 수입통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의 취급으로서는 X국가에서 직접 일본에 수입하는 거래와 같다고 주장함
 - T국 항에서 D사로부터 보세 전매를 받되 단순히 명의를 변경될 뿐 물품 자체의 가치에 변화는 없으므로 일본에 수입할 때의 과세가격은 X국에서 선적된 가격에 T국에서의 부가가치(보세창고 보관비용 등)가 추가된 금액이라고 판단함
 - X국가에서 T국가까지의 수송과 관련된 해상 보험에 대해서는 T국가 보세창고에 반입한 시점에서 효력이 소실되므로, 새롭게 T국가에서 일본용으로 확보한 해상 보험료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함

2) 결정내용

- 본 사안에서 물품이 수입될 때까지 해당 물품에 대해 2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입에 해당하는 거래를 판단하고자 함
 - 물품이 수입될 때까지 해당 물품에 대해 복수의 거래(때때 이외의 거래포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물품이 일본에 도착하게 된 거래를 수입 거래로 인정함

- E사가 D사 앞으로 발행한 인보이스에 따라 양자 간 공급업체를 매도인, D사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물품의 도착지는 T국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거래로 물품이 일본에 도착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거래는 수입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 A사와 D사는 E사가 D사 앞으로 발행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계약번호, 품번 및 수량과 동일한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A사는 D사로부터 T국의 보세창고에서 물품 인도를 받는 동시에 D사에 대해 해당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양자 간에 D사를 매도인, A사를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가 있으나 해당 거래로 물품이 일본에 도착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거래는 수입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 T국의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는 A사가 C사에 납품기한에 맞춰 F사에 자진 선적지시를 내려 물품이 일본에 도착하므로 해당 물품은 수입거래에 의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안은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있으므로 해당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함
 - 본 사안의 물품은 수입신고 때부터 성질 및 형상에 변경이 가해지지 않고 과세 물건 확정시기가 속하는 날 후 90일 이내에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C사에 판매된다고 A사는 설명함
 -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A사가 C사로 판매하는 물품가격에 해당 판매에 관한 통상적인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판매할 때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통상적인 운임, 보험료, 기타 해당 운송에 관련된 비용, 일본에서 부과된 관세 및 기타 공과를 공제한 가격임

3. 합리적인 조정에 따른 가격 관련 사례

가. 수입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형

1) 거래개요

- 신사화를 수입하고 있던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금형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할 때 금형의 취득가격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산입하고 있음
 - 구매자는 신사화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을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E국의 금형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구매자는 거래 종료로 금형을 일본에 수입하여 폐기했으며 송장에 판매자가 편의상 기재한 가격이 표시된 경우 수입물품인 금형의 과세가격에 대해 문의함
 - 판매자로부터 송부된 금형의 구매주문서에는 'No Commercial Value'라고 기재됨

2) 결정내용

- 위 거래에서 귀사가 수입하는 금형은 무상화물로, 매매에 의하지 않는 수입화물이므로 원칙적인 방법인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으로 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귀사가 수입하는 금형은 이미 사용된 중고품이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이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과 관련된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또한 이 금형을 국내 판매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수출국의 금형 제조업체로부터 제조원가를 청취할 수 없으므로 국내 판매 가격에 기초한 방법 및 제조원가에 기초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당사가 수입하는 금형의 과세가격은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금형의 가치를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하여 계산하게 됨⁸⁶⁾
 -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세관장이 일본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의해 계산됨
 - 금형은 수입 후 폐기되는 것이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를 통해 그 금형의 가치를 나타내는 잔존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그 가격에서 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으며, 금형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등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됨

나. 수리 후 재수입된 물품

1) 거래개요

- 당사는 공장 기계가 고장나서 A사가 소재한 E국에 수출하여 수리된 물품을 수입했고 A사에 수리대금 및 운임 등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요청함
 - 당사는 E국 소재의 A사로부터 특별 주문의 공장 기계를 수입하고, 고장났을 때를 위해 수리위탁계약을 체결함
 - 당사는 물품의 수입신고 시 감면세를 신청하지 않음

2) 결정내용

- 동 물품은 특별주문품이기 때문에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이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과 관련된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위 거래에서 귀사가 수입하는 화물은 수리위탁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것으로 수입

86) 「관세정률법」 제4조의4, 동법 시행령 제1조의12 제2호에서 규정

- 거래(매매)에 의해 수입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인 방법인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으로 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또한 이 공작 기계를 국내 판매하지 않고 특수관계가 없는 A사로부터 제조원 수입자 가격을 청취할 수 없으므로 국내 판매 가격에 기초한 방법 및 제조원가에 기초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수리대금을 대가로 물품의 매매가 당사와 A사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를 위하여 당사가 A사에 제공한 공작 기계를 수입화물에 편입된 재료,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계산함⁸⁷⁾
 - 공작 기계는 당사로부터 A사에 제공되기 전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사용도에 따라 감액되며 이 공작 기계가 A사 및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 등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됨

다. 제3국에 보관된 수입물품

1) 거래개요

- X국에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M사가 있으며, 일본의 수입자는 물품을 Y국의 L사에 물품을 보관했다가 출하가 필요한 경우 CIF 조건으로 L사에 출하지시를 통해 물품을 수입함
- 수입자가 M사로부터 구입한 해당 자동차부품은 일본에 수입한 후 수입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인데, 일본에서의 보관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입하기 전에 Y국에서 보관을 실시하기로 하고 M사와의 거래조건을 CIF, 도착지를 Y국의 항구로 함
- 수입물품은 M사와의 거래에 의해 X국에서 Y국으로 일단 수출되고, 그 후 구매자가 Y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당사의 재고 상황 및 판매 계획에 근거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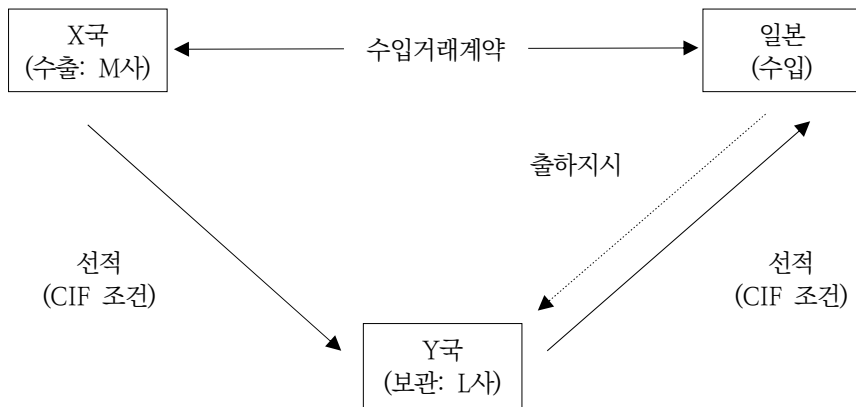
87) 「관세정률법」 제4조의4(특수한 수입화물과 관련된 방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계산

본에 인수하는 행위(출하 지시)에 의해 수입함

- 수입자사는 Y국 소재의 물류업자 L사에 보관, 수출통관, 운송 업무를 위탁해 보관료 및 운임 등을 지급함

- 당사가 L사에 출하지시를 하고 L사는 수입물품을 Y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문의함
- 해당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특정 자동차용으로 제조된 부품(특별주문품)이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은 없으며 이 수입화물의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를 M사로부터 입수하여 세관에 제출할 수 없음

[그림 2-III-1] 제3국에 보관된 수입물품 흐름도



자료: 사례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결정내용

- 당초 M사와 거래를 통해 일본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수입거래(매매)에 의해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인 방법인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⁸⁸⁾

88) 「관세정률법」 제4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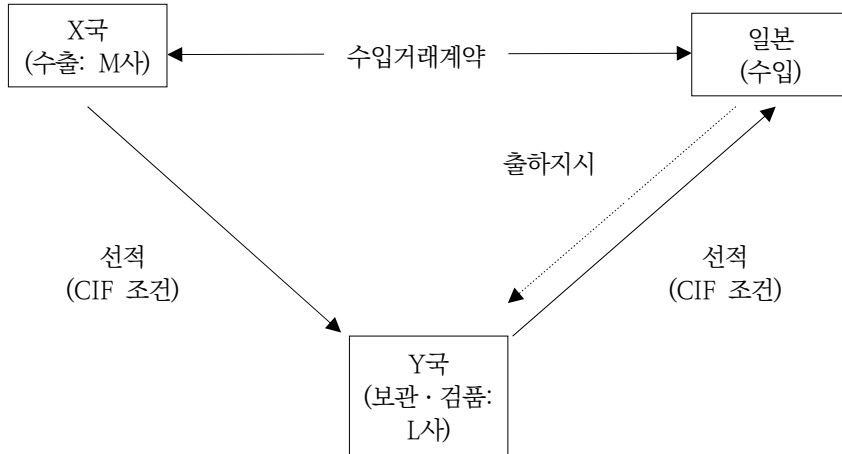
- 동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M사에 지급하는 수입물품의 구입 대금에, L사에 지급되는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 등을 더한 가격임
- 단 수입물품의 보관과 관련되는 비용은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송에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의 사정에 따라 Y국에서 보관했다고 인정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라. 제3국에 보관된 수입물품(물품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1) 거래개요

- X국 소재의 제조업자 M사가 제조하는 자동차부품 전량을 일본에 수입하는 구매자가 Y국의 L사에 수입통관, 보관, 검품 업무를 위탁하는 매매거래 중인 경우 과세가격에 대해 문의함
- 당사가 M사로부터 구입한 해당 자동차부품은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수입 전 Y국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M사와 도착지를 Y국의 항구로 CIF 조건으로 계약함
 - 수입자는 Y국 소재의 물류업자 L사에 수입물품의 수입통관, 보관, 검품(단순히 화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수출통관 및 일본까지의 운송과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에 따라 보관료, 검품료, 운임 등을 지급함

[그림 2-III-2] 제3국에 보관된 수입물품 흐름도(물품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자료: 사례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결정내용

- 상기 거래에서 귀사가 Y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의 과세가격은 제조업자 M사에 지급되는 수입화물의 구입대금에 물류업자 L사에 지급되는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 등을 더한 가격임
- 구매자가 판매자인 M사와의 거래에 의해 일본에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거래(매매)에 의해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인 방법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⁸⁹⁾
- 수입물품은 M사와의 거래에 의해 X국에서 Y국으로 일단 수출되고, 그 후 당사가 Y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재고 상황 및 판매 계획에 근거해 구매자가 인수해 수입하는 상황임

89) 수입거래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지급가격에 운임 등(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

- 따라서 해당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관세정률법」 제4조의4 특수한 수입화물과 관련된 방법에 따라 계산함
 - 해당 수입화물은 특별주문품이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은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과 관련된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또한 수입 후 M사로부터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판매 가격에 근거하는 방법’ 및 ‘제조원가에 근거하는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단 수입물품의 보관과 관련되는 비용은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송에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의 사정에 따라 Y국에서 실시했다고 인정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4.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관련 사례

가.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

1) 수입신고 이전에 변질된 수입품의 과세가격⁹⁰⁾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냉동육을 수입하나 수입신고 전 물품 검사 시 냉동육이 변색되어 신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하역항의 자연해빙으로 인한 것에서 기인하였음에 대해 공식 조사 보고서로 확인하였음

90)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hyokajirei/hyokajirei4500001.pdf>, 검색일자: 2022. 10. 12.

- 공식 조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국내 판매 가격을 참고하여 산출한 가격은 구매가격의 55%이며 해당 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고자 함
- 운임은 기존의 계약에 따라 정산할 예정임

나) 결정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품이 변경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감가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함
- 따라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산정한 과세가격에서 변동으로 인한 구매가격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5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나. 개인용 물품⁹¹⁾

1) 개인의 이름으로 상업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가격⁹²⁾

가) 거래개요

- 해당 업체는 CIF 조건으로 식탁 세트를 수입하고 있으나 업체가 일본에서 체인을 운영하는 음식점의 점장 명의로 구매가 진행되며 수입신고도 점장의 명의로 이루어짐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 시 개인용의 소매 거래로 과세가격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통상 도매가격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자 함

91)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hyokajirei/hyokajirei4500001.pdf>, 검색일자: 2022. 10. 12.

92)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hyokajirei/hyokajirei4600001.pdf>, 검색일자: 2022. 10. 12.

나) 결정내용

- 해당 업체가 점장의 명의로 수입하는 물품은 업무상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수입자 개인용 수입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음
- 과세가격 결정특례의 적용 여부는 해당 물품이 수입업자의 사적 용도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취인이 본인 명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음

2) 온라인 경매를 통해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⁹³⁾

가) 거래개요

- 개인이 인터넷 경매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방을 타국의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음

나) 결정내용

- 일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경매를 통해 구매했으므로 소매 거래로 인정되며 일상생활용 물품으로 수입자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판단하여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도매가에 의거하여 산정함
- 보통의 도매가격은 일본의 도매업자가 일본에서 재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외국에서 동종물품을 구매할 때의 가격을 의미하므로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운임 등의 비용을 별도로 가산할 필요는 없음

93)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hyokajirei/hyokajirei4600002.pdf>, 검색일자: 2022. 10. 12.

3) 개인이 금괴를 운반하고 수입할 때의 과세가격⁹⁴⁾

가) 거래개요

- 일본 거주자로서 귀국 시 귀금속 회사에서 구입한 금괴를 자산으로 보관하기 위해 타국가에서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 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특례를 적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함

나) 결정내용

- 금괴는 국제시세 가격이 있고 도매거래단계와 소매거래단계에서 가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수입자의 개인적인 사용에 제공되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과세가격 결정특례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없음

4) 개인이 금괴의 국제 환율을 기준으로 구매 가격이 금화를 수입할 때의 과세가격

가) 거래개요

- 일본 거주자로서 타국의 귀금속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로 금괴를 구입하여 택배로 수입 시 과세가격 결정특례를 적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아 통상의 도매가격을 적용하고자 함

나) 결정내용

- 금괴는 국제시세 가격이 있고 도매거래단계와 소매거래단계에서 가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수입자의 개인적인 사용에 제공되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과세가격 결정특례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없음

94)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hyokajirei/hyokajirei4600003.pdf>, 검색일자: 2022. 10. 12.

5)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통신판매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가) 거래개요

-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류 1벌을 타국에 소재하는 브랜드의 소매점(판매자)의 홈페이지에서 운임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음

나) 결정내용

- 수입거래가 소매거래로 물품의 개인적인 사용이 인정되어 그 과세가격은 통상의 도매가격을 사용할 수 있음
 - 운임의 금액이 구입내역서 등에 의해 수입물품의 가격과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는 경우, 그 운임을 과세가격에 산입할 필요는 없음

V.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일본 「관세법」, 「관세정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가 실제 어떻게 적용·해석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사전심사 결정사례 모음집임
 -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규정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일본II편』⁹⁵⁾에서 다루고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 사전심사에 해당하는 사전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에 제도화되어 있고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만 우리나라는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및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사전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수출입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세관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본 연구는 어떤 분야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도 관련 사례를 참조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대상에 대한 결정사례를 소개함
- 따라서 품목분류는 제1부에서 제21부까지, 관세평가는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의 사례를 차례로 다루고 있음
 - 일본은 HS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제1류 내지 제97류로 품목을 분류하고 있음

95) 강성훈 외(2016)

- 일본은 10단위의 품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총 9단위의 품번을 사용하고 있으며 6자리는 세계 공통 분류체계인 HS Code이고 뒤의 3자리는 통계목적에 포함된 상세 품목 분류에 사용함
- 일본은 WTO 관세평가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을 사용함
 - 변질, 손상물품, 특정한 항공운송화물, 개인물품 등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결정사례를 통하여 현재에도 적용·해석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 사례별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 관청⁹⁶⁾에 조회하는 것을 권장함
 - 품목분류의 경우 HS 협약이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관련 협정, 정책에 따라 관세율, 할당 등이 변경되므로 최신 관세율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 작성된 사례는 결정이 발생한 해당 연도의 품목분류 체계를 반영한 것이므로 2022년 개정된 품목분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품목분류의 경우 물품에 대한 관점이나 해석, 국가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 관세평가 또한 사례별 거래 상세 현황이나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일본의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사례는 일본어로 제공되고 있어 검색이 필요한 경우 일본 관세국에서 제공하는 검색 키워드 모음을 사용할 수 있음⁹⁷⁾
- 일본의 관세국 홈페이지에서는 품목분류 사례에 대해 평가물품, 관세율, 물품개요, 결정이유, 법령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품목분류의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

96) 일본관세국, <https://www.customs.go.jp/question2.htm#b>, 검색일자: 2022. 12. 6.

97)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tetsuzuki/bunrui/keyword_help.pdf, 검색일자: 2022. 12. 6.

- 있으나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는 사진을 참조할 수는 없음
- 또한 품목분류를 위한 논의의 진행 과정이나 과거 논의된 내용, 쟁점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음
 - 물품명의 경우 일본어로 된 물품명을 번역하여 작성하되 관세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022년 영문 관세율표상의 영문을 병기함
- 일본의 관세평가 사례의 경우 일본 관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 응답 사례를 정리하여 해당 규정별로 제공함
- 제1방법 내지 제6방법 적용 사례 중 질의 응답 요약에 없는 경우 「관세평가에 관한 취급사례 모음」⁹⁸⁾ 및 관세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별도 사례 모음을 참조함⁹⁹⁾

98)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kaisei/zeikantsutatsu/kobetsu/TU-H19z0876.pdf>, 검색일자: 2022. 12. 6.

99)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kaitoujirei.htm>, 검색일자: 2022. 12. 6.

참고문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일본Ⅱ편』,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2016.

국제원산지정보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규정 상이사례 분
석』, 2011. 10, p. 8.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4. 1., p. 260.

김성채, 『2022년 HS 개정내용 해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2022, p. 1.

김진규, “제7차 HS 협약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
8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20. 12, pp. 128~129.

박철구, 『관세법 핵심쟁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9, p. 277.

일본 「관세법」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일본 「관세정률법」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9.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IMF, <https://www.imf.org/>

OECD, <https://www.oecd-ilibrary.org/>

WCO, <http://www.wcoomd.org/en/topics/nomenclature/overview/list-of-contracting-parties-to-the-hs-convention-and-countries-using-the-hs.aspx>,

검색일자: 2022. 5. 3.(최신자료로 작성하였으며 홈페이지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음)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일본-

발 행 2022년 12월 30일
저 자 강동익 · 노영예 · 박지우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식회사 다원기획 044-865-8115
ISBN 979-11-6655-199-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일본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